
2026년도 본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농업기술센터)

김 포 시

목 차

■ 농업기술센터

1. 농업정책과	1
2. 축 산 과	227
3. 농업진흥과	369
4. 기술지원과	493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본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농업정책과
요 구 액	17,695,162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080	70	70	0	1,805	1,735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2026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료	1,080	0	0	0	1,735	1,735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통계청) X 10% X 토지면적(m ²)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액 증대에 따른 임대료 증가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70	70		70	0	전년도 수준편성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목적	청사 시설물 파손 및 장비 고장 등 신속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위임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제1항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9,775	473,875	432,305	0	41,570	0	427,294	-46,58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9,775	473,875	432,305		41,570		427,294	-46,58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7,294	
청사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 : 11,730원*8시간*2명*245일 ·유급휴일수당 : 93,840원*2명*68일 ·명절휴가비 : 500,000원*2명*2회 ·4대보험료 : 60,745,000원*14%	= 45,982 = 12,763 = 2,000 = 8,505	
	201-01 사무관리비	·청소용품 구입 : 700,000원*12월 ·공기청정기 및 비데 임차료 : 25,000원*15대*12월 ·정수기 임차료 : 60,000원*6대*12월 ·청사청소원 휴게실 운영 : 50,000원*12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 450,000원*12월 ·전기안전관리대행 : 450,000원*12월 ·소방안전관리대행 : 242,000원*12월 ·저수조 청소 : 400,000원*2회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 380,000원*12월 ·구충 및 살균소독 : 160,000원*12월 ·조경관리 : 8,000,000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 1,000,000원	= 8,400 = 4,500 = 4,320 = 600 = 5,400 = 5,400 = 2,904 = 800 = 4,560 = 1,920 = 8,000 = 1,000	
	201-02 공공운영비	·청사운영 공과금(전기·가스·상수도·통신) : 280,140,000원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 1,000,000원*10% ·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비 : 30,000,000원	= 280,140 = 100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청사 건물 내·외부를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여 최상의 근무환경 제공
- 청사청소원(기간제) 보수지급 및 청소용품 구매·휴게실 운영
- 청사 설비(전기, 소방, 냉난방기 등) 연간 유지보수

□ 예산증감 사유

-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건축물(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청사 노후화 및 공유재산(덕포진누리센터, 달뫼마을) 운영·유지관리 필요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청사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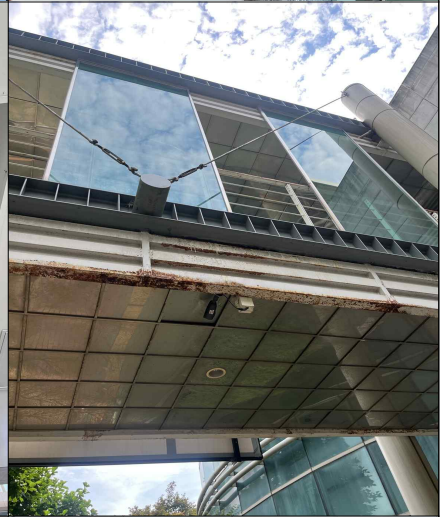
2023	· 청사 바닥 및 창호 공사 · 청사 조경공사(2회) ·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 청사 보수 공사
2024	· 청사 바닥 공사 · 청사 조경 유지관리(2회) · 청사 보수 공사
2025	· 청사 냉난방기 구입 및 전기공사 · 청사 조경 유지관리(1회) · 청사청소원 휴게실 바닥 보수공사 · 청사 옥탑방수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8,006	367,030	-	20,976	
2024	429,775	360,470	-	69,305	
2025	473,875	353,366	-	120,509	10.31.기준 집행현황

□ 노후청사 사진

부서	농업정책과	사업규모	농업기술센터 청사	본예산 요구액 (천원)	427,294
부기명 (세부사업)	청사관리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7급 안수진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3 4254
-----	-------	------------	-----	----------------------	----	--------------

구내식당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농업기술센터 소속직원(약 70명) 중식 이용			
사업목적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886	31,398	31,398	0	0	0	33,263	1,86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886	31,398	31,398				33,263	1,86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3,263	
구내식당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 : 11,730원*6시간*1명*248일 = 17,244 ·유급휴일수당 : 70,380원*1명*68일 = 4,786 ·명절휴가비 : 375,000원*1명*2회 = 750 ·조리원4대보험료 : 22,780,000원*14% = 3,190 ·구내식당 일용근로자 인건비 : 93,840원*2명*1일*12월 = 2,253		
	201-01 사무관리비	·급식실 유지관리 : 300,000원*12월 = 3,600 ·급식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 120,000원*12월 = 1,440		

□ 예산요구 사유

-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
- 급식인원 평균 70명의 급식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운영

□ 예산증감 사유

- 효율적인 구내식당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시 대체 일용근로자 인건비 증액(1명→2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승인
일자	2025.11. 반영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구내식당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구내식당 운영
2024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645	24,779	-	1,866	
2024	29,886	29,087	-	799	
2025	31,398	25,456	-	5,94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마감 이부영	전화	4258
-----	-------	------------	-----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시 개최		
사업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전략수립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전략수립과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	3,765	5,865	0	0	-2,100	5,865	2,1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	3,765	5,865			-2,100	5,865	2,1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86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 : 100,000원*17명*3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자료제작 : 15,000원*17명*3회 =	5,100 765	

□ 예산요구 사유

- 농림축산식품산업 사업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계획수립
 - 2026. 2. ~ 1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 및 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실시(1회) : 참여위원 17명 - 2023년 농정사업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심의 : 83개 사업 -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소관예산 심의 : 52개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심의 외 5회 ○ 정책심의회 책자 제작
202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실시(1회) : 참여위원 16명 - 2024년 농정사업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심의 : 51개 사업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소관예산 심의 : 47개사업 ○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1회)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2회) ○ 정책심의회 책자 제작
2025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실시(1회) : 참여위원 16명 - 2025년 농정사업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심의 : 54개 사업 - 2026년 농정사업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심의 : 59개 사업 ○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1회) ○ 정책심의회 책자 제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57	3,257	-	-	
2024	3,000	2,742	-	258	
2025	3,765	2,543	-	1,22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6급 장경남	전화	4252
-----	-------	------------	-----	----------	----	------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회		
사업목적	농업전문 인력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군별 적립 출연금 납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0	50,000	50,000	0	0	0	50,000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50,000	50,000	50,000	0	0	0	50,000	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농업농촌 진흥기금 출연금	306-01 출연금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 50,000,000원*1회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출연금을 편성함으로써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육성지원 등 관내 농어업인을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예산증감 사유

- 도농복합시군 출연금 50,000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의결 예정
일자	2025. 11 반영	-	-	-	-	-	-	-	-	2025.12 예정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1. 16.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0천원 경기도 지급
2024	○ 2024. 1. 9.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0천원 경기도 지급
2025	○ 2025. 2. 11.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0천원 경기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0	50,000	-	-	
2024	50,000	50,000	-	-	
2025	50,000	5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사업기간	2026. 10월중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회원 300여명		
사업목적	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경영인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친목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4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	9,000	9,000	0	0	0	9,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	9,000	9,000				9,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201-03 행사운영비	·무대, 백일 및 음향 설치 : 3,000,000원 ·공연 및 이벤트: 1,800,000원 ·테이블 : 22,000원*40개 ·의자 : 2,200원*300개 ·레크레이션 도구 : 500,000원 ·현수막 제작 : 360,000원	= 3,000 = 1,800 = 880 = 660 = 500 = 36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급식비 : 9,000원*200명	= 1,800	

□ 예산요구 사유

- 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해동안 고된 영농활동으로 지친 농업인들을 격려
- 청년농업인과 기성농업인 등 지역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농업인 단체 활성화 및 신규 농업인력 유입유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제41회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개최 계획 수립
 - 2025. 10. : 제41회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개최
 - 2025. 11. : 행사용역비 준공금 지급
 - 2026. 10. : 제42회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대상 : 김포시 관내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가족 ○ 추진실적 - 사업명 :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 일시 : 2023. 11. 6.(화) - 장소 :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운동장 - 참여인원 : 300여명 - 사업내용 :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장기자랑, 읍면별 대회(족구,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
2024	○ 사업대상 : 김포시 관내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가족 ○ 추진실적 - 사업명 :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 일시 : 2024. 10. 30.(수) - 장소 : 김포시 통진읍 서암생활체육공원 - 참여인원 : 300여명 - 사업내용 : 체육대회, 우수농업인 시상,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등
2025	○ 사업대상 : 김포시 관내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가족 ○ 추진실적 - 사업명 :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 일시 : 2025. 10. 29.(수) - 장소 : 김포시 통진읍 서암생활체육공원 - 참여인원 : 300여명 - 사업내용 : 체육대회, 우수농업인 시상,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0	9,873	-	127	
2024	10,000	9,440	-	560	
2025	9,000	1,800	-	7,2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대표자	최동철	
사업목적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 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농업인 단체 사기 진작 기여 및 타지역 농업인 단체와 교류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계(연계)반복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통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2,640	15,200	15,200	0	0	0	44,240	29,040	
시비	9,000	9,000	9,000				20,000	11,000	
자부담	3,640	6,200	6,200				24,240	18,04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44,240	20,000	24,240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차량 임차료 : (관외 550,000원*3대*3일)+(관내 600,000원*3대) =	6,750	4,950	1,800	
		· 숙박비 : 80,000원*2박*50실 =	8,000	4,000	4,000	
		· 식비 : 9,000원*100명*9식 =	8,100	2,075	6,025	
		· 항공 운임료 : 179,500원*100명 =	17,950	8,975	8,975	
		· 여행보험료 : 3,000원*100명 =	300	0	300	
		· 체험·입장료 : 20,000원*100명 =	2,000	0	2,000	
		· 참가회비 : 1,140,000원 =	1,140	0	1,140	

□ 예산요구 사유

- 후계농업경영인 전국 대회 참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단체 활성화 기여 및 농정현안 공유의 자리를 마련
- 김포시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전국 단위 대회로 예산 미편성 시 참석이 불가함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도 전국대회 개최 대상지가 제주도로 결정됨에 따라 2025년도 대비 항공료, 숙박비, 차량 임차비, 숙박비 등 전반적 비용 일괄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가 - 일시 : 2023. 9. 6. ~ 9. 8. -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일원 - 참여인원 : 120여명 - 사업내용 : 체험행사, 체육행사, 학술행사, 가족행사 등
2024	○ 보조사업자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 일시 : 2024. 9. 3. ~ 9. 5. - 장소 : 경북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 일원 - 참여인원 : 120여명 - 사업내용 : 체험행사, 체육행사, 학술행사, 가족행사 등
2025	○ 보조사업자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가 - 일시 : 2025. 8. 28. ~ 8. 30. - 장소 : 경기 평택시농업생태원 일원 - 참여인원 : 150여명 - 사업내용 : 체험행사, 체육행사, 학술행사, 가족행사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2,729	6,840	5,889	12,729	6,840	5,889	-	-	-	
2024	12,640	9,000	3,640	12,640	9,000	3,640	-	-	-	
2025	15,200	9,000	6,200	15,200	9,000	6,2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쌀전업농 대회 참가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쌀전업농 김포금쌀연구연합회		대표자	장영철	
사업목적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농업인 단체 사기 진작 기여 및 타지역 농업인 단체와 교류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 <td>재 원</td> <td colspan="/>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탬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4,280	4,280	4,280	0	0	0	4,280	0	
시비	3,400	3,400	3,400				3,400	0	
자부담	880	880	880				88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4,280	3,400	880	
쌀전업농 대회 참가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차량임차료 : 2,090,000원*1대 · 식비 : 9,000원*60명*3식 · 기타비용 : 다과비, 상비약 구입 등	= 2,090 = 1,620 = 570	1,400 1,620 380	690 0 190	

□ 예산요구 사유

-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단체 활성화 및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통해 쌀전업농의 비전과 역할증대 기여
- 김포시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전국 단위 대회로 예산 미편성 시 참석이 불가함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쌀전업농 김포금쌀연합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제9회 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회원대회 참가 - 일시 : 2023. 8. 24. ~ 8. 25. - 장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로그밸리 청소년수련원 - 참여인원 : 60여명 - 사업내용 : 쌀 소비촉진 캠페인, 학술행사, 안보관광 및 특강 등.
2024	○ 보조사업자: 쌀전업농 김포금쌀연합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제8회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 일시 : 2024. 8. 22. ~ 8. 23. - 장소 : 전북 부안군 - 참여인원 : 40여명 - 사업내용 : 쌀 소비촉진 캠페인, 체육행사 등
2025	○ 보조사업자: 쌀전업농 김포금쌀연합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제10회 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회원대회 참가 - 일시 : 2025. 9. 2. ~ 9. 3. - 장소 : 경기 가평군 - 참여인원 : 40여명 - 사업내용 : 쌀 소비촉진 캠페인, 체육행사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4,850	4,000	850	4,850	4,000	850	-	-	-	
2024	4,280	3,400	880	4,280	3,400	880	-	-	-	
2025	4,280	3,400	880	4,280	3,400	88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여성농업인 대회 참가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사)한국여성농업인 김포시연합회		대표자	서혜순	
사업목적	한국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농업인 단체 사기 진작 기여 및 타지역 농업인 단체와 교류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 <td>재 원</td> <td colspan="/>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탬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6,050	6,120	6,120	0	0	0	5,500	-620	
시비	5,500	5,500	5,500				4,950	-550	
자부담	550	620	620				550	-7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5,500	4,950	550	
여성농업인 대회 참가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차량 임차비: 1,250,000원*1대	= 1,250	700	550	
		· 식비: 9,000원*3식*50명	= 1,350	1,350	0	
		· 숙박비: 68,750원*40실	= 2,750	2,750	0	
		· 다과비 등	= 150	150	0	

□ 예산요구 사유

-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참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단체 활성화 및 김포 농특산물 홍보 기여
- 김포시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도 단위 대회로 예산 미편성 시 참석이 불가함

□ 예산증감 사유

- 보조금 심의 조정액 반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사)한국여성농업인 김포시연합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 일시 : 2023. 9. 12. ~ 9. 14. - 장소 :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 - 참여인원 : 40여명 - 사업내용 : 체험행사, 컨퍼런스 등
2024	○ 보조사업자 : (사)한국여성농업인 김포시연합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제12회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참가 - 일시 : 2024. 8. 27. ~ 8. 28. - 장소 : 경기도 연천군 수레울아트홀 - 참여인원 : 40여명 - 사업내용 : 지역 농산물 전시행사, 학술행사 등
2025	○ 보조사업자 : (사)한국여성농업인 김포시연합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제13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 일시 : 2025. 9. 4. ~ 9. 5. - 장소 :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일원 - 참여인원 : 40여명 - 사업내용 : 지역 농산물 전시행사, 학술행사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6,040	5,500	540	5,940	5,500	540	-	-	-	
2024	6,050	5,500	550	6,050	5,500	550	-	-	-	
2025	6,120	5,500	620	6,120	5,500	62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경기 농민전진대회 참가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전농 경기도연맹 김포농민회		대표자	최병종	
사업목적	경기 농민전진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농업인 단체 사기 진작 기여 및 타지역 농업인 단체와 교류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 <td>재 원</td> <td colspan="/>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탬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4,220	3,900	3,900	0	0	0	3,500	-400	
시비	3,500	3,500	3,500				3,150	-350	
자부담	720	400	400				350	-5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3,500	3,150	350	
경기농민전진 대회 참가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식비 : 9,000원*40명*3식	= 1,080	1,080	0	
		· 차량임차비 : 100,000원*1대	= 1,000	700	300	
		· 참가회비	= 1,350	1,350	0	
		· 다과비	= 70	20	5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 농민전진대회 참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단체 활성화 기여 및 창립 기념식 및 결의대회를 통해 농민회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 김포시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도 단위 대회로 예산 미편성 시 참석이 불가함

□ 예산증감 사유

- 보조금 심의 조정액 반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전농 경기도연맹 김포농민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경기 농민전진대회 참가 지원 - 일시 : 2023. 7. 22. ~ 7. 23. - 장소 : 경기도 여주시 신록사 일원 - 참여인원 : 40여명 - 사업내용 :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 31주년 및 제17회 경기농민전진대회, 체험행사 등
2024	○ 보조사업자 : 전농 경기도연맹 김포농민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경기 농민전진대회 참가 지원 - 일시 : 2024. 7. 6. ~ 7. 7. - 장소 : 경기도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 참여인원 : 40여명 - 사업내용 : 체육행사, 창립 32주년 기념식, 결의 대회 등
2025	○ 보조사업자 : 전농 경기도연맹 김포농민회 ○ 추진실적 - 사업명 : 경기 농민전진대회 참가 지원 - 일시 : 2025. 7. 12. ~ 7. 13. - 장소 : 경기도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잔디광장 - 참여인원 : 40여명 - 사업내용 : 체육행사, 창립 33주년 기념식, 결의 대회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5,400	3,500	1,900	5,400	3,500	1,900	-	-	-	
2024	4,220	3,500	720	4,220	3,500	720	-	-	-	
2025	3,900	3,500	400	3,900	3,500	4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청년농업인 30여명		
사업목적	영농초기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3,960	608,400	613,540	0	-5,140	0	737,788	129,388	
국비	296,770	425,880	429,480		-3,600		516,451	90,571	
도비	0	0	0		0		0	0	
시비	127,190	182,520	184,060		-1,540		221,337	38,817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37,78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영농정착지원금: 737,788,000원 ※ 독립경영 개시일에 따른 연차별 차등지급: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737,788	

□ 예산요구 사유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건실한 경영체로의 성장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내시서 예산액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 01. : 2026년 신규 사업대상자 모집(신청접수)
 - 2026. 02. ~ 2026. 03. : 사업대상자 서면·면접평가 실시
 - 2026. 04.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2026. 04 ~ 2026. 12.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19명 선발 · 영농정착지원금 219,800천원 집행
2024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7명 선발 · 영농정착지원금 423,960천원 집행
2025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17명 선발 · 영농정착지원금 443,200천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9,800	219,800	-	-	
2024	423,960	423,960	-	-	
2025	608,400	443,200	-	165,2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청년농업인 30여명		
사업목적	청년농업인 선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농업분야 진출 및 정착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300	6,200	6,000	0	200	0	6,000	-200	
국비	3,650	3,100	3,000		100		3,000	-100	
도비	0	0	0		0		0	0	
시비	3,650	3,100	3,000		100		3,000	-10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서면심사 수당 : (200,000원(반일)*3명)+교통비(실비) 200,000원 = 800 · 면접심사 수당 : (300,000원(전일)*3명)+교통비(실비) 200,000원 = 1,100 · 정담회 개최 및 홍보비 등 : 4,100,000원 = 4,100		

□ 예산요구 사유

- 청년후계농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별도 편성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선발·육성
- 청년후계농 대상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농업경영 실태를 확인하고 농업경영 적극 참여 및 활성화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내시서 예산액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3. :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발운영위원회 구성 및 서면·면접심사 추진
 - 2026. 10. : 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와의 정담회 개최
 - 2026. 12. : 2027년도 사업신청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신규 청년후계농(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9명 선발 · 2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서면평가 실시 · 3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면접평가 실시
2024	· 신규 청년후계농(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7명 선발 · 2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서면평가 실시 · 3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면접평가 실시 · 10월 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와의 정담회 개최
2025	· 신규 청년후계농(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7명 선발 · 2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서면평가 실시 · 3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면접평가 실시 · 10월 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와의 정담회 개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600	4,233	-	3,367	
2024	7,300	3,700	-	3,600	
2025	6,200	2,613	-	3,58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귀농 선발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사업목적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에 필요한 심사수당 지급 및 귀농지원사업 홍보를 통한 김포시 귀농인구 유입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5조 제19조 제1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20	1,400	1,400	0	0	0	600	-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20	1,400	1,400				600	-8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	
귀농 선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면접평가 심사수당 지급 : 100,000원*3명*2회	= 600	

□ 예산요구 사유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수당 편성(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필수 구성)

□ 예산증감 사유

○ 대상자 선정 심사 수당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귀농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 2026. 2. ~ 3. : 귀농지원사업 홍보 및 상반기 접수 실시
- 2026. 3. : 상반기 귀농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면접평가 실시
- 2026. 6. ~ 7. : 귀농지원사업 홍보 및 하반기 접수 실시
- 2026. 7. : 하반기 귀농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면접평가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심사수당 지급(상/하반기) ○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총 10명 선발 ○ 귀농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2024	○ 2024년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심사수당 지급(상/하반기) ○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총 7명 선발
2025	○ 2025년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심사수당 지급(상/하반기) ○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총 5명 선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	1,410	-	590	
2024	1,120	903	-	217	
2025	1,400	600	-	8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신김포농협, 고촌농협		
사업목적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자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① 김포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0,000	70,000	120,000	0	-50,000	0	160,000	90,000	
국비	40,000	35,000	60,000		-25,000		80,000	45,000	
도비	0	0	0		0		0	0	
시비	40,000	35,000	60,000		-25,000		80,000	45,00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0	
농촌인력중개 센터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담인력 인건비 : 28,000,000*2명	= 56,000	
		·사무실 운영비 : 1,500,000원*2개소	= 3,000	
		·차량 임차료 : 235,000원*10개월*2대	= 4,700	
		·현수막 제작 및 설치: 50,000원*2식*10개소	= 1,000	
		·홍보용 전단 제작		
		- (리플렛) 40원*10,000매*2개소	= 800	
		- (포스터) 100원*6,000매*2개소	= 1,200	
		·현장실습 교육비: 20,000원*300명*2개소	= 12,000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10,000원*1,200명*2개소	= 24,000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20,000원*150명*2개소	= 6,000	
		·작업반장 수당: 10,000원*4명*170일*2개소	= 13,600	
		·영농작업용 비품 및 도구 구입, 농작업 참여자 상해보험료 등	= 37,7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

□ 예산증감 사유

○ 신김포농협, 고촌농협 '26년도 사업신청 희망에 따라 내시액 반영(1개소당 운영비 80,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2025. 12. : '26년도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2026. 01. : '25년도 사업 정산
 - 2026. 01. ~ 2026. 12. : '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개소 및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6. : 김포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개시(고촌농협) · 2023. 12월 말 기준 33개 농가 대상 근로인력 399명 중개 완료
2024	· 2024. 4. : 김포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개시(고촌농협) · 2024. 9월 말 기준 55개 농가 대상 근로인력 651명 중개 완료
2025	· 2025. 4. : 김포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개시(신김포농협) · 2025. 10월 말 기준 352개 농가 대상 근로인력 2,515명 중개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0,000	70,000	-	-	
2024	80,000	80,000	-	-	
2025	70,000	7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농지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농업정책과, 각 읍·면
사업규모	시(농업정책과) 및 각 읍·면 농지위원회 7개(전체위원 72명)		
사업목적	농지 취득 시 자격심사를 통하여 농지의 적정 소유·이용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지법	제44조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3,000	89,800	89,800	0	0	0	89,8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3,000	89,800	89,800				89,8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9,800	
농지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농지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 100,000원*69명*12회 ·위원회 운영경비 : 200,000원*5회*7개소	= 82,800 7,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지법 개정으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도입에 따른 위원 심의수당 및 위원회 운영경비
- 농지보전부담금(농지관리기금) 수납액의 4% 범위내에서 지출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지급받음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및 올해 위원회 개최실적을 기준으로 적정 수준에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8. ~ 2023. 12. : 읍·면 및 농업정책과 각 농지위원회 운영
- 2024. 1. ~ 12. : 읍·면 및 농업정책과 각 농지위원회 운영
- 2024. 8. : 읍·면 및 농업정책과 농지위원회 구성(읍·면 및 농업정책과 7개위원회, 임기2년)
(기 농지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구성)
- 2025. 1. ~ 12. : 읍·면 및 농업정책과 각 농지위원회 운영
- 2026. 8. : 읍·면 및 농업정책과 농지위원회 구성(읍·면 및 농업정책과 7개위원회, 임기2년)
(기 농지위원회 위원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구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지위원회 구성 : 시·읍·면 7개 위원회, 위원 75명 ○ 농지위원회 21회 개최
2024	○ 농지위원회 구성 : 시·읍·면 7개 위원회, 위원 72명 ○ 농지위원회 46회 개최
2025	○ 농지위원회 구성 : 시·읍·면 7개 위원회, 위원 72명 ○ 농지위원회 54회 개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500	38,500	-	17,000	
2024	63,000	32,305	-	30,695	
2025	89,800	50,067	-	39,73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한현수	담당자	농업8급 김승현	전화	4264
-----	-------	------------	-----	----------	----	------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1047, 1082번지
사업규모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스마트 온실 2동, 시설면적 2,700㎡)		
사업목적	시 소유 공유재산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스마트 온실)의 유지보수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제1항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0,000	0	0	30,000	0	15,000	-15,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0	30,000	0	0	30,000	0	15,000	-15,00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농장 유지관리 비용 (비닐 필름·패드·밴드망 등 부품 및 양액기 교체 비용, 장비 점검 및 수리 비용 등)	15,000	

□ 예산요구 사유

- 시 소유 공유재산인 스마트온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로 구조물 노후화 및 하자 발생 예방
- 스마트 온실 구조물 파손 및 장비 고장 등에 신속 대응하여 대규모 손실 발생 예방
- 스마트 온실 비닐 필름, 패드, 밴드망 등 자재, 양액기 교체 및 보수비용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시공사 무상 A/S 기간 종료('24. 8. 8.)에 따른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 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스마트 온실 시설물 및 장비 점검
 - 2026. 2. ~ 12. :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양액기, 내부시설 하자 보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30,000	6,386	-	23,614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농업정책과	사업규모	스마트 온실 2동(시설면적 2,700㎡)	본예산 요구액 (천원)	15,000
부기명 (세부사업)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	사업위치	하성면 석탄리 1047, 1082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농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사업목적		농지 불법행위를 예방 및 단속하여 우량농지 보전과 양질의 농산물 생산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지법		제4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6,971	36,709	36,709	0	0	0	61,840	25,13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971	36,709	36,709				61,840	25,13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1,840	
농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농지불법성토상시감시단 기본급 : 11,730원*8시간*2명*126일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2명*34일 = ·보험료 : 4대보험료 30,030,000원*14% =	23,648 6,382 4,205	
	201-01 사무관리비	·농지관리 홍보 : 50,000원*24개 ·농지불법단속 급량비(휴일) : 8,000원*4명*60일 ·농지불법매립 단속 용품 : 500,000원(장갑, 마스크, 시료채취 용품 등) = ·중장비 임차 : 800,000원*5회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소송 송달료 납부 : 40,000원*30건	1,200 1,920 500 4,000 1,200	
	201-02 공공운영비	·농지불법대응 공용전화 요금 : 54,000원*12월 =	648	
	401-01 시설비	· 대형차량 통행제한 단속용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 : 18,136,220원 =	18,137	

□ 예산요구 사유

- 불법농지성토행위로 인한 각종 피해민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에 따른 농지불법행위 단속 및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비용 및 단속인력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도비사업 일몰로 인한 하반기 농지불법성토 상시감시단 인건비 부재에 따른 예산증액

- 한강제방구간(대형차량 통행제한구간)에서 15톤 이상의 대형 덤프트럭의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따른 단속을 위한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공사비용에 따른 예산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진행중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8. ~ 9. : 15톤 이상 통행제한 구간(누산리, 개화천, 가마지천 등)일대
 - 2024. 11. : 농지 불법성토 단속 현수막 제작
 - 2024. 10. ~ 2025. 3. : 주말·휴일 불법성토 단속 비상근무
 - 2025. 6. ~ 8. :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농지성토 취약지 점검 및 단속
 - 2025. 7. : 15톤 이상 대형차량 통행제한지역 단속 현수막 제작
 - 2025. 10. ~ 12. : 불법성토 상시감시단 운영
 - 2025. 10. ~ 2026. 3. : 주말·휴일 불법성토 단속 비상근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5톤 이상 차량 통행제한 표지판 유지 및 보수 ○ 농지 불법성토 단속 현수막 제작(36개) ○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소송 인지·송달료 납부(21건)
2024	○ 불량토사 확인 등 중장비 임차 ○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직원 여건 향상을 위한 물품 구매 ○ 농지불법 대응 공용전화 요금 납부
2025	○ 불량토사 확인 등 중장비 임차 ○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직원 여건 향상을 위한 물품 구매 ○ 농지불법 대응 공용전화 요금 납부 ○ 15톤이상 대형차량 통행제한지역 단속 현수막 제작(24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040	9,435	-	7,605	
2024	36,971	2,419	-	34,552	
2025	36,709	19,182	-	17,52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한현수	담당자	농업7급 정홍문	전화	4262
-----	-------	------------	-----	----------	----	------

불법농지 감정평가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농지		
사업목적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8. 17.>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6,000	56,000	56,000	0	0	0	25,000	-31,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6,000	56,000	56,000				25,000	-31,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	
불법농지 감정평가	201-01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 500,000원*50필지 = 25,000	25,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산정 시에 감정평가액 산출을 위한 수수료 발생
- 농지보전부담금(농지관리기금) 수납액의 4% 범위 내에서 지출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지급받음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을 예측할 수 없으나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 감정평가 대상 사업량 감소로 과년도 대비 일부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8.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규정 신설
- 2022. 7. ~ 9. : 감정평가 의뢰(3건)
- 2023. 1. ~ 12. : 감정평가 의뢰(1건), 지적측량(1건)
- 2024. 1. ~ 12. : 감정평가 의뢰(5건), 지적측량(2건)
- 2025. 1. ~ 12. :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이용실태조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1월 ~ 12월 : 감정평가 의뢰(1건), 지적측량(1건)
2024	○ 2024. 1월 ~ 12월 : 감정평가 의뢰(5건), 지적측량(2건) / 부과 4건 (이행강제금 부과액 639,438천원)
2025	○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정기조사대상 15,776필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6,000	4,446	-	51,554	
2024	56,000	15,232	-	40,768	
2025	56,000	-	-	56,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한현수	담당자	농업8급 김보석	전화	4267
-----	-------	------------	-----	----------	----	------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소재 농지
사업규모	20,999ha(34,315필지)		
사업목적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8,939	147,666	82,130	0	21,686	43,850	152,072	4,406	
국비	69,257	92,470	57,491		7,509	27,470	95,229	2,759	
도비	0	0						0	
시비	29,682	55,196	24,639		14,177	16,380	56,843	1,64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2,072	
농지이용실태 조사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 93,840원 * 21명 * 46.4일 = ·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보조원 인건비 : 93,840원 * 8명 * 74.7일 =	91,473 56,106	
	201-01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구입 : 561,620원 * 8개소 =	4,493	

□ 예산요구 사유

- 농지불법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전용 여부 조사를 위한 이용실태 조사 보조인력 채용
- 농지정보의 DB자료 및 필지별 농지대장 현행화 연중 추진을 위한 조사 보조인력 채용

□ 예산증감 사유

-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기금 70% : 시비 30%), 농지대장 현행화조사 인건비(기금 50% : 시비 50%), 사무관리비(기금 70% : 시비 30%) 가내시에 따른 금액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 농지대장 현행화 정비계획 수립
 - 2026. 4. ~ 12. : 농지대장 현행화 및 현장조사
 - 2026. 7. ~ :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26. 8. ~ :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대상 등록 및 확정
 - 2026. 9. ~ 11. :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등록
 - 2027. 2. ~ 3. : 농지이용실태조사 최종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20,104필지)
2024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18,766필지)
2025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34,315필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9,263	81,879	-	7,384	
2024	98,939	93,570	-	5,369	
2025	147,666	51,625	-	96,04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한현수	담당자	농업8급 김보석	전화	4267
-----	-------	------------	-----	----------	----	------

2026년 스마트팜 벤치마킹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대표자	최동철
사업목적	후계농업경영인회 스마트팜 벤치마킹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단체 사기 진작 및 김포농업 발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tam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0	0	0	0	0	0	45,320	45,320	
시비		0					20,000	20,000	
자부담		0					25,320	25,32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45,320	20,000	25,320	
2026년 스마트팜 벤치마킹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항공 운임료: 700,000원*40명 · 숙박비: 170,000원*20실*3박 · 식비: 9,000원*40명*12식 · 버스 임차비: 700,000원*1대*4일	= 28,000 = 10,200 = 4,320 = 2,800	12,500 5,000 1,350 1,150	15,500 5,200 2,970 1,65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 인구 및 노동력 감소에 따른 ICT, AI를 활용한 미래형 정밀농업 (스마트팜) 필요성 대두
- 로봇, 드론, ICT 물관리시설, 데이터 플랫폼, 자동주행 농기계 등 스마트 농업기술 현장중심 이해 및 관내 도입을 위해 오사카 부립대학 스마트팜 연구개발센터, 농과녹색의융합사무소(드론 등 스마트농업 실증센터) 등 우수시설 벤치마킹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미래형 정밀농업(스마트팜) 도입과 시범사업(실증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우수 농업기술 벤치마킹에 필요한 신규 예산으로, 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임원·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각 농업단체 중소농 등 40여 명에 대한 전반적 견학 소요 비용 편성(항공 운임료, 숙박비, 식비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	-	-	-	-	-	-	-	-	해당없음
2024	-	-	-	-	-	-	-	-	-	해당없음
2025	-	-	-	-	-	-	-	-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어업인 6,348명		
사업목적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삶의 질 향상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7,287,300	7,317,300	-30,000	0	0	4,626,500	-2,660,8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3,643,650	3,658,650	-15,000	0	0	2,313,250	-1,330,400	
시비	0	3,643,650	3,658,650	-15,000	0	0	2,313,250	-1,330,40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626,500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10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행정보조원 : 2,852,000원*10명*6개월	= 171,120	
	201-01 사무관리비	· 읍면동위원회운영비 : 100,000원*60명*2회	= 12,000	
		· 시위원회운영비 : 100,000원*9명*2회	= 1,800	
		· 사무관리비(홍보물 제작, 기간제근로자 사무장비렌탈 등)	= 16,080	
	301-14 기타보상금	· 농어민 기회소득(일반농어민) : 600,000원*5,834명 · 농어민 기회소득(청년,귀농,환경농어민) : 1,800,000원*514명	= 3,500,400 = 925,1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 고령화, 지역 소멸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특정 농어민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재생 및 발전 기여
- 김포시 농업인 6,348명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가내시 반영(도비 매칭으로 추경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승인
일자	2025.11. 반영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홍보
 - 2026. 3. ~ 4. :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접수
 - 2026. 5. : 1차 지급요건 확인(위원회 운영)
 - 2026. 6. : 1차 지급
 - 2026. 9. ~ 10. :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접수
 - 2026. 11. : 2차 지급요건 확인(위원회 운영)
 - 2026. 12. : 2차 지급 및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소요액 : 2,910,518천원 · 사업내용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및 기회소득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7,287,300	2,910,518	-	4,376,78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매월 947부		
사업목적	농업인에게 최신 경향의 농업정보지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5,377	65,377	65,377	0	0	0	90,963	25,586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19,613	19,613	19,613	0	0	0	27,290	7,677	
시비	45,764	45,764	45,764	0	0	0	63,673	17,909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963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201-01 사무관리비	· 구독료 : (신문8,800원*476명*12월)+(소식지7,200원*471명*12월) =	90,963	

□ 예산요구 사유

- 온라인 정보취득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유통기술 등의 종합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산물 수입개방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농업관련 동향 등의 정보 제공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가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농업소식 신문 및 소식지 대상자 모집
 - 2026. 1. ~ 12. : 분기별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한국농어민신문 : 7,600원*375명*12월 = 34,200천원 · 월간친환경 : 7,000원*53명*12월 = 4,452천원 · 월간새농사 : 7,000원*15명*12월 = 1,260천원 · 한국농업신문 : 6,000원*180명*12월 = 12,960천원
2024	· 한국농어민신문 : 6,840원*239명*11월 = 17,982천원 · 월간친환경 : 6,300원*155명*12월 = 11,718천원 · 월간새농사 : 6,300원*65명*12월 = 4,914천원 · 한국농업신문 : 5,400원*201명*12월 = 13,025천원 · 여성농업인신문 : 5,850원*158명*12월 = 11,092천원
2025	· 한국농어민신문 : 7,600원*208명*6월 = 9,485천원 · 월간친환경 : 6,650원*155명*6월 = 6,185천원 · 월간새농사 : 8,075원*50명*6월 = 2,422천원 · 한국농업신문 : 6,365원*180명*6월 = 6,874천원 · 여성농업인신문 : 6,460원*157명*6월 = 6,08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000	52,872	-	128	
2024	65,377	55,958	-	9,419	
2025	65,377	31,051	-	34,32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농업인자녀(대학생)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 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0	120	120	0	0	0	60	-6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120	120	120	0	0	0	60	-6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이자 차액 보전금 : 15,000원*1명*4분기	= 60	

□ 예산요구 사유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안정화

□ 예산증감 사유

- 2021년부터 신규 선발 중단으로 2027년까지 남은 인원이 1명이므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 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분기별 이자차액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1~4분기 268천원 지급
2024	○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1~4분기 104천원 지급
2025	○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1~3분기 46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	147	-	853	
2024	120	104	-	16	
2025	120	46	-	7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여성농어업인 685명		
사업목적	농촌지역 여성농어업인 보건·문화 이용비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720	88,480	92,160	0	-3,680	0	109,600	21,12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15,216	26,544	27,648	0	-1,104	0	32,880	6,336	
시비	35,504	61,936	64,512	0	-2,576	0	76,720	14,784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9,60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바우처카드 : 200,000원*685명*80%	= 109,600	

□ 예산요구 사유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 및 문화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업인 건강 증진 및 생산성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 2026. 3.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선정
 - 2026. 4. : 보조금 집행(시 → 농협)
 - 2026. 4. ~ 12. : 선정자 바우처카드 지급 및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대상자 227명 바우처카드 지원 (개인당 연 20만원, 자부담 4만원)
2024	· 사업대상자 487명 바우처카드 지원 (개인당 연 20만원, 자부담 4만원)
2025	· 사업대상자 540명 바우처카드 지원 (개인당 연 20만원, 자부담 4만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320	36,320	-	-	
2024	50,720	50,720	-	-	
2025	88,480	86,400	-	2,0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농어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가 소득증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5,6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60,000	60,000	0	0	0	20,000	-40,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30,000	30,000	0	0	0	10,000	-20,000	
시비	0	30,000	30,000	0	0	0	10,000	-20,00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설·장비 지원 : 20,000,000원*1명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선발 결과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
-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기반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어가 경영 지원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선발자 1명으로 1인당 20,000천원(도비50%, 시비50%) 시설장비 지원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소득기반 지원 사업계획 수립
 - 2026. 3. ~ 4. : 소득기반 지원 사업신청서 제출
 - 2026. 4. ~ 12. : 소득기반 지원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시설 장비 지원(2명, 40,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60,000	40,000	-	2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여성농업인 434명			
사업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 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51,480	51,480	0	0	0	84,351	32,871	
국비	0	28,600	28,600	0	0	0	46,862	18,262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0	22,880	22,880	0	0	0	37,489	14,609	
기타	0	5,720	5,720	0	0	0	9,372	3,652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4,35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	.특수건강검진비 : 215,952원*434명*90%	= 84,351	

□ 예산요구 사유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가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접수
 - 2026. 2. : 검진 의료기관 신청·접수 및 지정
 - 2026. 3. ~ 12.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2026. 1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168명 3,232천원 지원
2024	· 사업 미배정
2025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77명 14,117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	3,232	-	768	
2024	-	-	-	-	
2025	51,480	14,117	-	37,36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사업규모	1개소 300명		
사업목적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75,600	75,600	0	0	0	25,200	-50,400	
국비	0	43,200	43,200	0	0	0	14,400	-28,80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0	32,400	32,400	0	0	0	10,800	-21,600	
기타	0	32,400	32,400	0	0	0	10,800	-21,6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200	
농촌 왕진버스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왕진버스(의료서비스 지원) : 120,000원*300명*1개소*70% =	25,200	

□ 예산요구 사유

- 차량·장소·의료기기 임차료, 약제·재료 구입비, 유류비, 홍보비, 진료비, 식비, 교통비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요구
-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사업 신청 3개소 → 1개소로 감소하여 예산 감액, 가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운영계획 수립
 - 2026. 1. ~ 2. : 보조금 집행(시 → 농협)
 - 2026. 2. ~ 4. : 지역별로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농촌 왕진버스 보조금 집행(75,6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75,600	75,6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		
사업목적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육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33	976	976	0	0	0	732	-244	
국비	229	305	305				229	-76	25%
도비		0						0	
시비	504	671	671				503	-168	55%
기타	185	244	244				183	-61	자부담2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32	
농촌체험휴양 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등 교육비 : 300,000원*3명*80% =	732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 리더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역량강화교육 기본계획 시달 및 수립
 - 2026. 3. ~ 11. : 역량강화교육 추진
 - 2026. 12. : 교육운영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3개소(한강노을빛마을, 매화미르마을, 달미마을) ○ 집행액 : 720천원
2024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2개소(한강노을빛마을, 매화미르마을) ○ 집행액 : 733천원
2025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1개소(한강노을빛마을) ○ 집행액 : 24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0	720	-	-	
2024	733	733	-	-	
2025	976	240	-	73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6급 장경남	전화	4252
-----	-------	------------	-----	----------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촌체험휴양마을 1개소		
사업목적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2조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육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786	13,230	17,640	0	0	-4,410	15,840	2,610	
국비		0						0	
도비	5,936	3,969	5,292			-1,323	4,752	783	18%
시비	13,850	9,261	12,348			-3,087	11,088	1,827	42%
기타	4,946	5,670	7,560			-1,890	10,560	4,890	자부담4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840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사무장 활동비) : 2,200,000원(최저월임금)*12개월*1명*60%	15,84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우수인력 유치 및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보조율 감소(70% → 60%)에 따른 감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시행지침 시달 및 수립
- 2026. 3. ~ 12. :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추진(매월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1개소(한강노을빛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2024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1개소(한강노을빛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2025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1개소(한강노을빛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720	21,719	-	1	
2024	19,786	19,786	-	-	
2025	13,230	7,350		5,8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6급 장경남	전화	4252
-----	-------	------------	-----	----------	----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		
사업목적	체험객의 안전한 농촌체험 보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보호를 통해 안전강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육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41	1,872	2,288	0	-416	0	1,703	-169	
국비	1,088	1,170	1,430		-260		1,065	-105	50%
도비		0						0	
시비	653	702	858		-156		638	-64	30%
기타	435	468	572		-104		426	-42	지부담2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3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비 지원 : 710,000원*3개소*80%	= 1,703	

□ 예산요구 사유

- 안전한 체험활동 조성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장치 마련 및 관광객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 감소에 따른 예산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시행지침 시달 및 수립
- 2026. 3. ~ 10. : 보험가입 수요조사(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26. 11. ~ 12. : 결과보고 및 평가(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3개소(한강노을빛마을, 매화미르마을, 달피마을) ○ 내 용 :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2024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1개소(한강노을빛마을) ○ 내 용 :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2025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1개소(한강노을빛마을) ○ 내 용 :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84	1,584	-	-	
2024	1,741	1,342	-	399	
2025	1,872	1,496		37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6급 장경남	전화	4252
-----	-------	------------	-----	----------	----	------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어촌민박 사업장 4개소		
사업목적	재난에 취약한 농촌 민박시설에 대해 민간 전문인력(전기·소방·가스·시설물 분야)을 활용한 안전점검 추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6조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0	350	350	0	0	0	200	-150	
국비		0						0	
도비	120	105	105				60	-45	30%
시비	280	245	245				140	-105	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농촌민박 안전관리 수수료 : 개소당 50,000원 * 4개소 =	200	

□ 예산요구 사유

- 재난에 취약한 농촌민박시설에 대해 민간 전문인력(전기·소방·가스분야)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농촌민박의 안전성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대비 농촌민박 안전관리점검 도비지원 사업량 감소로 예산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12. :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촌민박 안전관리 점검 : 9개소(자체 + 보조)
2024	○ 농촌민박 안전관리 점검 : 9개소(자체 + 보조)
2025	○ 농촌민박 안전관리 점검 : 10개소(자체 + 보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75	975	-	-	
2024	400	400	-	-	
2025	350	35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6급 장경남	전화	4252
-----	-------	------------	-----	----------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3,775ha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532,000	9,772,000	9,772,000	0	0	0	9,020,000	-752,000	
국비	8,532,000	9,772,000	9,772,000				9,020,000	-752,0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20,000													
기본형 공익직불제	301-14 기타보상금	· 사업량 : 3,775ha	9,020,000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 논·밭, 진흥·비진흥 등에 따라 면적 구간별 지급 (단위 : 만원/ha)														
		<table><tr><th>구분</th><th>2ha이하</th><th>2ha초과~6ha이하</th><th>6ha 초과</th></tr><tr><td>논·밭, 진흥</td><td>205</td><td>197</td><td>189</td></tr><tr><td>논 비진흥</td><td>178</td><td>170</td><td>162</td></tr><tr><td>밭 비진흥</td><td>134</td><td>117</td><td>100</td></tr></table>			구분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논·밭, 진흥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구분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논·밭, 진흥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감소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지침수립 및 사전검증
 - 2026. 03. ~ 04. : 신청·등록
 - 2026. 05. : 등록증 발급
 - 2026. 06. ~ 10. : 신청인 자격 대량검증 및 등록 대상자 확정
 - 2026. 11. ~ 12. : 직불금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6,942농가 / 3,806ha / 8,367,548천원
2024	· 5,975농가 / 3,690.7ha / 8,285,174천원
2025	· 사업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590,254	8,367,548	-	222,706	
2024	8,532,000	8,286,174	-	245,826	
2025	9,772,000	-	-	9,77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농업정책과, 읍·면·동
사업규모	12개소		
사업목적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000	45,000	40,000	0	5,000	0	46,000	1,000	
국비	33,000	45,000	40,000		5,000		46,000	1,0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6,000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4,800,000원*7개소	= 33,600	
	201-01 사무관리비	. 등록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 1,000,000원*1개소 . 등록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 600,000원*1개소 . 등록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 500,000원*7개소 . 등록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 400,000원*3개소	= 6,300	
	201-02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 : 1,500,000원*1개소 . 우편요금 : 1,100,000원*2개소 . 우편요금 : 700,000원*3개소 . 우편요금 : 300,000원*1개소	= 6,100	

□ 예산요구 사유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우편발송 건수 증가(부정수급 환수 등)로 예산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4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승인
일자	2025.11. 반영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04. : 행정경비 사용계획 수립 및 읍면동 재배정
 - 2026. 05. ~ 12. : 사업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소요액 : 41,162천원 · 사업내용 : 위원회 수당, 직불금 사무보조원 급여, 기타 사무용품 구입
2024	· 소요액 : 32,945천원 · 사업내용 : 위원회 수당, 직불금 사무보조원 급여, 기타 사무용품 구입
2025	· 소요액 : 40,901천원 · 사업내용 : 위원회 수당, 직불금 사무보조원 급여, 기타 사무용품 구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3,700	41,162	-	2,538	
2024	33,000	32,945	-	55	
2025	45,000	40,930	-	4,07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친환경인증농가
사업규모	221ha		
사업목적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 인증단계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호
		제 7조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 5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00	270,000	270,000	0	0	0	27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0	270,000	270,000				270,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00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금	301-14 기타보상금	·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금 : 1,221,719원*221ha - 쌀(유기농 2,150 / 무농약 1,500) - 과실류(유기농 4,950 / 무농약 3,950) - 채소 및 기타 발작물(유기농 3,950 / 무농약 2,950)	= 270,000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 인증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8. : 추진계획 수립
 - 2026. 8. ~ 10. : 사업신청
 - 2026. 11. : 이행점검
 - 2026.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가수 : 112농가 · 지급면적 : 135.6ha · 지급금액 : 305,871천원
2024	· 농가수 : 119농가 · 지급면적 : 153ha · 지급금액 : 286,197천원
2025	· 사업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0,000	305,871	-	64,129	
2024	300,000	286,197	-	13,803	
2025	270,000	-	-	27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친환경농업직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82.8ha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1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5,780	59,719	59,719	0	0	0	69,537	9,818	
국비	35,780	59,719	59,719				69,537	9,818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9,537																				
친환경 농업직불	301-14 기타보상금	· 지급한도 : 0.1 ~ 30 ha/농가 · 지급단가 (단위 : 천원/ha) <table><tr><th rowspan="2">인증단계</th><th>논</th><th colspan="2">밭</th></tr><tr><th>벼·연근·미나리</th><th>과수</th><th>채소·특작·기타</th></tr><tr><td>유기</td><td>700</td><td>1,400</td><td>1,300</td></tr><tr><td>무농약</td><td>500</td><td>1,200</td><td>1,100</td></tr><tr><td>유기지속</td><td>350</td><td>700</td><td>650</td></tr></table> ※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지원 ※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 대해 유기지속직불금(50%) 기한없이 지속 지급	인증단계	논	밭		벼·연근·미나리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69,537	
		인증단계		논	밭																		
			벼·연근·미나리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예산요구 사유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친환경 농지 증가로 인해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04. : 신청 및 접수
 - 2026. 05.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5. ~ 10. : 이행점검
 - 2026. 11. ~ 12. : 직불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62건 / 48.7ha / 27,160천원
2024	· 78건 / 58.2ha / 34,779천원
2025	· 사업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872	27,160	-	1,712	
2024	35,780	34,779	-	1,001	
2025	59,719	-	-	59,71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농협, 고촌농협, 신김포농협		대표자	김명희, 조동환, 박호연	
사업목적	우량상토 지원을 통한 토양오염 및 병충해 예방으로 건전육묘 생산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5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712,000	693,000	645,230	0	47,770	0	706,642	61,412	
시비	356,000	346,500	322,615	0	23,885	0	353,321	30,706	
자부담	356,000	346,500	322,615	0	23,885	0	353,321	30,706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706,642	353,321	353,321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상토 : 4,170원* 169,450포*50% ※ 상토단가 : 약 80종류 평균 가격이며, 상토 종류 및 규격 = 마다 매년 가격 상이	706,642	353,321	353,321	

□ 예산요구 사유

- 벼 못자리 상토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품질 김포쌀 안정적 생산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상토 평균가격('25년 3,987원→'26년 4,170원)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 ○ 추진실적 : 못자리상토 165,501포 지원
2024	○ 보조사업자: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 ○ 추진실적 : 못자리상토 161,824포 지원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660,000	396,000	264,000	658,032	394,819	263,213	1,968	1,181	787	
2024	712,000	356,000	356,000	644,938	322,469	322,469	67,062	33,531	33,531	
2025	693,000	346,500	346,500	-	-	-	693,000	346,500	346,5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예비못자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한국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대표자	최동철
사업목적	못자리 실패 농가에 예비모 지원을 통하여 수도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김포쌀 안정 생산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탬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5호
법령 위임규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0,415	10,412	10,412	0	0	0	9,372	-1,040	
시비	10,415	10,412	10,412	0	0	0	9,372	-1,040	
자부담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9,372	9,372	0	
예비못자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못자리 : 4,000원*2,343판 =	9,372	9,372	0	

□ 예산요구 사유

- 병충해, 기상이변 등으로 못자리 피해 입은 농가에 예비못자리 설치 및 지원을 통하여 적기 모내기를 통한 고품질 김포쌀 생산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예비모판 사업량 감소(2,740판 → 2,343판)에 따른 예산 감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한국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 추진실적 : 예비모 3,500판 지원
2024	○ 보조사업자: 한국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 추진실적 : 예비모 2,500판 지원
2025	○ 보조사업자: 한국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 추진실적 : 예비모 2,740판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2,250	12,250	-	12,250	12,250	-	-	-	-	
2024	10,415	10,415	-	10,415	10,415	-	-	-	-	
2025	10,412	10,412	-	10,412	10,412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고촌, 양촌, 동지역
사업규모	604톤		
사업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지법	제21조 제2항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18,715	452,123	429,972	22,151	0	0	136,071	-316,052	
국비	133,221	277,913	261,768	16,145	0	0	83,241	-194,672	
도비	42,747	87,105	84,102	3,003	0	0	26,415	-60,690	
시비	42,747	87,105	84,102	3,003	0	0	26,415	-60,69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6,071	
토양개량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토양개량제 : 225천원 * 604톤 ※ 토양개량제 단가 : 규산질 175천원/톤, 석회고토 195천원/톤 ≡ 공동살포 국비500원/20kg	136,071	

□ 예산요구 사유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패화석) 공급으로 지력 유지
-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 및 밭 토양의 산도를 높임으로써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2. :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규산)실시
 - 2026. 3. ~ 4.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026. 5. ~ 10. : 토양개량제 살포 현황 점검
 - 2026. 11.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급량 : 608톤(고촌, 양촌, 동지역) - 지급금액 : 122,245천원
2024	- 공급량 : 945톤(대곶, 양촌) - 지급금액 : 200,947천원
2025	- 공급량 : 1,729톤(월곶, 하성) - 지급금액 : 383,78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6,987	122,245	-	14,742	
2024	218,715	200,947	-	17,768	
2025	452,123	383,781	-	68,34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9급 김대곤	전화	4285
-----	-------	------------	-----	----------	----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농지
사업규모	7,532개소		
사업목적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0,060	419,613	419,613	0	0	0	391,333	-28,28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87,018	125,884	125,884	0	0	0	117,400	-8,484	
시비	203,042	293,729	293,729	0	0	0	273,933	-19,796	
기타	96,686	225,945	225,945	0	0	0	210,717	-15,228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1,333	
농업인안전 재해보험	307-06 보험금	· 보험료 : 유형별 최종 보험료 상이 - 보조비율 : 도비 9.75%, 도비 22.75%, 자부담 17.5% ※ 국비(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 -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391,333	

□ 예산요구 사유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 기여
-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 보호로 사회안전망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홍보 및 사업비 지급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6,404건(농기계종합보험 1,205건, 농업인안전보험 5,199건) · 집행액 : 336,304천원(농기계종합보험 135,063천원, 농업인안전보험 201,241천원)
2024	· 사업량 : 5,403건(농기계종합보험 1,212건, 농업인안전보험 4,191건) · 집행액 : 287,763천원(농기계종합보험 130,195천원, 농업인안전보험 157,568천원)
2025	· 사업량 : 6,672건(농기계종합보험 1,243건, 농업인안전보험 5,429건) · 집행액 : 293,802천원(농기계종합보험 120,748천원, 농업인안전보험 173,054천원)/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2,611	336,304	-	6,307	
2024	290,060	287,763	-	2,297	
2025	419,613	293,802	-	125,81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1대		
사업목적		농작업의 기계화·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 및 품질고급화 추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8조
		「제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5,000	60,000	60,000	0	0	0	15,000	-45,000	
국비	0	0						0	
도비	13,500	18,000	18,000				4,500	-13,500	
시비	31,500	42,000	42,000				10,500	-31,500	
기타	45,000	60,000	60,000				15,000	-45,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무인멀티콥터 : 30,000천원 * 1대 * 50%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구입 지원을 통해 병해충 공동방제 및 종자 파종에 이용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2. : 사업 신청
 - 2026. 3. ~ 6.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26. 7. ~ 12.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3개소 - 지급액 : 40,773천원
2024	- 사업량 : 2개소 - 지급액 : 41,986천원
2025	- 사업량 : 4개소 - 지급액 : 60,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000	40,773	-	4,227	
2024	45,000	41,986	-	3,014	
2025	60,000	6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9급 김대곤	전화	4285
-----	-------	------------	-----	----------	----	------

친환경재배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승마산친환경단지 외 4개소	대표자	박상태 외
사업목적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탐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호, 제8호
		제7조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60,000	60,000	60,000	0	0	0	60,000	0	
시비	30,000	30,000	30,000				30,000	0	
자부담	30,000	30,000	30,000				30,00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60,000	30,000	30,000	
친환경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 동력제초기 : 5,280,000원*1대*50%	= 5,280	2,640	2,640	
		· 진동형땅속작물수확기 : 4,700,000원*1대*50%	= 4,700	2,350	2,350	
		· 곡물운반탱크 : 4,300,000원*1대*50%	= 4,300	2,150	2,150	
		· 곡물건조기 : 20,000,000원*1대*50%	= 20,000	10,000	10,000	
		· 동력제초기 : 3,600,000원*2대*50%	= 7,200	3,600	3,600	
		· 자동주유기 : 3,300,000원*1대*50%	= 3,300	1,650	1,650	
		· 곡물이송기 : 4,000,000원*2대*50%	= 8,000	4,000	4,000	
		· 법씨탈수기 : 7,220,000원*1대*50%	= 7,220	3,610	3,610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확대 필요
- 농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 해소 및 농작업 시간 단축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과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자 : 4개소(우리뜰영농회, 문수산친환경작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승마산친환경단지) ○ 사업량 : 16대 ○ 집행액 : 65,000천원
2024	○ 사업자 : 4개소(우리뜰영농회, 문수산친환경작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승마산친환경단지) ○ 사업량 : 9대 ○ 집행액 : 30,000천원
2025	○ 사업자 : 5개소(우리뜰영농회, 문수산친환경작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승마산친환경단지, 조강친환경단지) ○ 사업량 : 15대 ○ 집행액 : 15,000천원(3개소/8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30,000	65,000	65,000	130,000	65,000	65,000	-	-	-	
2024	60,000	30,000	30,000	60,000	30,000	30,000	-	-	-	
2025	60,000	30,000	30,000	30,000	15,000	15,000	30,000	15,000	15,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47대		
사업목적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영농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법령 위임규정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8,100	186,000	90,000	96,000	0	0	58,750	-127,250	
국비		0						0	
도비	62,430	55,800	27,000	28,800			17,625	-38,175	
시비	145,670	130,200	63,000	67,200			41,125	-89,075	
기타	208,100	186,000	90,000	96,000			58,750	-127,2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8,750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총 사업량 : 47대 . 품목별 지급단가 -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 : 5,000,000원/대 - 보행관리기 : 1,500,000원/대 - 전동전지가위 : 150,000원/대 - 전동분무기 : 150,000원/대 - 농산물작업대 : 300,000원/대	58,75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적 약자와 농업을 시작하는 소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 편의 도모,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수요조사 185대로 제출했으나, 경기도 사업예산 축소로 감소되어 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신청 및 접수
 - 2026. 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4. ~ 08. : 보조금 집행 등 사업추진
 - 2026. 09.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동력운반차 : 2대 . 소형트랙터 : 3대 . 보행관리기 : 111대 . 전동전지가위 : 7대 . 전동분무기 : 22대
2024	. 고소작업차 : 1대 . 동력운반차 : 6대 . 보행관리기 : 121대 . 전동분무기 : 52대 . 전동전지가위 : 29대
2025	. 동력운반차 : 5대 . 소형트랙터 : 2대 . 보행관리기 : 98대 . 전동전지가위 : 14대 . 전동분무기 : 31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5,050	199,685	-	15,365	
2024	208,100	204,095	-	4,005	
2025	186,000	185,036	-	96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친환경 수도작 단지 7개소		
사업목적	농업부산물 자원의 재생산·재활용, 농약화학비료의 투입량 감축, 생산력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한 토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시스템 구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4호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친환경농어업단지 조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20,267	469,090	473,231	0	0	-4,141	465,300	-3,790	
국비		0						0	
도비	186,080	140,728	141,969			-1,241	139,500	-1,228	
시비	434,187	328,362	331,262			-2,900	325,800	-2,56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65,300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및 제초작업·드론살포비 등 : 196ha*2,366천원 = ※ 신청단지 및 품목별 단가 상이	465,300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 수도작 단지에 친환경농자재 구입비용 및 신규 친환경 인증 필지에 대한 소득보전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1. ~ 2. : 사업신청 및 사업량 확정
 - 2026. 3. ~ 12.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 2026. 12. :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단지 : 6개소(도사골친환경단지, 문수산친환경작목회, 승마산친환경단지, 우리뜰영농회, 제일영농, 조강친환경단지) · 집행금액 : 625,184천원
2024	· 지원단지 : 6개소(도사골친환경단지, 문수산친환경작목회, 승마산친환경단지, 우리뜰영농회, 제일영농, 조강친환경단지) · 집행금액 : 617,569천원
2025	· 지원단지 : 7개소(도사골친환경단지, 문수산친환경작목회, 승마산친환경단지, 우리뜰영농회, 제일영농, 조강친환경단지, 김포시농촌지도자 영농조합법인) · 집행금액 : 459,04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25,526	625,184	-	342	
2024	620,267	617,569	-	2,698	
2025	469,090	459,054	-	10,03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77ha		
사업목적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경작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지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3,033	113,947	123,033	0	0	-9,086	92,813	-21,134	
국비		0						0	
도비	24,607	34,184	24,607			9,577	27,844	-6,340	
시비	98,426	79,763	98,426			-18,663	64,969	-14,79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2,813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301-14 기타보상금	. 사업내용 : 사업신청일 ~ 2026. 10. 31.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필지에 장려금 지급 . 사 업 량 : 177ha . 품목별 지급 단가 - 곡류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 채소·과채·특작류·기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 과실류 : 유기 1,500천원/ha, 무농약 1,380/ha * 품목, 재배 면적 등에 따라 농가별 보조금 상이	= 92,813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 대비 생산비 증가와 수량감소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으로 실천농가 확산 어려움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유지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장려금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사업지침 설명 및 홍보
 - 2026. 3. ~ 4. : 친환경 재배장려금 신청
 - 2026. 5. ~ 11. : 이행점검
 - 2026. 12.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가수 : 124농가 · 지급면적 : 134.4ha · 지급금액 : 74,791천원
2024	· 농가수 : 137농가 · 지급면적 : 175ha · 지급금액 : 93,394천원
2025	·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6,075	74,791	-	21,284	
2024	123,033	93,394	-	29,639	
2025	113,947	-	-	113,94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전략작물직불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93ha		
사업목적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2,000	310,000	310,000	0	0	0	466,000	156,000	
국비	82,000	310,000	310,000				466,000	156,0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66,000	
전략 작물직불금	301-14 기타보상금	· 품목별 지급 단가	= 466,000	
		구 분		
		동계		
		하계		
		이 모 작		
		인센티브 혜택 (해당 작물 이모작 시)		
		동계 밀 · 조사료 + 하계 두류 · 가루쌀		
		지원단가		
		밀	100원/㎡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50원/㎡	
		가루쌀, 두류	200원/㎡	
		옥수수	100원/㎡	
		조사료	500원/㎡	
		100원/㎡ 추가 지급		

□ 예산요구 사유

-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밀, 콩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생산을 확대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조정 필요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05. : 신청 및 접수
 - 2026. 04.(동계) / 07.(하계) : 전략작물직불금 위원회 심의
 - 2026. 04. ~ 06.(동계) / 07.~10.(하계) : 이행점검
 - 2026. 07.(동계) / 10.~11.(하계) : 지급대상자 검증 및 확정
 - 2026. 08.(동계) / 12.(하계) : 직불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6농가 / 20.1ha / 25,237천원
2024	· 62농가 / 32.8ha / 65,591천원
2025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000	25,237	-	7,763	
2024	82,000	65,591	-	16,409	
2025	310,000	-	-	31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상토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식					
사업목적		상토지원시스템 서버 및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추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	10,000	10,000	0	0	0	10,000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10,000	10,000	10,000	0	0	0	10,00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상토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상토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 특급개발프로그램 인건비(12개월) : 45,000원*1명*42시간 = 1,890 - 중급개발프로그램 인건비(12개월) : 35,000원*1명*42시간 = 1,470 - 중급디자인 인건비(12개월) : 33,000원*1명*40시간 = 1,320 - 중급퍼블리셔 인건비(12개월) : 33,000원*1명*40시간 = 1,320 - 시스템전문가 인건비(12개월) : 33,000원*1명*50시간 = 1,650 - 제경비, 영업이윤, 부가가치세 = 2,350		

□ 예산요구 사유

- 상토지원시스템 서버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로 안정적인 운영 추진
- 상토지원시스템 서버 및 프로그램 전문업체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 2026. 1. ~ 12. : 상토지원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체결 및 추진, 사업완료 및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사업량 : 1식 · 집행액 : 9,000천원
2025	· 사업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0,000	9,000	-	1,000	
2025	10,000	-	-	1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약 4,283ha		
사업목적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제10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77,000	77,000	0	0	0	147,759	70,759	
국비		77,000	77,000				147,759	70,759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7,759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301-14 기타보상금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 4,283ha · 지급단가 - 중간 물떼기 : 15만원/ha - 논물 얇게 걸러대기 : 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등 : 36.4만원/ha - 가을갈이 : 46만원/ha	≒ 147,759	

□ 예산요구 사유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호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신청 및 접수
 - 2026. 03.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
 - 2026. 03. ~ 11. : 활동이행 및 이행점검
 - 2026. 11. ~ 12. : 활동비 산정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사업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77,000	-	-	77,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약 29.9ha		
사업목적		농업생산의 부산물(가축분뇨, 볏짚 등)을 농업생산 내부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농업 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제6호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제4호 가축분뇨 자원화(퇴비·액비 등)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6,076	6,076	
국비		0						0	
도비		0					1,823	1,823	
시비		0					4,253	4,25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76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급단가 : 20.3원/㎡이내 · 산출내역 : 29.9ha*20.3원/㎡	6,076	

□ 예산요구 사유

- 경종농가(단체)의 경축순환농업 참여에 따른 생산비용의 일부 직접 지원
- 농축산물의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토양·수질 등 환경보전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신청 및 접수
- 2026. 01. ~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2. ~ 11. : 활동이행 및 이행점검
- 2026. 11. ~ 12. : 활동비 산정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30건		
사업목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농·무농약)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790	28,790	28,790	0	0	0	17,140	-11,650	
국비		0						0	
도비	5,758	8,637	8,637				5,140	-3,497	
시비	23,032	20,153	20,153				12,000	-8,15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140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301-14 기타보상금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비 : 263,690원*130건*50%	= 17,140	

□ 예산요구 사유

- 수수료, 심사원출장비, 토양·수질·잔류농약 분석비, 운영실비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으로 친환경재배 농업인의 경영부담 경감
-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 충족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대비 사업량(150건→130건)감소에 따른 예산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계획수립 및 홍보
 - 2026. 2. ~ 12. : 사업신청 접수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가수 : 151농가 · 지원면적 : 184ha · 지원금액 : 47,000천원
2024	· 농가수 : 109농가 · 지원면적 : 183ha · 지원금액 : 28,790천원
2025	· 농가수 : 126농가 · 지원면적 : 180ha · 지원금액 : 28,79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000	47,000	-	-	
2024	28,790	28,790	-	-	
2025	28,790	28,79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365톤		
사업목적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비료관리법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30,828	530,828	530,828	0	0	0	530,828	0	
국비		0						0	
도비								0	
시비	530,828	530,828	530,828				530,828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30,828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질 복합비료), 부속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지급단가 (단위 : 원/20kg기준)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특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h>관내비료 (추가)</th></tr> <tr> <td>유기질</td><td></td><td>1,600</td><td></td><td rowspan="2">300</td></tr> <tr> <td>부속 유기질</td><td>1,600</td><td>1,500</td><td>1,300</td></tr> </table> ·사 업 량 : 6,365톤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관내비료 (추가)	유기질		1,600		300	부속 유기질	1,600	1,500	1,300	= 530,828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관내비료 (추가)														
유기질		1,600		300														
부속 유기질	1,600	1,500	1,300															

□ 예산요구 사유

-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추가지원(포당300원)으로 관내업체 경쟁력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12. : 사업신청
 - 2026. 2. ~ 11. : 유기질비료 공급
 - 2026. 11. : 보조금 지원 교부·신청 및 집행
 - 2026. 12. :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가수 : 3,947농가 - 지원량 : 6,210톤 - 지급금액 : 520,847천원
2024	- 농가수 : 4,161농가 - 지원량 : 6,248톤 - 지급금액 : 521,148천원
2025	- 농가수 : 3,480농가 - 지원량 : 5,714톤 - 지급금액 : 477,978천원(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0,828	520,847	-	9,981	
2024	530,828	521,148	-	9,680	
2025	530,828	477,978	-	52,8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농지
사업규모	853ha		
사업목적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비용부담 및 경영불안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65,350	340,272	371,254	0	-30,982	0	231,450	-108,822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73,070	102,082	111,376	0	-9,294	0	69,435	-32,647	
시비	292,280	238,190	259,878	0	-21,688	0	162,015	-76,175	
기타	90,837	85,068	92,814	0	-7,746	0	57,862	-27,20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1,45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307-06 보험금	· 보험료 : 품목, 면적, 개인 할인을 등에 따라 최종 보험료 상이 - 보조비율 : 도비 12%, 도비 28%, 자부담 10% ※ 국비(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	≡ 231,450	

□ 예산요구 사유

-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보장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홍보 및 사업비 지급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699농가 · 집행액 : 516,100천원
2024	· 사업량 : 653농가 · 집행액 : 363,558천원
2025	· 사업량 : 722농가 · 집행액 : 215,942천원/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16,100	516,100	-	-	
2024	365,350	363,558	-	1,792	
2025	340,272	215,942	-	124,3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47ha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등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5,423	21,549	32,897	-11,348	0	0	21,549	0	
국비	14,169	8,619	13,159	-4,540			8,619	0	
도비		3,879	5,921	-2,042			3,879	0	
시비	21,254	9,051	13,817	-4,766			9,051	0	
기타	35,423	21,549	32,897	-11,348			21,549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549	
유기농업 자재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21,549	

□ 예산요구 사유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예산과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12. : 신청 및 접수
 - 2026. 01. ~ 04.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 2026. 05. ~ 10. : 사업추진
 - 2026. 11. ~ 12. : 사업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55농가 / 39,427천원
2024	· 49농가 / 32,144천원
2025	· 사업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932	39,427	-	11,505	
2024	35,423	32,144	-	3,279	
2025	21,549	-	-	21,54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시설원에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3ha		
사업목적	시설원에 농업냉난방시설 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제2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경영,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1,000	21,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6,300	6,300	
시비	0	0	0	0	0	0	14,700	14,700	
기타	0	0	0	0	0	0	21,000	21,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	
시설원에 농업냉난방 시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지원기준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 12백만원/1,000㎡ - 자가용 태양광 : 1.5백만원/kw기준(개소당 10kw한) - 농업용 냉·난방기 : 17백만원/1,000㎡ * 냉난방기는 자가용 태양광 설치시 희망농가 한에 추가 지원	≡ 21,000	

□ 예산요구 사유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냉방 지원을 통한 농가 피해 저감
- 시설원예농가의 영농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및 육성을 위해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신청 및 접수
 - 2026. 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4. ~ 08. : 보조금 집행 등 사업추진
 - 2026. 09.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회		
사업목적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시·군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 발전방안 공동 모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청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6,000	0	0	6,000	0	3,000	-3,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0	6,000	0	0	6,000	0	3,000	-3,00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201-02 공공운영비	· 고려인삼시군협의회 분담금 : 3,000,000원*1회*1년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국내 및 세계 인삼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각 시·군간 상호교류를 통해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 고려인삼종주국의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5년에는 고려인삼시군협의회 2년치('24년, '25년) 회비를 편성하였으나, '26년의 경우에는 1년치 회비 편성으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분담금 3,000천원 납부
2024	· 해당없음
2025	· 분담금 6,000천원('24년,'25년) 납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	3,000	-	-	
2024	-	-	-	-	
2025	6,000	6,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축산농협 자원순환센터	대표자	임한호
사업목적	가축분의 유기질 비료화를 통한 비료생산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탐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1호
법령 위임규정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제1호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60,000	60,000	60,000	0	0	0	60,000	0	
시비	30,000	30,000	30,000				30,000	0	
자부담	30,000	30,000	30,000				30,00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60,000	30,000	30,000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유기질비료 포장재 : 260원*230,770개*50%	= 60,000	30,000	30,000	

□ 예산요구 사유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자연 순환 농업 정착 지원
- 가축분의 유기질 비료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 증감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유기질비료 포장재 230,770포
2024	○ 유기질비료 포장재 230,770포
2025	○ 추진중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60,000	30,000	30,000	60,000	30,000	30,000	-	-	-	
2024	60,000	30,000	30,000	60,000	30,000	30,000	-	-	-	
2025	60,000	30,000	30,000	60,000	30,000	30,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농지
사업규모	2.9ha		
사업목적	시설하우스용 비닐, 농업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 등 지원으로 농업환경보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563	23,347	9,563	0	13,784	0	10,156	-13,191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2,869	7,004	2,869	0	4,135	0	3,047	-3,957	
시비	6,694	16,343	6,694	0	9,649	0	7,109	-9,234	
기타	9,563	23,347	9,563	0	13,784	0	10,156	-13,191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156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품목별 지급단가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 잡초매트 : 320원/㎡	10,156	

□ 예산요구 사유

- 장기연질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으로 농촌의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 경영안정기여
- 잡초매트 지원으로 농지의 제초제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예방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 2026. 03. ~ 2026. 11.: 환경친화형 농자재 공급 및 보조사업 집행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 가 수 : 12호 · 지급면적 : 6.2ha · 지급금액 : 28,279천원
2024	· 농 가 수 : 11호 · 지급면적 : 2.2ha · 지급금액 : 9,563천원
2025	· 농 가 수 : 6호 · 지급면적 : 2.9ha · 지급금액 : 23,34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279	28,279	-	-	
2024	9,563	9,563	-	-	
2025	23,347	23,347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10개소		
사업목적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지원을 통한 시설원예분야의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및 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98,752	298,752	
국비	0	0	0	0	0	0	135,796	135,796	
도비	0	0	0	0	0	0	48,887	48,887	
시비	0	0	0	0	0	0	114,069	114,069	
기타	0	0	0	0	0	0	244,433	244,433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8,752	
스마트팜ICT 융복합확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지원단가 - 스마트팜 시설보급 : 200백만원 한도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시설원예현대화 : 실단가 적용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수평관취식 13천원/m ² 다겹보온커튼 예인삭외부관취식 11천원/m ²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m ² 다겹보온커튼 에어로겔보온커튼 14천원/m ²	≒ 298,752	

□ 예산요구 사유

-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가 연중 발생함에 따라 자동원격 환경제어가 가능한 ICT 기술 도입이 필요함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 지원으로 시설원예분야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가내시에 따른 전년대비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 2026. 03. ~ 2026. 11. : 시설설치 및 보조사업 집행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친환경인증농업 자재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시친환경농업인 연합회	대표자	나현기
사업목적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안정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탬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호
	제7조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호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20,000	120,000	120,000	0	0	0	108,000	-12,000	
시비	60,000	60,000	60,000				54,000	-6,000	
자부담	60,000	60,000	60,000				54,000	-6,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08,000	54,000	54,000	
친환경인증농업 자재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땅벌레뚝(35,000원*200개*50%) · 왕대박(10,000원*200개*50%) · 제로썩(40,000원*200개*50%) · 만다31호(590,000원*20개*50%) · 상토/한아름유기농원예용(9,000원*600개*50%) · 모두썩프리미엄(35,000원*200개*50%) · 라이브파워(30,000원*800개*50%) · 바이킬(33,000원*300개*50%) · 참총총(22,000원*300개*50%) · 님오일(25,000원*66개*50%) · 님추출물(29,000원*150개*50%) · 카란자오일(27,000원*150개*50%) · 데리스추출물(35,000원*160개*50%) · 고삼추출물(27,000원*150개*50%) · 계피오일(60,000원*50개*50%) · 목초액(11,000원*150개*50%) · 파라핀유(13,000원*150개*50%)	= 108,000	54,000	54,000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 농자재(친환경 약제, 친환경 비료 등) 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집행액 : 60,000천원 ○ 대상자 : 김포시친환경농업인 연합회
2025	○ 집행액 : 60,000천원 ○ 대상자 : 김포시친환경농업인 연합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	-	-	-	-	-	-	-	-	
2024	120,000	60,000	60,000	119,143	59,143	60,000	857	857	-	
2025	120,000	60,000	60,000	120,000	60,000	60,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인삼재배용 폐차광망 수거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파주인삼농협		대표자	조재열	
사업목적	방치된 폐차광망 수거 지원으로 농업환경보호 및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탐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1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7,000	20,000	20,000	0	0	0	20,000	0	
시비	8,500	10,000	10,000				10,000	0	
자부담	8,500	10,000	10,000				10,00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0,000	10,000	10,000	
인삼재배용 폐차광망 수거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폐차광망 수거비 : 330,000원*60.61톤*50% =	20,000	10,000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재활용이 어려운 인삼재배용 폐차광망 처리(수거)비용 지원으로 인삼재배환경 및 농촌환경개선
- 폐차광망 수거 지원으로 인삼농가 재정부담 감소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자 : 1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 사업량 : 78.22톤 ○ 집행액 : 10,000천원
2024	○ 사업자 : 1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 사업량 : 62.9톤 ○ 집행액 : 8,500천원
2025	○ 사업자 : 1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 사업량 : 66.7톤 ○ 집행액 : 10,000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	-	-	
2024	17,000	8,500	8,500	17,000	8,500	8,500	-	-	-	
2025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고추재배 농지
사업규모	2,517㎡		
사업목적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고추 생산기반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2호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1,250	33,000	24,250	0	8,750	0	31,470	-1,530	
국비	12,500	13,200	9,700	0	3,500	0	12,588	-612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18,750	19,800	14,550	0	5,250	0	18,882	-918	
기타	31,250	33,000	24,250	0	8,750	0	31,470	-1,53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1,470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25,000원*2,517㎡*50%	≡ 31,470	

□ 예산요구 사유

- 고추재배농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사업 수요조사 실시
 - 2025. 12. : 사업신청
 - 2026. 4. ~ 2026. 5.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6. 5. ~ 2026. 11.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6. 11.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가수 : 1농가 - 지급금액 : 8,250천원
2024	- 농가수 : 3농가 - 지급금액 : 27,650천원
2025	- 농가수 : 1농가 - 지급금액 : 8,250천원(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500	8,250	-	8,250	
2024	31,250	27,650	-	3,600	
2025	33,000	8,250	-	24,7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9급 김대곤	전화	4285
-----	-------	------------	-----	----------	----	------

특용작물(버섯 등) 생산시설현대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500	0	0	0	0	0	13,100	13,100	
국비	6,200	0	0	0	0	0	5,240	5,24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9,300	0	0	0	0	0	7,860	7,860	
기타	15,500	0	0	0	0	0	13,100	13,1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100	
특용작물(버섯 등) 생산시설 현대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지원단가 - 개소당 총 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법인에 한해서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이내 지원)	13,100	

□ 예산요구 사유

- 특용작물(버섯 등)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의 경쟁력 강화
-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우수한 품질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특용작물(버섯 등)시설현대화사업 가내시에 따른 전년대비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 2026. 03. ~ 2026. 11. : 시설 및 장비 구입, 보조사업 집행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사업량 : 1개소 · 내 용 : 버섯배지침봉기, 콤프레샤, 냉난방기, 열풍기 · 집행액 : 15,500천원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5,500	15,500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친환경인증농가
사업규모	친환경 농산물 인증 180농가		
사업목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농·무농약)에 따른 인증비용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호
		제 7조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810	27,810	27,810	0	0	0	27,81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7,810	27,810	27,810				27,81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810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친환경 인증비 : 515,000원*180농가*30% = 27,810	27,810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 충족으로 농산물 소비
-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의 자부담(50%) 부분을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여 친환경 농가의 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추진계획 수립
 - 2026. 3. ~ 12. : 지원 신청 및 보상금 지급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친환경 인증비 105농가 지원
2024	· 친환경 인증비 85농가 지원
2025	· 친환경 인증비 93농가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810	23,672	-	4,138	
2024	27,810	27,810	-	-	
2025	27,810	27,81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선택형맞춤농정(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농지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의 기반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65,000	1,567,781	1,270,000	0	175,967	121,814	217,193	-1,350,588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93,000	470,334	381,000	0	52,790	36,544	65,158	-405,176	
시비	372,000	1,097,447	889,000	0	123,177	85,270	152,035	-945,412	
기타	465,000	1,567,781	1,270,000	0	175,967	121,814	217,193	-1,350,588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7,193	
선택형 맞춤농정 (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선택형맞춤농정사업 : 217,193천원*2개소*50%	≒ 217,193	

□ 예산요구 사유

-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6. 02. ~ 2026. 11.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3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김포시배연구회) · 집행액 : 360,000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배 생산시설 및 장비 등 지원
2024	· 사업량 : 3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김포시사과연구회) · 집행액 : 465,000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사과생산시설 지원
2025	· 사업량 : 3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신김포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 집행액 : 383,467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및 인삼가공시설, 농산물 자동육묘장,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00	360,000	-	-	
2024	465,000	465,000	-	-	
2025	1,567,781	400,142	-	1,167,63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인삼포 객토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파주인삼농협		대표자	조재열	
사업목적	인삼재배지의 연작 재배로 인한 생산성 하락 예방 및 고품질 인삼 생산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탬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토(客土),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60,000	60,000	60,000	0	0	0	44,770	-15,230	
시비	30,000	30,000	30,000				22,385	-7,615	
자부담	30,000	30,000	30,000				22,385	-7,615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44,770	22,385	22,385	
인삼포 객토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인삼포 객토 지원 : 단가(원)(25톤/1대)*{객토면적(m²)*객토높이(m)}÷13m³*50% - 121,000원*{8,020m²*0.6m}÷13m³*50% ※ 25톤 트럭 1대 실리는 흙의 양 : 13m³ ※ 25톤/1대 단가 : 121,000원	= 44,770	22,385	22,385	

□ 예산요구 사유

- 인삼재배 신규 경작지의 객토 지원에 따른 토양 지력 증진으로 고품질 인삼 생산 도모
- 신규경작지 확보로 연작장해가 심한 인삼농가의 경영 안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객토면적('25년 1.5ha→ '26년 0.8ha) 감소로 예산 감액 요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자 : 1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 사업량 : 1.64ha ○ 집행액 : 46,343천원
2024	○ 사업자 : 1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 사업량 : 0.8ha ○ 집행액 : 29,986천원
2025	○ 사업자 : 1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 사업량 : 1.5ha ○ 집행액 : 29,986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20,000	60,000	60,000	92,686	46,343	46,343	27,314	13,657	13,657	
2024	60,000	30,000	30,000	59,972	29,986	29,986	28	14	14	
2025	60,000	30,000	30,000	59,972	29,986	29,986	28	14	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5개소		
사업목적	인삼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인삼산업법		제3조제3항,제4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980	26,075	26,075	0	0	0	20,885	-5,190	
국비	5,192	10,430	10,430	0	0	0	8,354	-2,076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7,788	15,645	15,645	0	0	0	12,531	-3,114	
기타	12,980	26,075	26,075	0	0	0	20,885	-5,19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885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지원단가 - 철재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7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ICT기반 관수 시스템 : 개소당 2ha이내(1ha 15백만원, 2ha 20백만원) - 방풍망 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 대당 10백만원 이내 - 이식기·파종기·수확기,인삼발 쟁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20,885	

□ 예산요구 사유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생산농가 경쟁력 제고
-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우수한 품질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가내시에 따른 전년대비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 2026. 03. ~ 2026. 11. : 시설 및 장비 구입, 보조사업 집행
 - 2026.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6개소 · 내 용 : 두둑형성기, 이식기, 수확기 등 · 집행액 : 13,121천원
2024	· 사업량 : 5개소 · 내 용 : 인삼발쟁기, 점적관수, 무인방제 · 집행액 : 12,046천원
2025	· 사업량 : 7개소 · 내 용 : 두둑형성기, 지주설치기, 점적관수 등 · 집행액 : 25,32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980	13,121	-	11,859	
2024	12,980	12,046	-	934	
2025	26,075	25,327	-	74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
사업규모	5개소		
사업목적	유기질비료 생산공급 유통 단계별로 불량비료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량비료의 유통을 차단하고 고품질 비료 생산 유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비료관리법	제18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되거나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00	2,000	2,000	0	0	0	2,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00	2,000	2,000				2,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201-01 사무관리비	· 품질검사수수료 : 200,000원*10회	= 2,000	

□ 예산요구 사유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자체사업)에 따라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시료분석) 자체 예산 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4. : 상반기 가축분퇴비 품질검사 실시
 - 2026. 10. ~ 11. : 하반기 가축분퇴비 품질검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비료생산업체 5개소 품질검사 실시(상·하반기)
2024	· 관내 비료생산업체 5개소 품질검사 실시(상·하반기)
2025	· 관내 비료생산업체 5개소 품질검사 실시(상반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	1,518	-	1,482	
2024	2,500	1,287	-	1,213	
2025	2,000	715	-	1,28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호우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①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798	1,798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719	719	
시비	0	0	0	0	0	0	1,079	1,079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98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사업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 : 1,798천원*1개소 =	1,798	

□ 예산요구 사유

- '25.8.13. 호우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가의 농업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재해복구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수출농산물 생산자단체 3개소		
사업목적	수출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출 농업인의 생산 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수출 증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25	4,716	4,716	0	0	0	6,637	1,921	
국비		0						0	
도비	805	1,415	1,415				2,320	905	
시비	3,220	3,301	3,301				4,317	1,016	
기타	4,025	4,716	4,716				6,637	1,921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637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포장재 : 2,000원*6,637매*50%	= 6,637	

□ 예산요구 사유

- 신선 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품목별 수출용 포장에 소요되는 박스, 패드, 라벨지 등 지원
-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지원을 통한 관내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24년 최초 수출농산물인 샤인머스켓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 수출농산물 포장 시 필요한 기타 부자재(난좌, 파렛트 등) 지원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단체 : 2개소 (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수출배작목회) ○ 지원내역 : 수출용 배 박스 및 홍삼제품 포장재 등
2024	○ 지원단체 : 2개소 (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수출배작목회) ○ 지원예정 : 수출용 배 박스 및 홍삼제품 포장재 등
2025	○ 지원단체 : 2개소 (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수출배작목회) ○ 지원예정 : 수출용 배 박스 및 홍삼제품 포장재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640	7,640	-	-	
2024	4,025	4,025	-	-	
2025	4,716	1,716	-	3,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김포금쌀 등 급식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사업규모	5,384포/10kg		
사업목적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김포금쌀 공급지원 및 소비촉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000	52,500	52,500	0	0	0	30,000	-22,5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8,000	52,500	52,500	0	0	0	30,000	-22,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김포금쌀 등 급식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급식쌀(10kg/1포) 차액 : 11,340원*2,645포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	= 30,000	2025년 차액 기준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에 김포금쌀 공급을 통한 공공급식 지원 및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 도모
- 친환경 등 우수경기미 공급가격과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차액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매칭 사업(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에서 쌀 안전성 검사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 전액 삭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쌀 급식 공급계약 체결
 - 2026. 1. ~ 12. : 공공급식 급식지원 및 월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급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 어린이집 272개소 · 공급실적 : 38.8톤
2024	· 공급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 어린이집 292개소 · 공급실적 : 29.6톤
2025	· 공급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 어린이집 292개소 · 공급실적 : 8.2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6,900	47,308	-	9,592	
2024	28,000	27,726	-	274	
2025	52,500	10,953	-	41,54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1개동, 쌀가공업체 20개소		
사업목적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및 가공업체의 관리·점검을 통한 정부관리양곡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정 유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양곡관리법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00	1,400	1,400	0	0	0	1,500	100	
국비	1,700	1,400	1,400	0	0	0	1,500	1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	
정부양곡 관리비 (지자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등 구입 : 375,000원*4분기	= 1,500	

□ 예산요구 사유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및 가공용 쌀 공급업체에 대하여 보관 중에 발생가능한 각종 사고와 양곡의 부정유통 등을 예방
- 정부관리양곡 유통 및 품질관리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등 구입

□ 예산증감 사유

- 국비 내시 증액에 따른 예산액 증가
 - ※ 2026년 정부양곡관리비(시군) 경상보조 가내시 알림[경기도 친환경농업과-18438(2025.9.2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정부양곡 관리용 사무용품 등 구입
 - 2026. 11. : 공공비축 수매 홍보용 현수막 및 사무용품 등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1개동, 가공용 쌀 공급업체 17개소 수시 지도·점검
2024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1개동, 가공용 쌀 공급업체 20개소 수시 지도·점검
2025	·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1개동, 가공용 쌀 공급업체 20개소 수시 지도·점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	2,337	-	663	
2024	1,700	1,694	-	6	
2025	1,400	888	-	51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및 수도권
사업규모	김포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사업목적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김포 농특산물의 소비촉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시장은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0	100,000	100,000	0	0	0	10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201-01 사무관리비	· 지하철·버스·터미널 등 광고 : 6,000,000원*3월 · 라디오, IPTV 등 방송광고 : 22,000,000원*3월 · 온라인(포털사이트 배너/범퍼영상 등) 광고 : 5,330,000원*3월 = 100,000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오프라인·방송·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김포 농특산물의 대내외 노출
-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계약을 통한 매체 광고의뢰 및 홍보진행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김포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추진계획 수립
 - 2026. 1. ~ 2026. 12. : 광고 요청·의뢰 및 월별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김포도시철도 광고(7월), 포털사이트 배너(2월), 전광판 광고(6월), IPTV광고(2월), 광고음악 제작(라디오방송용), 홍보용쌀 포장재 제작
2024	· 김포도시철도 광고, 포털사이트 배너, 라디오 광고, 홍보디자인 제작 등
2025	· 김포도시철도 광고, 김포금쌀 홍보 영상 제작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0	262,958	28,000	9,042	
2024	128,000	109,691	-	18,309	
2025	100,000	28,084	-	71,91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및 수도권
사업규모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		
사업목적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김포농특산물의 소비촉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3조 제1항
		시장은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김포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하거나, 김포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0	20,000	20,000	0	0	0	2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용 농특산물(김포금쌀 등) 구입 : 1,700원/1포/500g*11,765포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 관내·외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대회 등 김포농특산물 증정 및 시상
- 우리 시 농특산물의 재구매 유도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김포금쌀을 포함한 인삼, 배, 포도, 꿀, 농산물가공품 등 품목 확대에 따른 예산 유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김포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추진계획 수립
 - 2026. 1. ~ 12. : 각종 행사 시 농특산물 지원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홍보용 김포농특산물 구입(중소기업판매전, 전국다문화도시실무협의, 아라마린페스티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박람회, 김포금쌀배 전국오픈탁구대회, 공원명 공모시상품, 김포포도직거래장터, 김포세계인큰잔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김포도심축제)
2024	· 홍보용 김포농특산물 구입(경기북부문화원협의회, 경기푸드박람회, 계양천힐건강걷기대회, 공원 숨은 명소 찾기, 국립합창단, 어머니 농구대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시판매전)
2025	· 홍보용 김포농특산물 구입(가현산 진달래축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계양천 힐링걷기대회, 공원숨은 명소 찾기 챌린지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0	7,469	-	2,531	
2024	20,000	20,000	-	-	
2025	20,000	10,557	-	9,44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농산물 직거래 행사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및 수도권
사업규모	직거래행사 및 홍보판촉·전시행사 3회		
사업목적	농산물 직거래행사 및 홍보판촉 행사를 통한 신선 농산물 소비자 공급 및 직거래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김포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하거나, 김포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920	16,920	16,920	0	0	0	16,92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920	16,920	16,920				16,92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920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201-03 행사운영비	· 홍보·직거래장터/판촉·전시행사 : 5,400,000원*3회	= 16,2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급식비 : 9,000원*20명*4회	= 720	

□ 예산요구 사유

- 농산물 직거래행사, 홍보·전시행사 등 운영 및 참여
- 행사 운영 시 참여 관계자(판매 농업인) 급식비 지원으로 원활한 행사 추진
-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직거래 행사 운영으로 신선 농산물 공급 및 생산농가 소득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사업물량과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농산물 직거래 등 추진계획 수립
 - 2026. 4. ~ 2026. 12. : 행사 추진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민의 날 기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운영물품 임차 및 참여 관계자(판매농가) 급식비, 김포샤인머스켓 직거래장터 운영물품 임차 및 홍보물 제작, 김포농업대축제 농산물 홍보직거래장터 운영 이벤트 진행
2024	· 제3회 경기푸드박람회 참가, 김포농업대축제 직거래 및 이벤트 참여
2025	· 김포시민의날 행사 부스 임차(이벤트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847	16,846	-	1	
2024	16,920	13,656	-	3,264	
2025	16,920	2,311	-	14,60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G마크 등 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G마크 인증 생산경영체 17개소(포장재 지원 16개소, 생산유통시설 지원 1개소)		
사업목적	G마크 등 경기도 우수 농식품 생산 경영체의 제품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9조
		①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식품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2,625	77,833	77,833	0	0	0	47,600	-30,233	
국비		0						0	
도비	20,150	23,350	23,350				14,280	-9,070	
시비	62,475	54,483	54,483				33,320	-21,163	
기타	70,542	60,756	60,756				43,700	-17,05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7,600	
G마크 등 경쟁력 제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포장재 지원 : 4,478,500원*16개소*50%	= 35,900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생산유통시설 지원 : 19,500,000원*1개소*60%	= 11,700	

□ 예산요구 사유

- 생산에서 유통까지 브랜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도 우수식품 마케팅 역량 강화
- G마크 인증 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 감액에 따른 예산액 감액
※ '26년 G마크 등 경쟁력 제고 사업 사업비 가내시 알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3016(2025.10.2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포장재 지원 : 14개소(예우농장 외 13개소) · 시설지원 : 1개소(성호)
2024	· 포장재 지원 : 14개소(서암벌꿀 외 13개소) · 시설지원 : 3개소(이인버섯농장 외 2개소)
2025	· 포장재 지원 : 15개소(또바기 농장 외 14개소) · 시설지원 : 4개소(농업회법인(주)류씨네 외 3개소) · 컨설팅 지원 : 1개소(주식회사대운푸드시스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850	39,850	-	-	
2024	82,625	82,625	-	-	
2025	77,833	67,070	-	10,76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수출농산물 부자재 등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수출배작목회, 김포샤인머스켓수출작목회		대표자	조성길, 최종호	
사업목적	수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식품산업법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64,000	64,000	64,000	0	57,600	-6,400	
시비	32,000	32,000	32,000		28,800	-3,200	
자부담	32,000	32,000	32,000		28,800	-3,2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57,600	28,800	28,800	
수출농산물 부자재 등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내용 : 생산농자재(배봉지) 지원 ·산출내역 : 배봉지 60원*700,000장	= 36,000	18,000	18,000	
		·사업내용 : 생산농자재(샤인머스켓봉지) 지원 ·산출내역 : 포도 봉지 56원*428,572장	21,600	10,800	10,800	

□ 예산요구 사유

-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봉지 구입비용 등 일부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수출 농가의 재정적 부담 해소
- 수출용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을 지원하여 품질향상에 기여 및 김포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지방보조금 실무심의 조정결과에 따른 감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김포수출배작목회 ○ 추진실적 : 배봉지 843,860장 지원
2024	○ 보조사업자 : 김포수출배작목회, 김포샤인머스켓수출작목회 ○ 추진실적 : 배봉지 701,760장 / 포도봉지 428,580장 지원
2025	○ 보조사업자 : 김포수출배작목회, 김포샤인머스켓수출작목회 ○ 추진실적 : 배봉지 701,760장 / 유기질비료 1,327포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48,100	24,050	24,050	48,100	24,050	24,050	-	-	-	
2024	64,000	32,000	32,000	64,000	32,000	32,000	-	-	-	
2025	64,000	32,000	32,000	64,000	32,000	32,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수출농산물 생산자단체 2개소(김포수출배작목회, 김포샤인머스켓수출작목회)		
사업목적	수출농산물의 농자재 등 지원으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679	12,607	12,607	0	0	0	8,667	-3,940	
국비		0						0	
도비	1,736	3,782	3,782				2,600	-1,182	
시비	6,943	8,825	8,825				6,067	-2,75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667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농자재 구입비 : 비료 18,300원/포*337포 = 6,167,100원	6,167	
		· 공동선별비 지원 : 수출물량(kg) × 품목별 공동선별지원단가 - 포도 9,259kg * 108원 = 1,000,000원 - 배 26,786kg * 56원 = 1,500,000원	2,500	

□ 예산요구 사유

- 수출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및 내수시장 안정화를 통한 안정된 소득기반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26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26년 경기도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사업 가내시 알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3326 (2025.11.04.)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단체 : 1개소 (김포수출배작목회) ○ 지원내역 : 비료 1,605포
2024	○ 지원단체 : 1개소 (김포수출배작목회) ○ 지원내역 : 비료 343포
2025	○ 지원단체 : 1개소 (김포수출배작목회) ○ 지원내역 : 비료 140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120	11,120	-	-	
2024	8,679	8,679	-	-	
2025	12,607	12,607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및 수도권
사업규모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위원회(13명)		
사업목적	김포시 농특산물 브랜드 금빛나루 인증에 따른 우수경영체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
		제4조, 제5조에 따라 통합상표의 인증 및 취소, 농특산품의 품질관리,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통합상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 17조
		시장은 통합상표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80	3,600	3,600	0	0	0	3,6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80	3,600	3,600				3,6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	
농산물 브랜드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8명*2회	= 1,600	
	301-14 기타보상금	· 소비자 모니터링 보상금 : 50,000원*20명*2회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 부여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 금빛나루 인증 부여 시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신뢰도 제고
- 소비자 참여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에 따른 반대 급부적 경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사업물량과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5. : 상반기 금빛나루 인증 경영체 현장점검 및 수당 지급
 - 2026. 6. : 위원회 개최 및 수당 지급
 - 2026. 11. : 하반기 금빛나루 인증 경영체 현장점검 및 수당 지급
 - 2026. 12. : 위원회 개최 및 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상반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 경영체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수당 지급(상·하반기)
2024	· 상반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 경영체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수당 지급(상·하반기)
2025	· 상반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 경영체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수당 지급(상반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10	3,620	-	890	
2024	4,280	2,880	-	1,400	
2025	3,600	1,350	-	2,2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육성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추후 공모		대표자		
사업목적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경영체의 포장재 등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금빛나루 소비자 홍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 <td>재 원</td> <td colspan="/>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태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자·판매업소·소비자에 대하여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70,000	70,000	70,000	0	0	0	63,000	-7,000	
시비	35,000	35,000	35,000				31,500	-3,500	
자부담	35,000	35,000	35,000				31,500	-3,5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63,000	31,500	31,500	
농특산물 통합상표 (금빛나루) 육성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내용 : 포장재 및 부자재 등 지원 · 산출내역 : 100원*630,000개	= 63,000	31,500	31,5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장 인증 금빛나루 브랜드 명성 유지 및 인증 경영체의 의욕 고취
- 금빛나루 인증 경영체의 포장재 및 부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지방보조금 실무심의 조정결과에 따른 감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김포시블루베리연구회 외 5개소 ○ 추진실적 : 용기, 동판, 종이박스, 스티로폼박스 등 포장재 지원
2024	○ 보조사업자 : 김포시블루베리연구회 외 5개소 ○ 추진실적 : 용기, 동판, 종이박스, 스티로폼박스 등 포장재 지원
2025	○ 보조사업자 : 선식식품 외 3개소 ○ 추진실적 : 용기, 동판, 종이박스, 스티로폼박스 등 포장재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70,000	35,000	35,000	70,000	35,000	35,000	-	-	-	
2024	70,000	35,000	35,000	56,000	28,000	28,000	14,000	7,000	7,000	
2025	70,000	35,000	35,000	26,250	13,125	13,125	8,750	4,375	4,37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김포금쌀 활성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추후 공모	대표자		
사업목적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경영체의 포장재 등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금빛나루 소비자 홍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td>재원</td><td colspan="/>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tam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3조 제3항	
			통합상표 인증 농산물에 한하여 품목별 공동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자·판매업소·소비자에 대하여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54,000	50,150	50,150	0	0	0	70,000	19,850	
시비	27,000	25,075	25,075				35,000	9,925	
자부담	27,000	25,075	25,075				35,000	9,925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70,000	35,000	35,000	
김포금쌀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김포금쌀 지대 포장재 지원 : 510원×137,255장 =	70,000	35,000	35,000	

□ 예산요구 사유

-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쌀품목)의 김포금쌀 판매 시 필요한 지대포장재 구입비용 지원
- 고품질의 김포금쌀 생산·공급 및 품위(인증) 유지 유도
-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통한 김포금쌀 소비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양곡관리법 개정(단백질 함량표시 의무표시)에 따른 포장재 교체비용 필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김포농협 외 3개소 ○ 추진실적 : 김포금쌀 공동포장재(10kg, 20kg 지원) (10kg, : 60,460개, 20kg : 53,555개)
2024	○ 보조사업자 : 김포금쌀영농 외 1개소 ○ 추진실적 : 김포금쌀 공동포장재(10kg, 20kg) 지원
2025	○ 보조사업자 : 김포금쌀영농 외 2개소 ○ 추진실적 : 김포금쌀 공동포장재(10kg, 20kg)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59,000	29,500	29,500	59,000	29,500	29,500	-	-	-	
2024	54,000	27,000	27,000	54,000	27,000	27,000	-	-	-	
2025	50,150	25,075	25,075	50,150	25,075	25,075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농산물 유통활성화 촉진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추후 공모	대표자	
사업목적	김포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김포쌀 가격안정 및 원활한 유통 판매 촉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탬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51,000	60,000	60,000	0	0	0	54,000	-6,000	
시비	25,500	30,000	30,000	0	0	0	27,000	-3,000	
자부담	25,500	30,000	30,000	0	0	0	27,000	-3,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54,000	27,000	27,000	
농산물 유통활성화 촉진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김포금쌀(10kg 이상) 택배비 지원 : 2,000원 * 27,000건 =	54,000	27,000	27,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금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유통 및 판매 촉진에 기여하여 김포금쌀 판매량 확대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
- 김포금쌀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지방보조금 실무심의 조정결과에 따른 감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김포시양곡가공협회, 신김포농협양촌미곡사업소 ○ 추진실적 : 김포금쌀 택배비 30,000건 지원
2024	○ 보조사업자 : 김포시양곡가공협회, 신김포농협양촌미곡사업소 ○ 추진실적 : 김포금쌀 택배비 25,500건 지원
2025	○ 보조사업자 : 김포시양곡가공협회, 신김포농협양촌미곡사업소 ○ 추진실적 : 김포금쌀 택배비 30,000건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60,000	30,000	30,000	60,000	30,000	30,000	-	-	-	
2024	51,000	25,500	25,500	51,000	25,500	25,500	-	-	-	
2025	60,000	30,000	30,000	60,000	30,000	30,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GAP 안전성 분석 38점 / 검사 50건		
사업목적	GAP 안전성 분석지원으로 농수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제3호
법령 위임규정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수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668	27,600	46,000	0	0	-18,400	19,426	-8,174	
국비	15,334	13,800	23,000			-9,200	9,713	-4,087	
도비		0						0	
시비	15,334	13,800	23,000			-9,200	9,713	-4,08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426	
GAP 안전성 분석지원	207-01 연구용역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248,000원*38점	= 9,426	
	301-14 기타보상금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200,000원*50건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및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의 증가로 GAP 신규 인증 농가 확대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증대
-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 GAP 인증농가 토양·용수·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건수 감소에 따른 예산감소

※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지원 가내시 알림[경기도 농식품유통과-111696(2025.9.2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56점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21개소
2024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158점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25개소
2025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76점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9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906	11,278	-	8,628	
2024	30,668	23,222	-	7,446	
2025	27,600	2,246	-	25,35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GAP 위생 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제3호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50,000	50,000	
국비	0	0	0				30,000	30,000	
도비		0					0	0	
시비	0	0	0				20,000	20,000	
기타	0	0	0				50,000	50,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위생시설 보완지원 : 100,000,000원*1개소*50%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GAP 인증시설 확대로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보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 : 1개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0	50,000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쌀 가공업체 2개소			
사업목적		김포쌀 사용 쌀 가공업체에 대한 차액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640	10,900	26,167	0	0	-15,267	3,200	-7,700	
국비		0						0	
도비	2,592	3,270	7,850			-4580	960	-2,310	
시비	6,048	7,630	18,317			-10687	2,240	-5,390	
기타	8,64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차액 지원 : 300원*10,666kg	= 3,2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쌀을 사용하는 전통주, 쌀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 김포쌀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 감액에 따른 예산액 감소
- ※ 2026년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가내시 통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2665(2025.10.20.)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단체 : 3개소 (㈜하나로푸드빌, 독브루어리, ㈜그린팜) ○ 지원내역 : 경기미 130,625kg 차액지원
2024	○ 지원단체 : 1개소 (노스빌리지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역 : 경기미 20,368kg 차액지원
2025	○ 지원단체 : 2개소 (주식회사 팔팔양조장, 김포금쌀탁주영농조합) ○ 지원내역 : 경기미 36,333kg 차액지원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1,900	37,400	-	4,500	
2024	8,640	2,553	-	6,087	
2025	10,900	5,000	-	5,9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김포쌀밥집 육성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외
사업규모	14개소		
사업목적	김포금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김포금쌀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 인증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	15,000	15,000	0	0	0	15,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00	15,000	15,000	0	0	0	15,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김포쌀밥집 육성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김포금쌀 차액 지원 : 650원/kg*23톤 =	15,000	2025년 기준

□ 예산요구 사유

- 고품질의 김포금쌀 유통 촉진을 통한 김포시 농산물 홍보 효과 증대
-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 인증농가 경영안정 및 김포금쌀 경쟁력 제고
-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 경영비 절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 2026. 3. : 김포쌀밥집 쌀 공급신청 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 2026. 3. ~ 12. : 김포쌀밥집 차액 집행 및 월별 현장점검 실시,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지원대상 : 김포금쌀밥집 9개소 · 지원실적 : 김포금쌀 24.5톤 차액지원
2024	· 지원대상 : 김포금쌀밥집 12개소 · 지원실적 : 김포금쌀 15.7톤 차액지원
2025	· 지원대상 : 김포금쌀밥집 14개소 · 지원실적 : 김포금쌀 6.3톤 차액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3,995	-	1,005	
2024	15,000	14,322	-	678	
2025	15,000	7,293	-	7,70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로컬푸드 납품농가		
사업목적	연중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 제2항
	②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품목 다양성 확보 및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0,500	195,550	243,573	-48,023	0	0	150,000	-45,550	
국비		0						0	
도비	75,250	58,665	73,072	-14,407			45,000	-13,665	
시비	175,250	136,885	170,501	-33,616			105,000	-31,885	
기타	250,500	195,550	243,573	-48,023			150,000	-45,5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등 생산시설 설치 비용 : 10,000,000원*30개소*50%	= 150,000	

□ 예산요구 사유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의 농산물 연중생산을 위해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등 설치 지원
- 농산물의 연중 생산 및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로컬푸드 납품농산물의 다양성 증대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연중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 감액에 따른 예산액 감소
※ 2026년 경기도 로컬푸드 시군 지원사업 가내시 알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3286 (2025.11.0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101개소 지원 (비닐하우스 54개, 저온저장고 36개, 자동개폐시설 1개, 건조기 10개, 보온커튼 7개, 냉난방기 9개, 기능성 차열망 1개)
2024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18개소 지원 (비닐하우스 11개, 저온저장고 5개, 냉난방기 1개, 물탱크 1개)
2025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24개소 지원 (비닐하우스 14개, 저온저장고 6개, 차열망 2개, 자동개폐시설 1개, 건조기 2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2,100	201,883	-	100,217	
2024	250,500	117,878	-	132,622	
2025	195,550	125,170	-	70,3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4개소)		
사업목적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 제2항
	②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품목 다양성 확보 및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630	30,747	30,747	0	0	0	34,701	3,954	
국비		0						0	
도비	7,990	9,224	9,224				10,410	1,186	
시비	18,640	21,523	21,523				24,291	2,768	
기타	26,630	30,747	30,747				34,701	3,954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701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전환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포장재 지원 : 17,350,500원*4개소*50%	= 34,701	

□ 예산요구 사유

- 농가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수요조사 결과 매년 로컬푸드 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포장재 필요량 증가
※ 2026년 경기도 로컬푸드 시군 지원사업 가내시 알림[농식품유통과-13286 (2025.11.0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로컬푸드(4개소) 과일 용기 및 채소류 등 농산물 포장재 지원 : 107만개
2024	○ 로컬푸드(4개소) 과일 용기 및 채소류 등 농산물 포장재 지원 : 100만개
2025	○ 로컬푸드(4개소) 과일 용기 및 채소류 등 농산물 포장재 지원 : 100만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560	25,560	-	-	
2024	26,630	26,630	-	-	
2025	30,747	30,747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관내 로컬푸드 4개소	대표자	김명희 외 3인
사업목적	우리시 로컬푸드 납품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해 소비자의 직접 체험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간격을 좁히고 생산자 소비자 간의 친숙도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통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항, 제3항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51,000	51,000	51,000	0	51,000	0	
시비	25,500	25,500	25,500		25,500	0	
자부담	25,500	25,500	25,500		25,50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5년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51,000	25,500	25,500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증정·할인·판매행사 지원 : 97,025,000원*4개소*50% ·농가체험 행사 지원 : 6,095,000원*2개소*50%	= 51,000	25,500	25,5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 관내·외 로컬푸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가 체험, 할인판매 행사 등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김포농산물을 홍보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믿고 찾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지역농산물 구입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친숙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증정·할인판매(1+1, 꾸러미 할인판매, 구매금액별 사은품 등)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구입 비용(또는 정상가격과의 차액) 및 소비 촉진 안내·홍보물 제작비용(전단지, 배너, 현수막 등)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사업물량과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 엘리트농부 로컬푸드 직매장 ○ 추진실적 : 체험행사, 농산물 제공, 할인판매, 장바구니 제작 등
2024	○ 보조사업자 :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 엘리트농부 로컬푸드 직매장 ○ 추진실적 : 체험행사, 농산물 제공, 할인판매, 장바구니 제작 등
2025	○ 보조사업자 :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 직매장, 엘리트농부 로컬푸드 직매장 ○ 추진실적 : 체험행사, 농산물 제공, 할인판매, 장바구니 제작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60,000	30,000	30,000	60,000	30,000	30,000	-	-	-	
2024	51,000	25,500	25,500	50,412	25,206	25,206	588	294	294	
2025	51,000	25,500	25,500	51,000	25,500	25,5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

부서	농업정책과	사업규모	로컬푸드직매장 4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51,000
부기명 (세부사업)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현장사진					
	농가 소비자 체험 현장 사진			증정 장바구니 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개소		
사업목적		접경지역 군납농산물의 연중 공급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및 공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시설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 유통망 구축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비닐하우스·농자재 등 생산시설 지원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적절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저온시설·저온차량 등 시설의 설치·개보수 등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000	42,000	42,000	0	0	0	6,600	-35,400	
국비		0						0	
도비	9,000	21,000	21,000				3,300	-17,700	
시비	9,000	21,000	21,000				3,300	-17,700	
기타	12,000	28,000	28,000				4,400	-23,6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600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물류비 지원 : 3,667,000원*3개소*60%	= 6,600	

□ 예산요구 사유

- 군납농산물의 연중유통체계 구축 지원으로 군부대의 납품 요구에 맞는 농산물 공급
-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의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수요 증가(물류비)
- 접경지역 군납농산물의 연중 공급을 위한 물류비 지원과 시설·장비 지원의 사업분리에 따른 예산 감소
- ※ '26년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 사업비(물류비) 가내시 알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8749(2025.10.30.)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 군납생산농가 2개소 · 지원내역 : 저온창고 1개소, 비닐하우스 4동
2024	· 지원대상: 군납조합 1개소 · 지원내역 : 지게차 1대
2025	· 지원대상: 군납조합 1개소 · 지원내역 : 냉동탑차 1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820	10,800	-	34,020	
2024	18,000	18,000	-	-	
2025	42,000	-	-	4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접경지역 군납 시설 구축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개소			
사업목적		접경지역 군납농산물의 연중 공급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및 공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시설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 유통망 구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비닐하우스·농자재 등 생산시설 지원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적절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저온시설·저온차량 등 시설의 설치·개보수 등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000	42,000	42,000	0	0	0	100,000	58,000	
국비		0						0	
도비	9,000	21,000	21,000				50,000	29,000	
시비	9,000	21,000	21,000				50,000	29,000	
기타	12,000	28,000	28,000				66,667	66,667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접경지역 군납 시설 구축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설·장비 지원 : 55,556,000원*3개소*60%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군납농산물의 연중유통체계 구축 지원으로 군부대의 납품 요구에 맞는 농산물 공급
-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의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수요 증가(연중공급을 위한 시설·장비)
 - 접경지역 군납농산물의 연중 공급을 위한 물류비 지원과 시설·장비 지원의 사업분리에 따른 예산 증가
- ※ '26년 접경지역 군납 시설 구축 지원 사업비(시설장비사업) 가내시 알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8748(2025.10.30.)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 군납생산농가 2개소 · 지원내역 : 저온창고 1개소, 비닐하우스 4동
2024	· 지원대상: 군납조합 1개소 · 지원내역 : 지게차 1대
2025	· 지원대상: 군납조합 1개소 · 지원내역 : 냉동탑차 1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820	10,800	-	34,020	
2024	18,000	18,000	-	-	
2025	42,000	-	-	4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9명		
사업목적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유통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5,000	27,000	27,000	0	0	0	27,000	0	
국비		0						0	
도비	13,500	8,100	8,100				8,100	0	
시비	31,500	18,900	18,900				18,9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0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명예감시원 활동비 : 50,000원/일*9명*5일*12개월 = 27,000	27,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활동비 지원
- 감시원을 통한 원산지 표시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소비자가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하여 관내 판매자의 능동적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고,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 맞춤 교육·홍보 기회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사업물량과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2026년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사업 가내시 알림(경기도 농식품유통과-12809(2025.10.22.)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계획 수립, 감시원 위촉
 - 2026. 01. ~ 12. : 월별 활동비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원산지표시 감시원 활동비 지급 : 5명 · 관내 업체 2,329개소 점검
2024	· 원산지표시 감시원 활동비 지급 : 10명 · 관내 업체 7,705개소 점검
2025	· 원산지표시 감시원 활동비 지급 : 9명 · 관내 업체 4,648개소 점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5,000	-	0	
2024	45,000	40,554	-	4,446	
2025	27,000	20,900	-	6,1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1개소		
사업목적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김포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13,000	0	21,000	0	0	-21,000	140,000	140,000	
국비		0						0	
도비	123,900	0	6,300			-6,300	42,000	42,000	
시비	289,100	0	14,700			-14,700	98,000	98,000	
기타	177,000	0	9,000			-9,000	60,000	60,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00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HACCP 규정에 맞는 가공 시설 개선 지원 - 200,000,000원*1개소*70%	= 140,000	

□ 예산요구 사유

- 쌀 가공업체의 시설개선을 통해 관내 식품산업 활성화 및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
- 쌀 가공식품 제조·가공·포장설비, 인테리어 및 위생시설 개선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수요조사 결과 전통주 제조 시설 개보수 예산 지원 요청에 따른 증액
- 경기도 가내시 통보(수요조사액과 동일)

※ 2026년 농식품 가공업체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가내시 알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2660(2025.10.20.)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사항 없음(사업 미시행)
2024	○ 시설개선 지원 : 3개소(노스빌리지, 팔팔양조장, ㈜하나로푸드빌)
2025	○ 해당사항 없음(사업 미시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413,000	413,000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전통주 제조업체 2개소		
사업목적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으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0,293	10,293	
국비		0						0	
도비		0					3,860	3,860	
시비		0					6,433	6,433	
기타		0					2,573	2,573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293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소비활성화 지원 : 6,433,000원*2개소*80%	= 10,293	

□ 예산요구 사유

- 전통주 업체 생산제품의 비대면 홍보로 관내 전통주 경쟁력 강화
- 전통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개선비용 및 배송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 반영('23년 대비 감액)
※ 2026년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가내시 통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2665(2025.10.20.)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단체 : 2개소 (㈜농업회사법인팔팔양조장, 농업회사법인독브루어리㈜) - 지원내역 : 택배배송비 지원(6,070건), 포장재 제작(13,500개), 포장디자인 및 용기 개발, 박람회 참가 비용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800	48,800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양곡가공업체 2개소		
사업목적	벼 도정·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고품질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구축 마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1,884	233,716	233,716	0	0	0	272,924	39,208	
국비		0						0	
도비	27,565	70,115	70,114		1		81,877	11,762	
시비	64,319	163,601	163,602		-1		191,047	27,446	
기타	91,883	233,717	233,717				272,925	39,208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2,924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 (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벼 도정시설·장비 구입 : 272,924원*2개소*50%	= 272,924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타도산 쌀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가공·유통 중심의 정책 지원 필요
- 벼 도정시설·장비의 노후화 개선·확충을 통한 판매가 및 농가수취가격 향상유도와 수매량 확대로 쌀 수급안정 유지, 타지역쌀과 혼합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경기미 품위 향상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 : 2개소(김포금쌀영농조합법인, 마곡항금들넉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역 : 현미기, 색채선별기, 포장기, 집진시설, 왕겨풍구 등
2024	· 지원대상 : 2개소(신김포농협양촌미곡사업소, 후평마을정미소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역 : 색채선별기, 탈진선별기, 종합석발기, 정미기, 그레이더 등
2025	· 지원대상 : 2개소(김포마곡항금들넉농업회사법인, 후평마을정미소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역 : 색채선별기, 환경측정IoT, 냉동기 유니트쿨러, 소포장기, 품위판정기, 백도측정기, 승강기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7,855	167,855	-	-	
2024	91,884	91,884	-	-	
2025	233,716	233,716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어린이집 263개소, 유치원 32개소		
사업목적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5,454	239,000	132,060	0	0	106,940	186,062	-52,938	
국비		0						0	
도비	117,727	119,500	66,030			53,470	93,031	-26,469	
시비	117,727	119,500	66,030			53,470	93,031	-26,46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6,062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 150,000원*2회(상,하반기)*1개소 =	600	
	301-14 기타보상금	· 어린이집 공공급식 지원 : 59원*10,222명*210일 · 유치원 공공급식 지원 : 59원*4,652명*210일 =	127,462 58,0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친환경 등 우수 경기미(김포쌀) 구입가격과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차액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의 소량 소비·구매 특성에 따른 유통비용 문제 해소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 감액에 따른 예산액 감소
- ※ '26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 사업비 가내시 알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8750(2025.10.30.)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쌀 공급가격 결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03. ~ 12. : 월별 공급량 확인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72개소 9,899명, 유치원 31개소 5,194명 · 지원내역 : 무농약 129톤, GAP 43톤
2024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92개소 10,290명, 유치원 52개소 8,879명 · 지원내역 : 무농약 194톤
2025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63개소 9,919명, 유치원 32개소 4,652명 · 지원내역 : 무농약 128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1,748	177,529	-	84,219	
2024	235,454	235,398	-	56	
2025	239,000	167,978	-	71,02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84 4290
-----	-------	--------------------------	-----	------------------------	----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6,440명		
사업목적	제철 과일간식 공급으로 건강한 식습관 배양 및 과일소비 확대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9호, 10호
	도지사는 과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 과일 생산 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소득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과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35,260	1,140,000	1,140,000	0	0	0	843,994	-296,006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567,630	570,000	570,000	0	0	0	421,997	-148,003	
시비	567,630	570,000	570,000	0	0	0	421,997	-148,003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43,994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 51,300원×16,440명	843,994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어린이에 주 1~2회 제철과일 공급(가정보육어린이는 해당액 상당 가정 배송) 지원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
- 도내산 과일 소비 확대로 과수농가 소득증대 및 안정적 판로 기반 마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과일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6. 12.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 업 량 : 17,348명[428개소(13,156명)/4,192명] · 집 행 액 : 1,092,862천원 · 지원내역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그룹홈 이용 어린이 및 가정보육어린이에 과일공급
2024	· 사 업 량 : 15,426명[388개소(11,652명)/3,774명] · 집 행 액 : 1,095,739천원 · 지원내역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그룹홈 이용 어린이 및 가정보육어린이에 과일공급
2025	· 사 업 량 : 380개소(12,493명)/가정보육어린이 추진 중 · 집 행 액 : 869,967천원 · 지원내역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그룹홈 이용 어린이 및 가정보육어린이에 과일공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35,260	1,092,862	-	42,398	
2024	1,135,260	1,095,739	-	39,521	
2025	1,140,000	869,986	-	270,0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임산부 1,200명		
사업목적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조」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9,344	384,000	384,000	0	0	0	220,800	-163,200	
국비		0						0	
도비	122,803	115,200	115,200				66,240	-48,960	
시비	286,541	268,800	268,800				154,560	-114,240	
기타	126,048	96,000	96,000				55,200	-40,8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0,800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임산부 1,200명*230천원*80%	= 220,800	

□ 예산요구 사유

-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증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서에 따른 예산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사업 신청
 - 2026. 3.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급업체 확정
 - 2026. 4. ~ 11.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수혜자 : 1,077명 ○ 지급액 : 405,269천원
2024	○ 사업수혜자 : 1,053명 ○ 지급액 : 504,192천원
2025	○ 사업수혜자 : 1,200명 ○ 지급액 : 367,076천원(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13,568	310,421	94,848	8,299	
2024	504,192	504,192	-	-	
2025	384,000	367,076	-	16,92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9급 김대곤	전화	4285
-----	-------	------------	-----	----------	----	------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4개단체		
사업목적	지역의 소규모 다수의 단체와 연계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경기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8조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3,368	42,500	42,500	0	0	0	42,500	0	
국비		0						0	
도비	31,684	21,250	21,250				21,250	0	
시비	31,684	21,250	21,250				21,25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500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식재료비·물품구입비 등 사업비 : 42,500,000원 =	42,500	

□ 예산요구 사유

-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경기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지원을 통해 경기도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확산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와 동일하여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2026. 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3. ~ 12.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 2026. 12. :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사업대상 : 3개소(김포아이사랑센터, 함께하는맘,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집행액 : 49,300천원 · 사업내용 : 63회, 1,240명, 31가정 지원
2024	· 사업대상 : 6개소(김포아이사랑센터, 함께하는맘,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김포장애인야학, 푸른미래, 김포시청년4h연합회) · 집행액 : 63,368천원 · 사업내용 : 79회, 2,886명
2025	· 사업대상 : 5개소(김포아이사랑센터, 함께하는맘, 김포장애인야학, 푸른미래, 김포농식품 주식회사) · 집행액 : 42,500천원(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9,300	49,300	-	-	
2024	63,368	63,368	-	-	
2025	42,500	42,5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농식품 바우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903개 가구		
사업목적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23조의2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지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464,000	464,000	0	0	0	832,000	368,000	
국비		232,000	232,000				416,000	184,000	
도비		69,600	69,600				124,800	55,200	
시비		162,400	162,400				291,200	128,800	
기타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32,000	
농식품 바우처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2,900,000원*1명*10개월	= 29,000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자료 제작 비용 7,250,000원*4분기	= 29,000	
	301-01 사회적보장적수혜금	. 바우처 카드 : 가구당 71,430원*903가구*12개월	= 774,000	

□ 예산요구 사유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보충을 위한 농산물 구매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지원,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현물 지원방식의 농식품 바우처와 식생활 교육 지원
- 신청·접수 업무 등 지원인력 인건비 및 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리플릿 제작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대상이 '25년도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신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서 '26년도에는 청년 포함 가구까지 추가되어 예산 증액
- ※ '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비 가내시 알림 [경기도 농업정책과-21964(2025.11.0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승인
일자	2025.11.반영										2025.10.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사업홍보, 농식품바우처 사업 접수·집행 및 정산
 - 2026. 2. : 기간제 근무자 채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지원대상 가구 : 475가구 · 기간제근로자 보수 : 23,377.93천원 · 홍보용 포스터(50매), 현수막(15개), 리플릿(1,000매), 가맹점 스티커(100매), 배너(15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34,020	
2024	-	-	-	-	
2025	464,000	325,788	-	138,21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1개소)		
사업목적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원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제1항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직매장 및 광역 직매장을 설치·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8,960	8,960	0	0	0	9,900	940	
국비		0						0	
도비		8,960	8,960				2,970	-5,990	
시비		0					6,930	6,93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900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안전성 검사비 지원 : 9,900천원*1개소	= 9,900	

□ 예산요구 사유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예산액 산정
- 2025년 대비 지원비율 변경(도 100% → 도 30% 시70%)되어 지원액 증가
※ 2026년 경기도 로컬푸드 시군 지원사업 가내시 알림(농식품유통과-13286 (2025.11.0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1개소 지원 : 농업회사법인 엘리트농부(주)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8,960	-	-	8,9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산지유통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업회사법인 2개소		
사업목적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팻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9,139	0	0	0	29,139	45,240	16,101	
국비		9,713				9,713	15,080	5,367	
도비		9,713				9,713	15,080	5,367	
시비		9,713				9,713	15,080	5,367	
기타		67,991				67,991	105,560	37,569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240	
산지유통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 75,400,000원*2개소*30% =	45,240	

□ 예산요구 사유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이전 농식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5년부터 지자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 증액에 따른 예산액 증가

※ 2026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가내시 통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2942(2025.10.27.)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2개소(다조은프레시(주)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한국씨엔에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9,139	-	-	29,13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4개소)		
사업목적	로컬푸드 친환경 인증 납품농가에 대한 수수료 지원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제1항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직매장 및 광역 직매장을 설치·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4,000	24,000	
국비								0	
도비							12,000	12,000	
시비							12,000	12,000	
기타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0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친환경 및 저탄소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 : 6,000,000원*4개소*100%	= 24,000	

□ 예산요구 사유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산물 유통 기반 마련 필요
-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납품 농가의 거래 수수료 일부 보전 필요
※ 2026년 경기도 로컬푸드 시군 지원사업 가내시 알림[농식품유통과-13286 (2025.11.0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수립
 - 2026. 02.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금포로 1697
사업규모	공공급식센터 1개소		
사업목적	공공급식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안정적인 학교급식 실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학교급식법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식생활교육, 전통 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5,645	69,980	33,860	33,860	0	2,260	290,260	220,280	
국비	-	0	-	-	-	-	-	0	
도비	-	0	-	-	-	-	-	0	
시비	75,645	69,980	33,860	33,860	-	2,260	290,260	220,280	
기타	-	0	-	-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0,260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7명*3회 = 2,100 ·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850,000원*12개월 = 10,200 - 청소 대행수수료 : 1,000,000원*12개월 = 12,000 - 정화조 청소 및 관리 대행수수료 : 200,000원*12개월 = 2,400 - 구충 및 살균소독 대행수수료 : 500,000원*5회 = 2,500 -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 165,000원*12개월 = 1,980 -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250,000원*12개월 = 3,000 -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150,000원*12개월 = 1,800 - 공공급식센터 일반수용비(외벽 간판 등) : 17,000,000원 = 17,000		
	201-02 공공운영비	· 공공급식센터 공과금 - 전기요금 : 5,000,000원*12개월 = 60,000 - 수도요금 : 30,000원*12개월 = 360 - 엘리베이터 무선통신비 : 5,000원*12개월 = 60 · 시설 유지·관리비(일반 수리·수선) : 5,000,000원 = 5,000		
	307-05 민간위탁금	· 공공급식센터 위탁운영비 - 인건비(기본급 및 수당 등) : 37,843,768*4명(365일 기준) = 151,375 - 시설운영비(수리 유지비 및 eaT 수수료 등) : 12,085,000원 = 12,085 - 자산취득비(전동지게차 등) : 2,100,000원*4대 = 8,400		

□ 예산요구 사유

-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분야 업무 추진 및 센터 유지·관리 비용
-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물류 및 유통분야 위탁운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공공급식센터 상시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 증액
- 공공급식센터 유지·관리 업무 일원화(농업진흥과 업무 이관)에 따른 비용 증액
 - ※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농업진흥과가 그린케어센터(공공급식센터) 운영 시 업무 및 예산 재이관
- 공공급식센터 물류 및 유통분야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책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2025.9. 반영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공공급식센터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
 - 2026. 상반기 : 시범운영
 - ※ 2026. 6 : 그린케어센터 운영 예정(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2회
2024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1회 ○ 공공급식센터팀 사무실 이전 공사
2025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1회 ○ 공공급식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80	4,908	-	2,372	
2024	75,645	69,312	-	6,333	
2025	69,980	45,721	-	24,25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행정7급 오새롬 해양수산8급 박원표	전화	4288 4289
-----	-------	--------------	-----	------------------------	----	--------------

우수식재료 공급사업 등 추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식재료 시료 구매 및 안전성검사(8회)		
사업목적	우수한 식재료 공급업체 추천 사업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학교급식법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제4호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 4. 추천식단의 물품취급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600	19,600	19,600	0	0	0	20,500	900	
국비	-	0	-	-	-	-	-	0	
도비	-	0	-	-	-	-	-	0	
시비	24,600	19,600	19,600	-	-	-	20,500	900	
기타	-	0	-	-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500	
우수 식재료 공급사업 등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식재료 공동구매 심사		
		- 심사수당 : 100,000원*6명*6회	= 3,600	
		· 안전성검사 시료 구입		
		- 수산물 시료구매비 : 700,000원*7회	= 4,900	
		- 가공식품 시료구매비 : 50,000원*40개 품목	= 2,000	
		·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 250,000원*40개 품목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일본 방사능 오염처리수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수산물 및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 예산증감 사유

-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사업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심사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학년도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사업 업체 평가 및 선정
 - 2026. 2. : 2026학년도 1학기 수산물 가격협상
 - 2026. 3. ~ 11.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실시(수산물, 가공식품)
 - 2026. 8. : 2026학년도 2학기 수산물 가격협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 사업 : 4개소 / 87개 교·원 참여 ○ 학교급식 친환경 인증 블루베리 현물 지원 : 1,714kg / 91개 교·원 / 63,990명 ○ 수산물 안전성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 7회 / 82건
2024	○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 사업 : 3개소 / 87개 교·원 참여 ○ 수산물 안전성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 8회 / 120건 ○ 가공식품 안전성검사 : 2회 / 165건
2025	○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 사업 : 3개소 / 90개 교·원 참여 ○ 수산물 안전성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 8회 / 121건 ○ 가공식품 안전성검사 : 1회 / 8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6,335	123,068	-	13,267	
2024	24,600	19,743	-	4,857	
2025	19,600	12,084	-	7,51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원표	전화	4289
-----	-------	--------------	-----	------------	----	------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학생·학부모 및 영양(교)사 등 시민 약 3,000명		
사업목적	학생 등 시민 식생활 개선 교육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선택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제2항
		제26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제3항 제3호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③ 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지역 내에서 시민들과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0	21,600	21,600	0	0	0	21,600	0	
국비	-	0	-	-	-	-	-	0	
도비	-	0	-	-	-	-	-	0	
시비	24,000	21,600	21,600	-	-	-	21,600	0	
기타	-	0	-	-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600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 20,600,000원 ·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및 소통설명회 : 1,000,000원	= 21,600	

□ 예산요구 사유

-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영양(교)사를 포함한 범시민적 식생활 교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학생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6. 3. : 학교 대상 안내 및 희망 학교 신청 접수
 - 2026. 3. ~ 12. : 학교 대상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사업 시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학생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사업 : 22개교 / 3,523명
2024	○ 학교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사업 : 21개교 / 3,041명
2025	○ 학교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사업 : 21개교 / 2,701명(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000	24,706	-	294	
2024	24,000	23,121	-	879	
2025	21,600	5,272	-	16,32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원표	전화	4289
-----	-------	--------------	-----	------------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91개교 약 63,000명		
사업목적	친환경 우수농산물 및 우수경기미 공급에 따른 학교급식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제5조(지원방법)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77,000	2,960,000	2,960,000	0	0	0	3,206,000	246,000	
국비		0						0	
도비	1,638,500	1,480,000	1,480,000				1,603,000	123,000	
시비	1,638,500	1,480,000	1,480,000				1,603,000	123,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06,000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우수농산물 공급지원 : 2,774,000,000원 · 우수경기미 공급지원 : 432,000,000원	= 2,774,000 = 432,000	

□ 예산요구 사유

- 차액지원을 통한 친환경, G마크 등의 인증을 받은 우수경기미 및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고품질의 학교급식 실현

□ 예산증감 사유

- '26년 고등학교 1개교 및 병설유치원 1개원 개교로 급식 학생수 증가
 - '26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본예산 가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8719(2025. 10. 29.)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26년 우수경기미 공급가 및 공급업체 확정에 따른 계약 안내
 - 2026. 1. ~ 12. : 우수농산물·우수경기미 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학교 : 86개교 · 공급물량 : 1,659톤 (농산물 1,081톤 / 쌀 578톤)
2024	· 지원학교 : 87개교 · 공급물량 : 1,706톤 (농산물 1,101톤 / 쌀 605톤)
2025	· 지원학교 : 90개교 · 공급물량 : 1,233톤 (농산물 796톤 / 쌀 437톤)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121,000	2,947,628	-	173,372	
2024	3,277,000	3,236,293	-	40,707	
2025	2,960,000	2,211,986	-	748,0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90
-----	-------	--------------	-----	------------	----	------

학교급식 우수가공품 등 차액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100개교 약 67,000명		
사업목적	우수한 국산 식재료 차액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5호, 제6호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생산·수급 관리 6. 관내 생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가공식품의 학교 소비 증대 도모(개정 2016.4.27.)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75,115	1,000,000	1,000,000	0	0	0	900,000	-100,000	
국비	-	0	-	-	-	-	-	0	
도비	-	0	-	-	-	-	-	0	
시비	1,075,115	1,000,000	1,000,000	-	-	-	900,000	-100,000	
기타	-	0	-	-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00	
학교급식 우수가공품 등 차액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학교급식 우수 가공식품 등 차액지원 : 900,000,000원 =	900,000	

※ 지원대상 품목 : 가공식품 총 32종(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튀김유 등) 189품목

□ 예산요구 사유

- Non-GMO를 비롯한 우수 국내산 가공식품 및 관내 생산품 사용 권장에 따른 차액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
- 관내 우수 식재료 생산업체 발굴 및 공급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2026년 우수 가공식품 단가 협상 및 학교 대상 사업 참여 안내
 - 2026. 3. : 학교별 계약체결(시 선정 공급업체)
 - 2026. 3. ~ 12. : 학교별 공급액에 따른 차액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단 설 유 : 31,713,190원(10개교) ○ 초등학교 : 552,882,250원(47개교) ○ 중 학 교 : 218,788,250원(24개교) ○ 고등학교 : 241,912,080원(14개교) ○ 특수학교 : 4,455,230원(1개교)
2024	○ 단 설 유 : 31,945,620원(10개교) ○ 초등학교 : 494,263,360원(47개교) ○ 중 학 교 : 199,853,460원(24개교) ○ 고등학교 : 208,153,860원(15개교) ○ 특수학교 : 6,951,720원(1개교)
2025	○ 단 설 유 : 20,694,150원(10개교) ○ 초등학교 : 323,457,160원(48개교) ○ 중 학 교 : 139,062,080원(25개교) ○ 고등학교 : 145,983,730원(16개교) ○ 특수학교 : 4,961,180원(1개교)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15,115	1,049,751	-	65,364	
2024	1,075,115	941,168	-	133,947	
2025	1,000,000	634,158	-	365,84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원표	전화	4289
-----	-------	--------------	-----	------------	----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90개교 약 62,000명		
사업목적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우수축산물 공급으로 급식 품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제5조(지원방법)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20,000	1,030,000	1,030,000	0	0	0	826,000	-204,000	
국비		0						0	
도비	460,000	515,000	515,000				413,000	-102,000	
시비	460,000	515,000	515,000				413,000	-102,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26,000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 826,000,000원	= 826,000	

□ 예산요구 사유

- G마크 축산물 축종별 단가 지원으로 관내 학교에서 우수축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적 향상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6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본예산 가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8635(2025. 10. 2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6. 1. ~ 12. :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지원학교 : 86개교 · 공급물량 : 축산물 425,926kg
2024	· 지원학교 : 87개교 · 공급물량 : 축산물 434,044kg
2025	· 지원학교 : 90개교 · 공급물량 : 축산물 352,966kg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40,000	788,079	-	51,921	
2024	920,000	920,000	-	-	
2025	1,030,000	763,261	-	266,73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90
-----	-------	--------------	-----	------------	----	------

단설유치원 축산물 급식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단설유치원
사업규모	관내 단설유치원 10개교 약 2,700명		
사업목적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우수축산물 공급으로 급식 품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제5조(지원방법)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780	40,005	40,005	0	0	0	43,119	3,114	
국비	-	0	-	-	-	-	-	0	
도비	-	0	-	-	-	-	-	0	
시비	42,780	40,005	40,005	-	-	-	43,119	3,114	
기타	-	0	-	-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3,119	
단설유치원 축산물 급식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단설유치원 축산물 급식지원 : 43,119,000원	= 43,119	

□ 예산요구 사유

- 우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G마크 축산물 축종별 단가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적 향상 및 관내 영·유아의 건강 증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5년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축종별 단가 변동으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단설유치원 축산물 급식 지원계획 수립
 - 2026. 1. ~ 12. : 우수축산물 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급대상 : 단설유치원 10개교 ○ 공급실적 : 13,708kg
2024	○ 공급대상 : 단설유치원 10개교 ○ 공급실적 : 15,499kg
2025	○ 공급대상 : 단설유치원 10개교 ○ 공급실적 : 10,339kg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472	34,566	-	2,906	
2024	42,780	38,786	-	3,994	
2025	40,005	28,459	-	11,54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90
-----	-------	--------------	-----	------------	----	------

학교급식경비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사립유치원(36개원)·동지역초등학교(27개교)·중학교(25개교)·고등학교(16개교) 약 62,000명		
사업목적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
	위임규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4호
		제3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559,725	22,449,143	22,449,143	0	0	0	20,548,873	-1,900,270	
국비	-	0	-	-	-	-	-	0	
도비	-	0	-	-	-	-	-	0	
시비	23,559,725	22,449,143	22,449,143	-	-	-	20,548,873	-1,900,270	
기타	-	0	-	-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548,873	
학교급식경비 지원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유초중고 학교급식경비 대응지원 : 20,548,873,000원	= 20,548,873	

□ 예산요구 사유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편성안 변경으로 인한 예산감액[경기도청 학교급식보건과-9231(2025. 9. 2.)]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이자 및 집행잔액 정산
 - 2026. 3. : 1분기 학교급식경비 지급
 - 2026. 6. : 2분기 학교급식경비 지급
 - 2026. 9. : 3분기 학교급식경비 지급
 - 2026. 12. : 4분기 학교급식경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42)/동지역초등학교(26)/중학교(24)/고등학교(14)개교 ○ 지원금액 : 20,738,314천원
2024	○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42)/동지역초등학교(26)/중학교(24)/고등학교(15)개교 ○ 지원금액 : 22,326,149천원
2025	○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36)/동지역초등학교(27)/중학교(25)/고등학교(16)개교 ○ 지원금액 : 18,557,634천원(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577,057	20,738,314	-	838,743	
2024	23,559,725	22,326,149	-	1,233,576	
2025	22,449,143	18,557,634	-	3,891,50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90
-----	-------	--------------	-----	------------	----	------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취약계층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3,465명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영양불균형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낙농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44,500	320,650	320,650	0	0	0	502,425	181,775	
국비	206,700	192,390	192,390				301,455	109,065	
도비	41,340	0						0	
시비	96,460	128,260	128,260				200,970	72,71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2,425	
학교우유급식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학교우유급식지원 : 580원*3,465명*250일 = 502,425,000원 =	502,425	

□ 예산요구 사유

- 우유소비기반 확대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통한 영양불균형 해소

□ 예산증감 사유

- '26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본예산 국도비내시서(가내시) 및 지원 대상자 3,275명 → 3,465명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경기도 축산정책과-15339(2025. 9. 24.)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학교우유급식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6. 1. ~ 12. : 우유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집행액 : 학교우유급식지원(90,815,600원)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245,000,000원) · 추진량 : 학교우유급식지원(1~2월: 86개교-2,984명, 3~12월: 1개교-약 215명)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약 2,000명)
2024	· 집행액 : 학교우유급식지원(30,075,660원)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300,000,000원) · 추진량 : 학교우유급식지원(1개교-약 217명)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약 2,100명)
2025	· 집행액 : 학교우유급식지원(38,701,030원)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종료 · 추진량 : 학교우유급식지원(83개교-약 2,508명)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8,200	335,816	-	52,384	
2024	344,500	330,076	-	14,424	
2025	320,650	38,701	-	281,94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90
-----	-------	--------------	-----	------------	----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초등학교
사업규모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약 9,000명		
사업목적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도모 및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 마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제26조(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생활 교육지원 성과가 우수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우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390,520	390,520	
국비	0	0	0	0	0	0	195,260	195,26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195,260	195,2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0,520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 390,520,000원	= 390,52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 국산 제철 과일소비 촉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예산편성
[경기도 친환경농업과-20606(2025. 10. 2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 2026. 3. ~ 12. : 과일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원표	전화	4289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축산과



(축산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축산과
요 구 액	3,858,540천원		

☐ **세입예산 요구**

☐ 해당사항 없음(3,858,540천원 전액 보조금)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122농가			
사업목적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1,702	170,624	370,623	0	1	-200,000	119,483	-51,141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10,340	51,187	111,187	0	0	-60,000	35,845	-15,342	
시비	41,362	119,437	259,436	0	1	-140,000	83,638	-35,799	
기타	34,468	113,749	247,082	0	0	-133,333	79,655	-34,094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9,483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01-14 기타보상금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보험료) : 1,632,275원*122농가*60% =	119,483	

□ 예산요구 사유

- 자연재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회복과 경영 조기 안정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작년 대비 사업량 감소(132개소 → 122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1. : 사업 계획 및 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1,874,531두(수) - 집행액 : 64,629천원
2024	- 사업량 : 2,332,481두(수) - 집행액 : 51,702천원
2025	- 사업량 : 2,493,789두(수) - 집행액 : 129,09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705	64,629	-	76	
2024	51,702	51,702	-	-	
2025	170,624	129,090	-	41,53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축산재해 긴급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처리 및 시설 피해 복구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000	8,000	8,000	0	0	0	8,000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3,600	2,400	2,400	0	0	0	2,400	0	
시비	8,400	5,600	5,600	0	0	0	5,60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	
축산재해 긴급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피해복구지원 : 4,000,000원*2개소 =	8,000	

□ 예산요구 사유

○ 자연재해, 사고, 화재 등의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긴급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2.~2026.03. : 사업 홍보
 - 2026.04.~2026.11. : 피해복구 대상 확인 및 긴급 지원
 - 2026.11.~2026.12. :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내용 : 축산재해 긴급지원 - 집행액 : 2,620천원
2024	- 집행액 : 0원 (피해 무, 반납)
2025	- 사업내용 : 축산재해 긴급지원 - 집행액 : 6,68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000	2,620	-	3,380	
2024	12,000	-	-	12,000	
2025	8,000	6,688	-	1,31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1,000L		
사업목적	면역증강제 공급을 통해 가축 면역력 상승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 및 가축사양 안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0	34,000	34,000	0	0	0	33,000	-1,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6,000	10,200	10,200	0	0	0	9,900	-300	
시비	24,000	23,800	23,800	0	0	0	23,100	-70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3,000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206-01 재료비	· 면역증강제 : 33,000원*5L*200통	= 33,000	

□ 예산요구 사유

- 매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피해 속출로 축산농가에 면역증강제 공급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 상승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1,050L → 1,000L)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5. : 면역증강제 선정 및 구입
 - 2026. 06. ~ 2026. 09. : 면역증강제 공급
 - 2026. 10. :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내역 : 635L(127통/5L, 양계 20농가) - 집행액 : 19,898천원
2024	- 지원내역 : 900L(180통/L, 양계 19농가) - 집행액 : 29,872천원
2025	- 지원내역 : 1,050L(210통/L, 양계 34농가) - 집행액 : 33,95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19,898	-	102	
2024	30,000	29,872	-	128	
2025	34,000	33,956	-	4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가축행복농장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 지원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축산업 기반육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① 가축의 행복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19,500	370,476	370,475	1	0	0	200,000	-170,476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75,763	111,143	60,710	50,433	0	0	60,000	-51,143	
시비	343,737	259,333	309,765	-50,432	0	0	140,000	-119,333	
기타	419,500	370,476	370,475	1	0	0	200,000	-170,47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가축행복 농장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가축행복 인증 농장 사육환경 개선 : 200,000천원*2개소*50% =	200,0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사 환경(온도, 습도, 화재 등)관리시설 개선, 환경 개선(환경관리기·환풍기 등) 등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으로 축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5개소 → 2개소)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2026. 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1. : 사업추진
 - 2026. 11.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사업규모 : 6개소(이월1개소 포함)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등 - 집행액 : 487,476천원
2024	- 사업규모 : 4개소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등 - 집행액 : 306,325천원
2025	- 사업규모 : 3개소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등 - 집행액 : 169,98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7,527	487,476	-	51	
2024	419,500	306,325	-	113,175	
2025	370,476	169,983	-	200,49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한우농가
사업규모	미경산우 150두		
사업목적	한우 미경산우 정보 이력 관리로 민간의 자율 표시를 유도하고 비육용(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고기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한우농가 자율적 공급조절 능력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200	2,800	2,100	0	0	700	13,500	10,700	
국비	3,600	1,400	1,050	0	0	350	6,750	5,35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3,600	1,400	1,050	0	0	350	6,750	5,350	
기타	4,800	1,855	1,400	0	0	455	9,000	7,145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500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 : 150,000원*150두*60% =	13,500	

□ 예산요구 사유

- 한우 미경산우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 지원하여 비육용(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및 미경산우 정보 이력 관리 정착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사업비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
 - 사업비 : 마리당 133,000원 → 150,000원
 - 사업량 : 35두 → 150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3. ~ 2026. 11.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난소 결찰·적출 시술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선정내역 : 35두(4농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7,200	-	-	7,200	
2025	2,800	-	-	2,8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2,782두(건)		
사업목적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0,650	297,150	169,430	127,720	0	0	106,973	-190,177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36,195	89,145	50,829	38,316	0	0	32,092	-57,053	
시비	84,455	208,005	118,601	89,404	0	0	74,881	-133,124	
기타	53,650	190,950	100,100	90,850	0	0	63,200	-127,7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6,973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한우명품화 사업 : 61,035원*2,782두(건)*63% =	106,973	

□ 예산요구 사유

-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3,980두 → 2,782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2.~2026.03. : 사업계획
 - 2026.03.~2026.11. : 사업추진
 - 2026.11.~2026.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4,050두(수) - 집행액 : 176,522천원
2024	- 사업량 : 3,350두(수) - 집행액 : 120,650천원
2025	- 집행액 : 297,150천원(선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6,522	176,522	-	-	
2024	120,650	120,650	-	-	
2025	297,150	297,15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낙농·우유 사육 농가
사업규모	1,732개소		
사업목적	가축 개량, 시설개선 등으로 가축사육환경개선 및 생산능력 향상으로 농가 경영개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7,250	240,700	162,800	67,900	10,000	0	59,550	-181,150	
국비	0	0	0	0	0	0		0	
도비	21,450	72,210	48,840	20,370	3,000	0	17,865	-54,345	
시비	85,800	168,490	113,960	47,530	7,000	0	41,685	-126,805	
기타	90,850	215,700	137,800	67,900	10,000	0	59,550	-156,1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9,550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개량사업 : 26,455,000원*55% · 경영개선사업 : 30,000,000원*50% · 시설개선사업 : 60,000,000원*50%	= 14,550 = 15,000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사육 환경 개선, 가축 개량,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낙농육우산업 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6,932개소 → 1,732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예산액 : 139,800천원 - 사업량 : 5,027두/개소/대 - 집행액 : 139,098천원
2024	- 예산액 : 107,250천원 - 사업량 : 5,648두/개소/대 - 집행액 : 107,241천원
2025	- 예산액 : 240,700천원 - 사업량 : 50개소/대 - 집행액 : 166,9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9,800	139,098	-	702	
2024	107,250	107,241	-	9	
2025	240,700	166,900	-	73,8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양돈농가
사업규모	시설개선 13개소		
사업목적	돈사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4,200	65,000	65,000	0	0	0	16,000	-49,000	
국비	0	0	0	0	0	0		0	
도비	10,840	19,500	19,500	0	0	0	4,800	-14,700	
시비	43,360	45,500	45,500	0	0	0	11,200	-34,300	
기타	54,200	65,000	65,000	0	0	0	16,000	-49,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출하선별기 : 6,000,000원*2개소*50%	= 6,000	
		· 냉·난방기 : 15,000,000원*1개소*50%	= 7,500	
		· 포유모돈 급이기 : 500,000원*10개소*50%	= 2,500	

□ 예산요구 사유

- 냉·난방기, 안개분무기 등 사육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양돈산업의 지속성 및 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내역 : 지하수 정수시설 3개소, 우레탄 단열시설 2개소, 자돈위생 깔판 100세트, 냉·난방기 1대 - 집행액 : 70,250천원
2024	- 지원내역 : 냉·난방기 6대, 자돈위생깔판 200세트, 자동소화패치 2개소 - 집행액 : 52,500천원
2025	- 지원내역 : 냉·난방기 6대, 지하수 정수시설 1개소 - 집행액 : 60,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500	70,250	-	2,250	
2024	54,200	52,500	-	1,700	
2025	65,000	60,000	-	5,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농가
사업규모	시설 4개소, 장비 11대		
사업목적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 환경 및 시설 개선 지원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 경영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1,250	162,600	101,250	0	61,350	0	66,667	-95,933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30,375	48,780	30,375	0	18,405	0	20,000	-28,780	
시비	70,875	113,820	70,875	0	42,945	0	46,667	-67,153	
기타	101,250	162,600	101,250	0	61,350	0	66,667	-95,933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6,667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설개선 : 80,000,000원*50%	=	40,000
		· 장비개선 : 53,334,000원*50%	=	26,667

□ 예산요구 사유

- 축사 내 냉·난방기, 환기시설, 종란운반차량 등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축사의 환경개선, 가축의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예산액 : 55,800천원 - 사업량 : 15개소 - 집행액 : 55,448천원
2024	- 예산액 : 101,250천원 - 사업량 : 14개소 - 집행액 : 100,479천원
2025	- 예산액 : 162,600천원 - 사업량 : 19개소 - 집행액 : 125,79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800	55,448	-	352	
2024	101,250	100,479	-	771	
2025	162,600	125,791	-	36,80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축산환경 개선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수분조절제 2,517톤, 악취저감용 탈취제 8,000kg		
사업목적	축산농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0,000	442,930	362,500	60,000	0	20,430	288,737	-154,193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54,000	132,879	108,750	18,000	0	6,129	86,621	-46,258	
시비	216,000	310,051	253,750	42,000	0	14,301	202,116	-107,935	
기타	270,000	442,930	362,500	60,000	0	20,430	288,737	-154,193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88,737	
축산환경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수분조절제 : 150,000원*2,517톤*50%	= 188,737	
		· 악취저감탈취제 : 25,000원*8,000kg*50%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악취민원 해소 및 분뇨적정처리 자원화 확대

□ 예산증감 사유

- 수분조절제 사업량 감소(3,500톤 → 2,517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2026. 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1. : 사업추진
 - 2026. 11.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수분조절제 1,700톤, 악취저감미생물제(탈취제) 30,000kg - 집행액 : 208,766천원
2024	- 사업량 : 수분조절제 3,400톤, 악취저감미생물제(탈취제) 8,000kg - 집행액 : 270,000천원
2025	- 사업량 : 수분조절제 3,871톤, 악취저감미생물제(탈취제) 95,420kg - 집행액 : 422,5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000	208,766	-	1,234	
2024	270,000	270,000	-	-	
2025	442,930	442,93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8개소, 15대		
사업목적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로 환경, 수질오염 사전 방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0,000	305,000	310,000	0	70,000	-75,000	180,000	-125,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44,000	91,500	93,000	0	21,000	-22,500	54,000	-37,500	
시비	176,000	213,500	217,000	0	49,000	-52,500	126,000	-87,500	
기타	220,000	305,000	310,000	0	70,000	-75,000	180,000	-125,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00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자원화]		
		· 밀폐형 축분처리시설 : 150,000,000원*1개소*50%	= 75,000	
		· 가축분뇨 교반장비 : 10,000,000원*2대*50%	= 10,000	
		· 퇴비살포기 : 20,000,000원*2대*50%	= 20,000	
		· 악취예방 시설지원 : 50,000,000원*1개소*50%	= 25,000	
		·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 50,000,000원*2대*50%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환경법규 준수 및 악취민원 해소
- 가축분뇨 처리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문제 해소 및 분뇨처리 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19개소 → 8개소)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3. :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 2026. 03. ~ 2026. 04. :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 2026. 04. ~ 2026. 10. : 사업추진
 - 2026. 10.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콤포스트(65t) 1개소 - 스키드 로더 4대
2024	- 콤포스트(65t) 2개소 - 통풍식 퇴비사 개선 1개소 - 장착형 퇴비 교반기 4대 - 스키드 로더 1대
2025	- 퇴비사 개선지원(스크류형 교반장비) 1개소 - 퇴비살포기 15개소(진행중) - 악취예방시설지원 2개소(진행중) - 다용도 축분처리장비(스키드 로더) 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0,000	145,000	-	25,000	
2024	220,000	180,000	-	40,000	
2025	305,000	80,000	-	225,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행정7급 고나영	전화	4303
-----	-----	----------	-----	----------	----	------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옥수수, 수단그라스, 연맥 등 조사료 종자 9,340kg		
사업목적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400	19,800	13,204	0	6,596	0	16,812	-2,988	
국비	7,200	9,900	6,602	0	3,298	0	8,406	-1,494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7,200	9,900	6,602	0	3,298	0	8,406	-1,494	
기타	9,600	13,200	8,803	0	4,397	0	11,208	-13,188.792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812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종자구입비 : 3,000원*9,340kg*60% =	16,812	

□ 예산요구 사유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조사료 수입대체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11,000kg → 9,340kg)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2.~2026.03. : 사업계획
 - 2026.03.~2026.11. : 사업비 선집행 및 추진 지도
 - 2026.11.~2026.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8,000kg - 집행액: 19,200천원
2024	- 사업량: 8,000kg - 집행액: 16,800천원
2025	- 사업량: 11,000kg - 집행액: 19,8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200	19,200	-	-	
2024	14,400	14,400	-	-	
2025	19,800	19,8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조사료생산용 벧짚비닐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벧짚비닐 1,200롤		
사업목적	조사료 생산농가에 벧짚비닐을 지원하여 사료 구매비용 절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400	84,000	84,000	0	0	0	72,000	-12,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6,120	25,200	25,200	0	0	0	21,600	-3,600	
시비	14,280	58,800	58,800	0	0	0	50,400	-8,400	
기타	20,400	84,000	84,000	0	0	0	72,000	-12,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000	
조사료생산용 벧짚비닐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벧짚비닐 : 120,000원*1,200롤*50%	= 72,000	

□ 예산요구 사유

- 벧짚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로 조사료 생산 증대 및 경영비 절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1,400롤 → 1,200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3. : 사업계획
 - 2026. 3. ~ 11. : 사업비 선집행 및 추진 지도
 - 2026. 11. ~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벚짚비닐 1,000롤 - 집행액 : 60,000천원
2024	- 사업량 : 벚짚비닐 340롤 - 집행액 : 20,400천원
2025	- 사업량 : 벚짚비닐 1,400롤 - 집행액 : 84,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0,000	60,000	-	-	
2024	20,400	20,400	-	-	
2025	84,000	84,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양봉농가
사업규모	밀원수 묘목 204수, 자연화분 4,001kg, 면역증강제 451개, 3농가		
사업목적	화분매개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양봉산업 관리 및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450	40,574	42,450	0	-1,876	0	26,667	-13,907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12,735	12,172	12,735	0	-563	0	8,000	-4,172	
시비	29,715	28,402	29,715	0	-1,313	0	18,667	-9,735	
기타	37,090	35,214	37,090	0	-1,876	0	0	-35,214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667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밀원수묘목 : 1,500원*204수*50% · 자연화분 : 8,000원*4,001kg*50% · 면역증강제 : 20,000원*451개*50% · 여왕벌 육성 : 2,000,000원*3농가	= 153 = 16,004 = 4,510 = 6,000	

□ 예산요구 사유

○ 양봉농가에 자연화분, 품질검사 등 지원을 통해 양봉산업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한 양봉업 육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양봉농가 밀원수 묘목 200수, 품질검사 30회, 자연화분 3,339kg 지원
2024	- 양봉농가 밀원수 묘목 200수, 품질검사 62회, 자연화분 7,550kg, 여왕벌 육성 1개소 지원
2025	- 소초광 180박스, 전면왕농 190개, 품질검사 44회, 양봉 전용사료 7,000kg, 여왕벌 육성 1개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100	14,656	-	444	
2024	42,450	37,368	-	5,082	
2025	40,574	40,550	-	2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양봉농가
사업규모	310개소		
사업목적	양봉농가에 현대화된 양봉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감소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100	19,800	16,100	0	3,700	0	19,800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4,830	5,940	4,830	0	1,110	0	5,940	0	
시비	11,270	13,860	11,270	0	2,590	0	13,860	0	
기타	16,100	19,800	16,100	0	3,700	0	19,80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800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양봉전동가 : 3,000,000원*1대*50%	= 1,500	
		· 벌꿀이송펌프 : 1,100,000원*1대*50%	= 550	
		· 간이창고 : 400,000원*1개소*50%	= 200	
		· 저온저장고 : 7,000,000원*2개소*50%	= 7,000	
		· 꿀벌소분기 : 1,500,000원*1개*50%	= 750	
		· 상차용리프트 : 1,500,000원*2개*50%	= 1,500	
		· EPP벌통 : 50,000원*300개*50%	= 7,500	
		· CCTV : 800,000원*2개*50%	= 800	

□ 예산요구 사유

- 현대화된 양봉장비 지원으로 우수한 품질의 양봉 산물 생산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최종예산액 대비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예 산 액 : 24,130천원 - 사 업 량 : 159개소/대 - 집 행 액 : 24,130천원
2024	- 예 산 액 : 16,100천원 - 사 업 량 : 524개소/대 - 집 행 액 : 16,100천원
2025	- 예 산 액 : 19,800천원 - 사 업 량 : 324개소/대 - 집 행 액 : 16,3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130	24,130	-	-	
2024	16,100	16,100	-	-	
2025	19,800	16,300	-	3,5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젓소 고능력우 동결정액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검정회		대표자		이성우	
사업목적		고능력 유전형질을 갖춘 정액공급으로 고능력우 생산 및 경쟁력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탐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축산법			제3조제1항,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 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80,000	80,000	80,000	0	0	0	72,000	-8,000	
시비	40,000	40,000	40,000	0	0	0	36,000	-4,000	
자부담	40,000	40,000	40,000	0	0	0	36,000	-4,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72,000	36,000	36,000	
젓소 고능력우 동결정액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젓소 : 40,000원*1,800마리 =	72,000	36,000	36,000	

□ 예산요구 사유

-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갖춘 고능력우를 생산·육성하여 사육규모 대비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김포 낙농가 집중 육성으로 안정적 발전 및 원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히 요구됨

□ 예산증감 사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감액(2,000두 → 1,800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00두, 40,000천원 지급
2024	○ 2,000두, 40,000천원 지급
2025	○ 2,000두, 40,000천원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80,000	40,000	40,000	80,000	40,000	40,000	-	-	-	
2024	80,000	40,000	40,000	80,000	40,000	40,000	-	-	-	
2025	80,000	40,000	40,000	80,000	40,000	40,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축산팀장 박용준	전화	4301
-----	-----	----------	-----	----------	----	------

배합사료 가공재료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금한우영농조합		대표자	항호선	
사업목적	TMR 배합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 <td>재 원</td> <td colspan="/>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태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축산법		제3조제1항,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 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31,730	31,730	31,730	0	0	0	28,558	-3,172	
시비	15,865	15,865	15,865	0	0	0	14,279	-1,586	
자부담	15,865	15,865	15,865	0	0	0	14,279	-1,586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8,558	14,279	14,279	
배합사료 가공재료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포장재 : 250원*114,232장 =	28,558	14,279	14,279	

□ 예산요구 사유

-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및 사육마릿수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으로 농가피해 증가, 생산비(사료비) 절감 측면에서 TMR사료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나 가격 부담
- TMR사료 공장별로 개별 구매하던 포장재를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 예정물량을 결집 및 통합 입찰하여 단가를 낮춰 농가의 구입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 본 사업은 필히 요구됨

□ 예산증감 사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감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8,665천원 지급
2024	○ 15,865천원 지급
2025	○ 15,865천원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37,330	18,665	18,665	37,330	18,665	18,665	-	-	-	
2024	31,730	15,865	15,865	31,730	15,865	15,865	-	-	-	
2025	31,730	15,865	15,865	31,730	15,865	15,865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축산팀장 박용준	전화	4301
-----	-----	----------	-----	----------	----	------

안전축산물 유통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축종별협회 6개단체		대표자	김영태 외 5명	
사업목적	시민들에게 관내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시식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촉진 증대를 통한 축산물 유통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계(연계)반복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แท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축산법		제3조제1항,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 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7,000	20,000	20,000	0	0	0	24,000	4,000	
시비	8,500	10,000	10,000	0	0	0	12,000	2,000	
자부담	8,500	10,000	10,000	0	0	0	12,000	2,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4,000	12,000	12,000	
안전축산물 유통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소고기 : 40,000원*180kg	= 7,200	3,600	3,600	
		· 돼지고기 : 13,000원*369kg	= 4,800	2,400	2,400	
		· 우 유 : 3,500원*1,029병	= 3,600	1,800	1,800	
		· 닭고기 : 20,000원*120수	= 2,400	1,200	1,200	
		· 달걀 : 8,000원*300판	= 2,400	1,200	1,200	
		· 양봉산물 : 20,000원*180kg	= 3,600	1,800	1,8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민에게 우수 축산물 시식기회를 제공, 김포시민은 시식기회를 통한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 물가상승 및 경기 악화로 인해 축산물 소비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경영악화와 자신감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축산인 격려

□ 예산증감 사유

- 축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시식회 등) 추가에 따른 증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0,000천원 집행(축종별 협회 6개소)
2024	○ 8,500천원 집행(축종별 협회 6개소)
2025	○ 10,000천원 집행(축종별 협회 6개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	-	-	
2024	17,000	8,500	8,500	17,000	8,500	8,500	-	-	-	
2025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	-	-	10. 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축산팀장 박용준	전화	4301
-----	-----	----------	-----	----------	----	------

학생승마체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승마장
사업규모		350명			
사업목적		청소년의 심신수양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으로 자긍심 부여 및 건강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말산업 육성법			제4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560	87,360	60,480	0	0	26,880	78,400	-8,960	
국비	18,240	37,440	25,920	0	0	11,520	33,600	-3,84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24,320	49,920	34,560	0	0	15,360	44,800	-5,120	
기타	18,240	37,440	25,920	0	0	11,520	33,600	-3,84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8,400	
학생승마체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승마체험비 및 보험료 : 320,000원*350명*70%	= 78,400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의 승마체험지원을 통해 체력증진 및 심신수양과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사업량 감소(390명 → 350명)로 인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3. ~ 2026. 12. : 대상자 선정 및 승마체험 실시
 - 2026. 1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내역 : 학생승마체험 200명 - 집행액 : 42,392천원
2024	- 지원내역 : 학생승마체험 188명 - 집행액 : 41,713천원
2025	- 지원내역 : 학생승마체험 376명 진행중 - 집행액 : 없음(12월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800	42,392	-	2,408	
2024	42,560	41,713	-	847	
2025	87,360	-	-	87,3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말 사육 농가 및 승마장
사업규모	보험 2두, 장제 20두, 톱밥 8톤		
사업목적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 시설 개선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말산업 육성법	제4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376	7,365	7,365	0	0	0	2,670	-4,695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1,313	2,210	2,210	0	0	0	801	-1,409	
시비	3,063	5,155	5,155	0	0	0	1,869	-3,286	
기타	4,376	7,365	7,365	0	0	0	2,670	-4,695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70	
승마장 육성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험 : 630,000원*2두*50% · 장제 : 99,000원*20두*50% · 톱밥 : 262,500원*8톤*50%	= 630 = 990 = 1,050	

□ 예산요구 사유

○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 시설 개선을 통해 승마인구 저변확대 도모 및 말산업 경쟁력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

- 보험 및 장제 : 49두 → 22두
- 톱밥 및 규사 : 36톤 → 8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02. ~ 2026. 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예산액 : 4,376천원 - 집행액 : 4,375천원 - 집행잔액 : 1천원
2025	- 예산액 : 7,365천원 - 집행액 : 3,675천원 - 집행잔액 : 3,69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4,376	4,375	-	1	
2025	7,365	3,675	-	3,69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192명		
사업목적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건강회복 및 출산장려,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제5호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8,000	229,600	229,600	0	0	0	119,200	-110,4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59,000	114,800	114,800	0	0	0	59,600	-55,200	
시비	59,000	114,800	114,800	0	0	0	59,600	-55,20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9,200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 100,000원*1,192명	= 119,200	

□ 예산요구 사유

○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우수한 축산물 소비 촉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사업량 감소[2,296명 → 1,192명(1,104명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공급업체 지정 및 계약
 - 2026. 02. ~ 2026. 03.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026. 03.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지원내역 : 1,885명 - 집행액 : 109,200천원
2025	- 지원내역 : 1,622명 - 집행액 : 137,7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18,000	109,200	8,800	0	
2025	229,600	137,700	-	91,9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16,000kg		
사업목적	축산농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제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40,000	40,000	0	0	0	40,000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12,000	12,000	0	0	0	12,000	0	
시비	0	28,000	28,000	0	0	0	28,000	0	
기타	0	40,000	40,000	0	0	0	40,00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악취저감 미생물제 : 5,000원*16,000kg*50%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악취 민원이 많은 양돈농가에 대해 악취저감 미생물제 집중 지원하여 악취 민원 해소 및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변동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2026. 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1. : 사업추진
 - 2026. 11.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 사업량 : 16,000kg · 집행액 : 40,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0,000	4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폭염대비 축산농가 긴급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면역증강제(가금류) 750L, 면역증강제(소, 돼지) 1,200kg, 양봉 열 차단막 1,875장		
사업목적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등 지원으로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30,000	30,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30,000	30,00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폭염대비 축산농가 긴급 지원	206-01 재료비	· 가금 면역증강제 70,000원*150통 · 한우 면역증강제 16,000원*500포 · 젖소 면역증강제 15,000원*200포 · 돼지 면역증강제 11,000원*500포 · 양봉 열 차단막 1,600원*1,875장	= 10,500 = 8,000 = 3,000 = 5,500 = 3,000	

□ 예산요구 사유

- 여름철 폭염 장기화 및 강도 심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폐사 및 산란율 저하, 난중 저하, 증체를 감소, 산유량 감소 등의 생산성이 급감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함
- 폭염 관련 경기도의 보조사업 규모가 실질적 농가 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이에따라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폭염대응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효율적 대처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으로 최초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5. : 면역증강제 선정 및 구입
 - 2026. 06. ~ 2026. 09. : 면역증강제 배부
 - 2026. 10. ~ 2026. 12. : 공급 내역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12개소		
사업목적		축사 내 노후된 전선 교체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화재예방 및 가축피해 예방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90,000	90,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27,000	27,000	
시비	0	0	0	0	0	0	63,000	63,000	
기타	0	0	0	0	0	0	90,000	90,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0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축사 노후전선 교체 : 15,000,000원*12개소*50%	= 90,0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사 내 노후된 전선 교체를 통한 축산농가의 화재 예방 및 가축 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계획 수립
 - 2026. 02. ~ 2026. 03.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살처분보상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가축질병(구제역 · AI · ASF · 렘피스킨 · 결핵 · 브루셀라 등) 발생 시 지급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감염축 · 의심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 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11,650	2,000,000	2,000,000	0	0	0	1,160,000	-840,000	
국비	1,321,600	1,600,000	1,600,000	0	0	0	928,000	-672,000	
도비	165,200	200,000	200,000	0	0	0	116,000	-84,000	
시비	424,850	200,000	200,000	0	0	0	116,000	-84,00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60,000	
살처분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 가축전염병 등 감염축 살처분 보상 * 농가별 축종별 연령별 시세, 두수 등에 따라 보상액 상이	= 1,160,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살처분 시 보상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1. ~ 2025.12.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2026.01. ~ 2026.12. : 가축질병 발생 관련 살처분보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AI 발생농가 1개소, ASF 발생농가 2개소 살처분보상 · ASF 역학관련 지육폐기 1개소 보상
2024	· ASF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2개소 · 렘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4개소 · ASF 역학관련 지육폐기 5개소 보상
2025	· ASF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1개소 · 고병원성 AI 예방적살처분 보상 1개소 · ASF 역학관련 지육폐기 2개소 보상 · 구제역 및 렘피스킨 접촉 후 유사산, 폐사 개체 보상 9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926,671	3,589,821	2,336,850	-	
2024	4,850,250	4,850,250	-	-	
2025	2,000,000	844,274	-	1,155,72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2 4313
-----	-----	------------	-----	----------------------	----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소재 매몰지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생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소멸화 처리 비용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1항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751	262,500	262,500	0	0	0	150,000	-112,500	
국비	7,500	105,000	105,000	0	0	0	60,000	-45,000	
도비	1,688	0	0	0	0	0	0	0	
시비	9,563	157,500	157,500	0	0	0	90,000	-67,50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	401-01 시설비	· 매몰지 소멸화 : 75,000,000원*2개소 =	150,000	

□ 예산요구 사유

-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의 사후관리 및 발굴소멸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매몰지(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2개소) 발굴소멸을 위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6. 02. ~ 10. : 매몰지 사후관리 물품 구입 및 소멸화 처리 등 사업 추진
 - 2026. 11. ~ 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매몰지 19개소 소멸화 처리
2024	· 매몰지 2개소 사후관리 실시
2025	· 매몰지 5개소 소멸화 처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85,996	534,289	98,598	153,109	
2024	117,349	117,337	-	12	
2025	262,500	175,765	-	86,73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3
-----	-----	------------	-----	----------	----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12개 질병 12,205,100마리		
사업목적	돼지열병, 소 설사병, 닭 뉴캐슬, 개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12종 예방백신 구입·접종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② 시장은 사전 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91,404	403,584	251,984	151,600	0	0	288,529	-115,055	
국비	110,925	112,037	110,187	1,850	0	0	123,803	11,766	
도비	48,560	50,856	0	50,856	0	0	22,593	-28,263	
시비	231,919	240,691	141,797	98,894	0	0	142,133	-98,558	
기타	34,400	42,400	36,000	6,400	0	0	48,000	5,6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88,529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06-01 재료비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 11종 12,145,100마리	= 216,529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돼지씨코백신 지원 : 2,000원*60,000마리*60%	= 72,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사업개편으로 감액(도비 지원 백신 5종 별도 도비보조 사업에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1. ~ 2026. 02. : 가축방역협의회(축종별 지원약품 협의 및 선정)농가 수의사 백신접종 지원)
 - 2026. 03. ~ 2026. 12. : 사업집행(예방접종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돼지췌코백신 반기별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축산농가 협의 및 백신 19종 선정 ·소, 가금, 개 예방백신 19개 질병 22,045,374마리분 접종 완료
2024	·축산농가 협의 및 백신 18종 선정 ·소, 가금, 개 예방백신 18개 질병 17,888,300마리분 접종 완료
2025	·축산농가 협의 및 백신 17종 선정 ·소, 가금, 개 예방백신 15개 질병 7,446,761마리분 접종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4,148	351,315	-	22,833-	
2024	391,404	380,765	-	10,639	
2025	403,584	243,893	-	159,69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2 4313
-----	-----	------------	-----	----------------------	----	--------------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돼지, 가금 등 사육농가
사업규모	258,300두		
사업목적	소 축종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보툴리즘 및 기생충 등 예방약품 공급으로 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500	109,200	32,500	76,700	0	0	57,600	-51,600	
국비	-	0	0	0	0	0	0	0	
도비	9,750	32,760	9,750	23,010	0	0	17,280	-15,480	
시비	22,750	76,440	22,750	53,690	0	0	40,320	-36,120	
기타	32,500	32,500	32,500	0	0	0	0	-32,5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7,600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206-01 재료비	· 가금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 200원 * 255,000마리 · 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 2,000원 * 3,300마리	= 51,000 = 6,6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나 「국비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가축전염병 (돼지 PRRS, 가금 감보로병 등)에 대한 예방 약품 공급으로 축산농가 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소 보툴리즘 백신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예산 경기도 사업 지원 품목에서 제외되어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기본계획 수립
 - 2026. 01. ~ 2026. 02. : 가축방역협의회(축종별 지원약품 협의 및 선정)
 - 2026. 03. ~ 2026. 06. : 사업집행(재료비 백신 구입 및 지원)
 - 2026. 08.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예방약품 56농가 1,878두분 공급
2024	·예방약품 60농가 6,931두분 공급
2025	·예방약품 60농가 6,311,249두분 공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500	8,947	-	3,553	
2024	32,500	27,159	-	5,341	
2025	109,200	99,715	-	9,48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2 4313
-----	-----	------------	-----	----------------------	----	--------------

닭 전염병 예방백신

사업기간	2026. 1. 1. ~ 2026. 6. 30.	사업위치	관내 가금농가
사업규모	닭 130만 마리		
사업목적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약품 지원으로 농가피해 최소화(질병정정화로 생산성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② 시장은 사전 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000	40,000	40,000	0	0	0	40,000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40,000	40,000	40,000	0	0	0	40,00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닭 전염병 예방백신	206-01 재료비	· IB백신 : 10,000원*1,000병(1,000마리/병)	= 10,000	
		· 저병원성 AI-ND 백신 : 100,000원*300병(1,000마리/병)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닭 전염성 기관지염(IB)* 백신지원으로 농가 피해 예방
 - *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발생 시 빠른 전파·높은 폐사율(약 30%)로 사육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
- 양계농가에 저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예방백신을 지원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2. : 가축방역약품 선정 협의회 개최하여 약품 선정
 - 2026. 03. ~ 2026. 06. : 사업집행(백신·약품 구입 및 지원)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저병원성 AI-ND 예방백신(ABENQ) 30만 마리, IB백신 447만 마리 분량 지원
2024	저병원성 AI-ND 예방백신(ABENQ) 20만 마리, IB백신 442만 마리 분량 지원
2025	저병원성 AI-ND 예방백신(ABENQ) 15만 마리, IB백신 444만 마리 분량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0	49,990	-	10	
2024	40,000	39,872	-	128	
2025	40,000	39,912	-	8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3
-----	-----	------------	-----	----------	----	------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돼지 사육농가
사업규모	1,237두		
사업목적	거래 소 검사 채혈비를 채혈요원(김포시 공수의사)에 지급하여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사전탐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800	15,000	30,000	0	-24,750	9,750	18,555	3,555	
국비	8,640	4,500	9,000	0	-7,425	2,925	5,567	1,067	
도비	3,024	0	0	0	0	0	0	0	
시비	17,136	10,500	21,000	0	-17,325	6,825	12,988	2,488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555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지원 : 15,000원*1,237두 =	18,555	

□ 예산요구 사유

-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 도축 및 거래 전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안전먹거리 확보를 위한 검사량 증가(1,000두 → 1,237두)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기본계획 수립
 - 2026.01.~2026.12. : 도축출하 소 및 시장 거래 소 채혈검사 실시
 - 2026.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일제검진 채혈 1,900두
2024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일제검진 채혈 1,816두
2025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 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28,775	-	195	
2024	28,800	27,115	-	1,685	
2025	15,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양돈농가 질병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돼지 사육농가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돼지농가에 질병·사양·환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으로 농가질병 예방 및 소독효과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6,000	6,000	0	0	0	6,000	0	
국비	-	3,000	3,000	0	0	0	3,000	0	
도비	-	0	0	0	0	0	0	0	
시비	-	3,000	3,000	0	0	0	3,000	0	
기타	-	4,000	4,000	0	0	0	4,00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양돈농가 질병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양돈농가 질병관리 : 10,000,000원*1개소*60%	= 6,000	

□ 예산요구 사유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양돈농가 질병 발생 최소화 및 농가 경영능력 향상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검사 및 컨설팅으로 양돈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대비 증감 없음
- 농가 질병 및 사육환경 관리 향상을 위해 2026년 예산 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 01.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
 - 2026. 02. ~ 2026. 12. : 사업(질병관리 컨설팅) 실시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양돈농장 컨설팅 1개소
2024	해당없음
2025	양돈농장 컨설팅 1개소 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000	6,000	-	-	
2024	-	-	-	-	
2025	6,000	-	-	6,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가금농가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가금농가 맞춤형 기금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을 통해 AI 예방과 질병 발생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00	6,000	6,000	0	0	0	6,000	0	
국비	3,000	3,000	3,000	0	0	0	3,000	0	
도비	450	0	0	0	0	0	0	0	
시비	2,550	3,000	3,000	0	0	0	3,000	0	
기타	4,000	4,000	4,000	0	0	0	4,00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 10,000,000원*1개소*60% =	6,000	

□ 예산요구 사유

- AI 등 질병검사 지원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비용 지원으로 가금질병 발생 최소화
- 가금농가 맞춤형 컨설팅, 질병 검사로 질병관리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대상농가 선정 및 컨설팅 계약 체결
 - 2026. 02. ~ 2026. 12.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착수
 - 2026. 06. : 중간 결과보고 및 중도금 지급
 - 2026. 12. : 최종 결과보고 및 잔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농가 지원
2025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농가 지원(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000	6,000	-	-	
2025	6,000	3,000	-	3,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4
-----	-----	------------	-----	----------	----	------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차량
사업규모	320대		
사업목적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정착 역학조사 등 필요시 이동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 추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7항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117	19,008	19,008	0	0	0	19,008	0	
국비	9,058	9,504	9,504	0	0	0	9,504	0	
도비	1,359	0	0	0	0	0	0	0	
시비	7,700	9,504	9,504	0	0	0	9,504	0	
기타	18,117	19,008	19,008	0	0	0	19,008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008	
차량무선 인식장치(GPS) 통신료	301-14 기타보상금	· 통신료 지원 : 9,900원*320대*12월*50%	= 19,008	

□ 예산요구 사유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전파원 중 하나인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추진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는 차량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역학조사 등 필요시 이동정보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월별 통신료 지급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축산관계시설 출입자량 GPS 통신료 2,945대 지원(연누계)
2024	축산관계시설 출입자량 GPS 통신료 3,647대 지원(연누계)
2025	축산관계시설 출입자량 GPS 통신료 2,806대 지원(연누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929	14,575		2,354	
2024	18,117	18,052	-	65	
2025	19,008	13,831	-	5,17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4
-----	-----	------------	-----	----------	----	------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구축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차량
사업규모	55대		
사업목적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으로 축산차량 운행정보 수집 및 관리 용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7항
법령 위임규정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	6,000	6,000	0	0	0	3,300	-2,700	
국비	1,200	3,000	3,000	0	0	0	1,650	-1,350	
도비	180	0	0	0	0	0	0	0	
시비	1,020	3,000	3,000	0	0	0	1,650	-1,35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300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구축	301-14 기타보상금	· 축산차량 GPS 단말기 교체 및 지원 : 60,000원*55대	= 3,3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산관련차량의 GPS 상시 전원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 발생 역학조사에 활용
- 상시전원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단말기 설치업체(검역본부 지정)에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단말기 교체대상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월별 설치비 지급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상시 전원공급 GPS 단말기 59대 설치
2024	상시 전원공급 GPS 단말기 40대 설치
2025	상시 전원공급 GPS 단말기 32대 설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	3,540		60	
2024	2,400	2,400	-	0	
2025	6,000	1,920	-	4,0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4
-----	-----	------------	-----	----------	----	------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가금농가
사업규모	15만수			
사업목적	닭진드기 예방방제 및 컨설팅 지원으로 가금농가 안정적 사양기반 구축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8,000	48,000	48,000	0	0	0	48,000	0	
국비	24,000	24,000	24,000	0	0	0	24,000	0	
도비	3,600	0	0	0	0	0	0	0	
시비	20,400	24,000	24,000	0	0	0	24,000	0	
기타	12,000	12,000	12,000	0	0	0	12,00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0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400원*150,000수*80%	= 48,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방역 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하여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및 닭 진드기를 세척, 소독 및 사후관리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2. : 대상농가 선정
 - 2026.02. ~ 2026.12. : 사업추진
 - 2026.06. : 중간 결과보고 및 중도금 지급
 - 2026.12. : 최종 결과보고 및 잔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 4농가 지원(15만수)
2024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 4농가 지원(15만수)
2025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 4농가 지원(15만수) - 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000	48,000		-	
2024	48,000	48,000		-	
2025	48,000	24,000	-	24,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4
-----	-----	------------	-----	----------	----	------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8개소(통제초소)		
사업목적	가축질병 발생 또는 발생우려 상황 시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으로 방역대책 추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3,200	390,600	390,600	0	0	0	390,600	0	
국비	201,600	195,300	195,300	0	0	0	195,300	0	
도비	30,240	0	0	0	0	0	0	0	
시비	171,360	195,300	195,300	0	0	0	195,30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0,600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거점소독소 요원 급여 : 93,840원*3명*365일 = 102,755 · 특별방역기간 거점소독소요원 증원 급여 : 93,840원*3명*180일 = 50,674 · 통제초소 요원 급여 : 93,840원*4명*60일 = 22,522 · 4대보험 : 175,951,000원*14% = 24,634		
	201-01 사무관리비	· 초소물품, 화장실, 장비 운반, 임차료 등 = 15,015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료, 수도세,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비 = 45,000		
	206-01 재료비	· 소독약 및 방역용품 구입비 = 115,000		
	401-01 시설비	· 전기 설치(철거), 거점소독소 및 초소 부대시설 공사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통해 고병원성 AI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확산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반영
일자	2025.11. 반영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연중 상시 거점소독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차단방역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운영
2024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렘피스킨 차단방역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운영
2025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렘피스킨 차단방역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0,000	432,715		17,285	
2024	403,200	360,428		42,772	
2025	390,600	265,289	-	125,31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4
-----	-----	------------	-----	----------	----	------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가금농가(산란계 5만수 이상)
사업규모	8개소(거점초소 2개소, 가금농가 통제초소 6개소)		
사업목적	5만 수 이상(상시 사육규모) 산란계 농장에 선제적 초소 6개소 및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차단방역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0,225	260,225	260,225	0	0	0	260,225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78,068	78,068	78,068	0	0	0	78,068	0	
시비	182,157	182,157	182,157	0	0	0	182,157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0,225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선제적 통제초소 근로자 급여 : 93,840원*6명*220일 · 4대보험 : 123,868,000원*14%	= =	123,869 17,342
	201-01 사무관리비	· 초소물품, 화장실, 장비 운반, 임차료 등	=	15,000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료, 수도세,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비	=	9,000
	206-01 재료비	· 소독약 및 방역용품 구입비	=	95,014

□ 예산요구 사유

- 선제적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통해 AI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확산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반영
일자	2025.11. 반영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거점소독시설 연중 운영
- 2026. 08. ~ 2026. 09. :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 대상 예비조사
- 2026. 09. : 선제적 통제초소 설치 대상 농가 위험도 평가
- 2026. 11. ~ 2027. 02. : 선제적 통제초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산란계농가 선제적 통제초소 6개소,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
2024	산란계농가 선제적 통제초소 6개소,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
2025	산란계농가 선제적 통제초소 6개소, 거점소독시설 2개소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3,556	207,525	-	76,031	
2024	260,225	202,400	-	57,825	
2025	260,225	187,768	-	72,45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4
-----	-----	------------	-----	----------	----	------

가축방역 순회소독요원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2명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축산농가 차량순회 소독 연중 실시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② 시장은 사전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7,031	45,748	45,748	0	0	0	49,212	3,464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47,031	45,748	45,748	0	0	0	49,212	3,464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9,212	
가축방역 순회소독요원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11,730원*8시간*2명*167일 = 31,343 · 주휴수당(휴일수당) : 11,730원*8시간*2명*45일 = 8,446 · 시간 외 근무수당 : 17,595원*8시간*2명*12월 = 3,379 · 4대보험료 : 43,168,000원*14% = 6,044		

□ 예산요구 사유

- 축산농가 순회 방역차량 운행 관련, 2인 1조(운전1, 소독기 조정1)운행을 위한 인원채용
-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축산농가 차량순회 소독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생활임금 증가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04. : 25년 상반기 특별방역기간 가축방역순회요원 운영
- 2025. 09. ~ 2025. 12. : 25년 하반기 특별방역기간 가축방역순회요원 운영
- 2026. 01. ~ 2026. 04. : 26년 상반기 가축방역순회요원 운영
- 2026. 09. ~ 2026. 12. : 26년 하반기 가축방역순회요원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3. 1.~4. / 2023. 9.~12. 가축방역 순회요원 2명 운영
2024	2024. 1.~4. 가축방역 순회요원 2명 운영 / 2024. 9.~12. 가축방역 순회요원 1명 운영
2025	2025. 1.~4. 가축방역 순회요원 2명 운영 / 2025. 9.~12. 가축방역 순회요원 2명 운영(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418	39,937	-	6,481	
2024	47,031	27,497	-	19,534	
2025	45,748	30,963	-	14,78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4
-----	-----	------------	-----	----------	----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사육농가
사업규모	우제류 전축종(소,돼지,염소,사슴) 74,350두		
사업목적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0,296	115,038	78,077	24,361	0	12,600	100,388	-14,650	
국비	56,260	61,006	54,706	0	0	6,300	54,152	-6,854	
도비	4,807	10,806	0	9,546	0	1,260	9,247	-1,559	
시비	19,229	43,226	23,371	14,815	0	5,040	36,989	-6,237	
기타	55,208	41,942	60,904	-24,362	0	5,400	34,626	-7,31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388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06-01 재료비	· 소규모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19,594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 80,794	

□ 예산요구 사유

- 구제역 감수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 공급
- 소(50두 미만), 돼지(1,000두 미만), 염소, 사슴 소규모농가 백신 김포시 직접 지원(100%)
- 소(50두 이상), 돼지(1,000두 이상), 전업규모농가 백신 30% 자부담 구입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전체 사육두수 변화(일부 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 감액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기본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 4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상반기)
 -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하반기)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제역 백신 83,036두분 지원
2024	·구제역 백신 74,781두분 지원
2025	·구제역 백신 52,801두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8,508	108,313	-	195	
2024	80,296	80,206	-	90	
2025	115,038	66,883	-	48,15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익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소규모농가)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우제류(소,염소) 사육농가
사업규모	소, 염소 8,200두		
사업목적	백신접종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국비, 소50두미만 소규모농, 염소 사육농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물·화학적 처리, 매물지의 관리, 매물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8,947	72,300	51,300	0	0	21,000	76,200	3,900	
국비	34,475	36,150	25,650	0	0	10,500	38,100	1,950	
도비	5,172	0	0	0	0	0	0	0	
시비	29,300	36,150	25,650	0	0	10,500	38,100	1,95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6,200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소규모농가)	301-14 기타보상금	.소 백신 접종시술비 : 6,000원 × 1,400두 × 2회 .염소 포획접종시술비 : 11,000원 × 2,700두 × 2회	= 16,800 = 59,400	

□ 예산요구 사유

- 수의사를 동원,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50두 미만 소규모 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유지를 통한 질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소 소규모농가, 염소 사육 농가 증가에 의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기본계획 수립
 - 2026.01~2026.12 :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 4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상반기)
 -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하반기)
 - 2026.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소 구제역 백신 접종기술 지원 3,243두 ·염소 포획 및 접종지원 3,523두 ·구제역 항체검사 채혈 515두
2024	·소 구제역 백신 접종기술 지원 2,660두 ·염소 포획 및 접종지원 4,233두
2025	·소 구제역 백신 접종기술 지원 3,159두 ·염소 포획 및 접종지원 4,994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5,601	56,595	-	11,445	
2024	68,947	62,523	-	6,424	
2025	72,300	72,297	-	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전업농가)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우제류(소,염소) 사육농가
사업규모	소, 염소 24,000두		
사업목적	백신접종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도비, 소50두이만 전업규모농, 염소 사육농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물·화학적 처리, 매물지의 관리, 매물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0,000	115,000	115,000	0	0	0	120,000	5,000	
국비	0	34,500	34,500	0	0	0	36,000	1,500	
도비	33,000	0	0	0	0	0	0	0	
시비	77,000	80,500	80,500	0	0	0	84,000	3,50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0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전업농가)	301-14 기타보상금	소 전업농 백신 접종시술비 : 5,000원 × 12,000두 × 2회 =	120,000	

□ 예산요구 사유

- 수의사를 동원, 50두 이상 전업 규모 소,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유지를 통한 질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기본계획 수립
 - 2026.01~2026.12 :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 4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상반기)
 -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하반기)
 - 2026.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 지원 22,000두
2024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 지원 22,000두
2025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 지원 23,000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0,000	110,000	-	-	
2024	110,000	110,000	-	-	
2025	115,000	115,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구제역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우제류 사육농장
사업규모	2,400두분		
사업목적	구제역, 럼피스킨 등 예방백신 접종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 접종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500	12,000	12,000	0	0	0	14,400	2,4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5,500	12,000	12,000	0	0	0	14,400	2,40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400	
구제역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301-14 기타보상금	· 백신 접종 시술비 : 6,000원*1,200두*2회 =	14,400	

□ 예산요구 사유

-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 접종 누락개체 방지를 위해 관내 소·염소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를 동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 지원하여 질병 발생방지와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백신 접종시술비 기준 단가 인상분 증액(5,000원/두 → 6,000원/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2026.02. : 추진계획 수립
 - 2026.04.~2026.11. : 사업집행(4월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2026.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2,320두 실시
2024	·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1,044두 실시
2025	·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1,497두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11,600	-	8,400	
2024	5,500	5,220	-	280	
2025	12,000	7,842	-	3,01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국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소, 돼지 사육농가
사업규모	40,000두		
사업목적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공급으로 백신접종 부작용 예방, 농가 백신접종률 향상 효과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물·화학적 처리, 매물지의 관리, 매물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741	16,500	16,500	0	0	0	13,200	-3,300	
국비	14,370	8,250	8,250	0	0	0	6,600	-1,650	
도비	2,155	0	0	0	0	0	0	0	
시비	12,216	8,250	8,250	0	0	0	6,600	-1,65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200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국비)	206-01 재료비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 330원 × 40,000두 =	13,200	

□ 예산요구 사유

-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이 필요하나, 백신 부작용 우려로 예방접종 기피현상 발생하여 항체가 저조 우려
- 일제접종 시기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백신 항체가 상승효과 및 농가 경제손실 최소화

□ 예산증감 사유

- 국비 감액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1. ~ 2026. 02. : 가축방역 협의회(축종별 지원약품 선정)
 - 2026. 03. ~ 2026. 04. : 사업집행
 - 2026. 04. : 상반기 일제접종 시 완화제 지원
 - 2026. 10. : 하반기 일제접종 시 완화제 지원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스트레스완화제 44,475두분 지원
2024	·스트레스완화제 87,081두분 지원
2025	·스트레스완화제 49,998두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750	14,677	-	73	
2024	28,741	28,737	-	4	
2025	16,500	16,449	-	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익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도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소, 돼지 사육농가
사업규모	45,000두		
사업목적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공급으로 백신접종 부작용 예방, 농가 백신접종률 향상 효과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물·화학적 처리, 매물지의 관리, 매물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750	23,760	23,760	0	0	0	14,850	-8,91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7,138	7,128	7,128	0	0	0	4,455	-2,673	
시비	16,612	16,632	16,632	0	0	0	10,395	-6,237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850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도비)	206-01 재료비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 330원 × 45,000두 =	14,850	

□ 예산요구 사유

-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이 필요하나, 백신 부작용 우려로 예방접종 기피현상 발생하여 항체 형성 저조 우려
- 일제접종 시기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백신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백신 항체 형성 상승효과 및 농가 경제손실 최소화
- ※ 국비 보조 동일 사업 있으나 사업량 부족으로 도비 보조사업 추가 수립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감액 내시에 따른 예산감액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1. ~ 2026. 02 : 가축방역 협의회(축종별 지원약품 선정)
 - 2026. 03. ~ 2026. 04 : 사업집행
 - 2026. 04. : 상반기 일제 접종 시 완화제 지원
 - 2026. 10. : 하반기 일제 접종 시 완화제 지원
 - 2026. 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스트레스완화제 71,945두분 지원
2024	·스트레스완화제 71,961두분 지원
2025	·스트레스완화제 71,827두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750	23,742	-	8	
2024	23,750	23,747	-	4	
2025	23,760	23,703	-	5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익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구제역 검사 채혈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소 사육 전업농가
사업규모	680두		
사업목적	구제역 농가 백신접종 확인검사를 통하여 농가 백신접종을 제고 및 질병 사전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물·화학적 처리, 매물지의 관리, 매물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730	6,800	6,800	0	0	0	6,800	0	
국비	2,020	2,040	2,040	0	0	0	2,040	0	
도비	706	0	0	0	0	0	0	0	
시비	4,004	4,760	4,760	0	0	0	4,760	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800	
구제역 검사 채혈비	301-14 기타보상금	.구제역 검사채혈 : 10,000원 × 680두	= 6,800	

□ 예산요구 사유

-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전업농 전 농가로 확대하여 농가 백신접종을 제고
- 소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 구제역 백신 항체가 검사를 위한 소 채혈 후 채혈비용을 동원된 공수의사에게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사업계획 수립
 - 2026.01~2026.12 :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후 일제검사 실시
 - 5~6월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후 검사채혈 및 비용 집행
 - 10~11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후 검사채혈 및 비용 집행
 - 2026.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2024년 신규사업)
2024	·구제역 일제검사 672두 실시
2025	·상반기 일제검사 320두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730	6,720	-	10	
2025	6,8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축산업협동조합
사업규모	2개단		
사업목적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축협 공방단을 동원하여 소독 실시 전국일제 소독의 날 소독지원으로 소독효과를 높이고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 대처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3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1,391	102,185	102,185	0	0	0	102,687	502	
국비	50,695	51,092	51,092	0	0	0	51,343	251	
도비	7,604	0	0	0	0	0	0	0	
시비	43,092	51,093	51,093	0	0	0	51,344	251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2,687	
공동방제단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동방제단 인건비(93,840원*2명*330일)	=	62,016
		· 공동방제단 운영비	=	40,671

□ 예산요구 사유

- 축사,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을 순회방문하며 상시 소독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증가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수립
 - 2026. 01. ~ 2026. 12. : 사업추진
 - 2026. 06. : 중간 결과보고 및 정산
 - 2026. 12.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김포 축산농협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 89 농가,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3개소 일제소독
2024	김포 축산농협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 76 농가,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3개소 일제소독
2025	김포 축산농협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 76 농가,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3개소 일제소독 - 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9,869	99,869		-	
2024	101,391	101,391		-	
2025	102,185	84,303	-	17,88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4
-----	-----	------------	-----	----------	----	------

가축 전염병 검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공수의사 6명, 시료배송 194회		
사업목적	- 검사시료 배송비 : 수원시 위생시험소까지 질병검사 시료를 빠르게 배송하여 방역업무 신속 대처 - 공수의사 동원수당 : 축종별 임상수의사를 방역업무 등에 활용하여 전문성 향상 및 방역효과 극대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9,760	57,000	50,000	7,000	0	0	57,000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59,760	57,000	50,000	7,000	0	0	57,00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7,000	
가축 전염병 검사	201-01 사무관리비	· 검사시료 배송비 : 60,000원*194회	= 11,640	
	301-14 기타보상금	· 공수의사 동원수당 : 126,000원*10회/월*6개월*6명	= 45,360	

□ 예산요구 사유

-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사전 질병검사 및 질병의 예찰·예방을 위한 공수의 동원실시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공수의 위촉 및 기본계획 수립
 - 2026. 1. ~ 12. : 사업집행(공수의 동원 방역활동, 시료배송비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공수의사 동원수당 33,392천원, 시료배송비 14,104천원 등 47,496천원 집행
2024	공수의사 동원수당 8,210천원, 시료배송비 12,496천원 등 20,706천원 집행
2025	공수의사 동원수당 34,158천원, 시료배송비 8,112천원 등 42,270천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1,920	47,496	-	14,424	
2024	59,760	20,706	-	39,054	
2025	57,000	42,270	-	14,7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3
-----	-----	------------	-----	----------	----	------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5,000kg		
사업목적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전파 사전 차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	10,000	10,000	0	0	0	10,000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3,000	3,000	3,000	0	0	0	3,000	0	
시비	7,000	7,000	7,000	0	0	0	7,00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401-01 시설비	.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 2,000원*5,000kg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동물용 폐의약품 주사기, 공병 등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및 업체계약
 - 2026. 02. ~ 2026. 11. : 폐의약품 수거 용역 실시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축산농가 폐의약품 6,500kg 처리
2024	축산농가 폐의약품 4,905kg 처리
2025	축산농가 폐의약품 5,000kg 처리(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000	11,570	-	1,430	
2024	10,000	8,034	-	1,966	
2025	10,000	-	-	1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4
-----	-----	------------	-----	----------	----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가금농가
사업규모	10농가		
사업목적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0,000	117,000	117,000	0	0	0	42,000	-75,000	
국비	60,000	58,500	58,500	0	0	0	21,000	-37,500	
도비	9,000	0	0	0	0	0	0	0	
시비	51,000	58,500	58,500	0	0	0	21,000	-37,500	
기타	80,000	78,000	78,000	0	0	0	28,000	-50,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000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CCTV, 소독시설, 자동목걸이 등 설치비 : 7,000,000원*10개소*60%	= 42,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방역 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하여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및 닭 진드기를 세척, 소독 및 사후관리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인프라 사업 수요 감소로 인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2. ~ 2026. 0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6. 03. ~ 2026. 11. : 사업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11농가 지원
2024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33농가 지원
2025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30농가 지원 - 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800	46,800		-	
2024	120,000	117,772		2,228	
2025	117,000	89,587	-	27,41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정현욱	전화	4314
-----	-----	------------	-----	----------	----	------

공수의사 활동 수당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동물병원
사업규모	14명(활동수당 6, 상해보험8)		
사업목적	임상수의사를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업무 등에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9,200	79,200	79,200	0	0	0	81,344	2,144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23,760	23,760	23,760	0	0	0	24,402	642	
시비	55,440	55,440	55,440	0	0	0	56,942	1,502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1,344	
공수의사 활동수당	201-01 사무관리비	· 상해보험 가입: 268,000원*8명	= 2,144	
	301-14 기타보상금	· 공수의사 활동수당: 1,100,000원*6명*12월	= 79,2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임상수의사를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업무 등에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가축질병 방역관리 강화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 공수의사 및 염소 포획 접종단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해당 인원 활동 중 안전사고 대비

□ 예산증감 사유

- 공수의사 등 활동 중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 보험비 추가로 인한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공수의 선정
 - 2026. 01. : 공수의 위촉 및 상해보험 가입
 - 2026. 01. ~ 2026. 12. : 공수의 업무 수행 및 분기별 수당 지급
 - 2025. 12. : 공수의 수행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수의사 6명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
2024	· 공수의사 6명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
2025	· 공수의사 6명 위촉 및 활동수당 3분기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9,200	77,200	-	2,000	
2024	79,200	79,200	-	-	
2025	79,000	59,400	-	19,8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3개소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축산농가에 동절기용 소독장비 지원, 가축질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1항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0	40,000	40,000	0	0	0	30,000	-10,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9,000	12,000	12,000	0	0	0	9,000	-3,000	
시비	21,000	28,000	28,000	0	0	0	21,000	-7,000	
기타	30,000	40,000	40,000	0	0	0	30,000	-10,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차단방역시설: 20,000,000원*3개소*50% = 30,000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산농장 내 소독시설 확보 및 개선을 통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기여
-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터널식, 이동식, 고정식, 대인소독기) 설치 및 기존 소독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감소(4개소 → 3개소)로 인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6. 01. ~ 02.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신청 접수
 - 2026. 02. ~ 03.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및 통보
 - 2026. 04. ~ 11. : 사업 집행
 - 2026. 11. ~ 12.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장 20개소 소독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2024	· 농장 16개소 소독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2025	· 농장 21개소 소독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29,150	-	850	
2024	30,000	19,000	-	11,000	
2025	40,000	34,000	-	6,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3
-----	-----	------------	-----	----------	----	------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 방역시설·장비(창고, 방역차량 등) 운영 및 가축방역 영상회의 운영 외		
사업목적	평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4,530	167,186	164,530	0	0	2,656	183,430	16,244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164,530	167,186	164,530	0	0	2,656	183,430	16,244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3,430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상황실 운영 급량비 : 8,000원*2명*90일 = 1,440 · 장비임차료 : 100,000원*10회 = 1,000 · 방역초소 운영·홍보 물품 구입 : 50,000원*40개 = 2,000 ·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 : 100,000원*3명 = 300		
	201-02 공공운영비	· 방역창고·초소 유지관리비(공과금 등) : 100,000*12개월 = 1,200 · 가축방역차량 유류비 : 300,000원*7대*12월 = 25,200 · 가축방역차량, 드론 수리비 : 260,750원*10대*12회 = 31,290 · 관용차량 GPS 통신비 : 5,000원*10대*12월 = 600 · 드론 배상책임보험 가입 : 600,000원/년*3대 = 1,800		
	206-01 재료비	· 방역약품 구입 : 25,000원*3,200kg = 80,000 · 방역복 구입 : 5,000원*2,000벌 = 10,000 · 방역 실시재료 구입(간이키트 등) : 100,000원*100종 = 1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방역상황실 영상회의의 장비 구입 : 18,600,000원*1식 = 18,600		

□ 예산요구 사유

- 재난성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상황실 운영 등 방역활동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방역팀 현업근로자 3인 특수건강진단비 추가
- 가축방역상황실 영상회의 장비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중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 기본 방역대책 수립
 - 2026. 01. ~ 12. : 방역활동(상황실 운영, 방역초소 설치 등)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상황실 운영 급량비, 장비임차료 등 : 3,583천원 · 창고 및 방역차량 유지관리 : 48,800천원 · 방역약품 구입 : 103,110천원 · 가축방역 차량 구입 : 32,643천원
2024	· 상황실 운영 급량비, 장비임차료 등 : 4,212천원 · 창고 및 방역차량 유지관리 : 41,808천원 · 방역약품 구입 : 109,256천원
2025	· 상황실 운영 급량비, 장비임차료 등 : 12,096천원 · 창고 및 방역차량 유지관리 : 35,000천원 · 방역약품 구입 : 90,83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8,290	188,136	-	10,154	
2024	164,530	155,276	-	9,254	
2025	167,186	137,926	-	29,2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농업7급 정현욱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2 4314 4313
-----	-----	------------	-----	----------------------------------	----	----------------------

전염병 감염축 처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2두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 등의 신속한 랜더링처리(열처리 폐기)로 전염병 확산 차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② 시장은 사전 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550	7,500	4,500	0	0	3,000	4,500	-3,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5,550	7,500	4,500	0	0	3,000	4,500	-3,00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00	
전염병 감염축 처리	201-01 사무관리비	· 소 랜더링 처리 : 346,150원*13두 =	4,500	

□ 예산요구 사유

- 2종 가축전염병, 살처분, 단순 검진 중 폐사된 가축의 효율적 처리(랜더링)를 통해 매몰지 생성 지양 등 환경오염과 전염병 전파 예방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관련 오염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정육 등) 폐기 시 친환경적 랜더링 처리로 신속한 전염병 전파인자 차단 및 환경오염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ASF 역학관련 축산물 폐기처리로 일시적 증가로 파악되어, '25년 본예산 수준으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연중 사업집행(전염병 발생 시 용역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ASF 발생 역학관련 축산물 랜더링 1개소
2024	· ASF 발생 역학관련 축산물 랜더링 2개소 · 구제역 백신 접종후 폐사 소 랜더링 1두
2025	· ASF 발생 역학관련 축산물 랜더링 1개소 · 구제역 백신 접종후 폐사 소 랜더링 8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50	3,824	-	226	
2024	5,550	5,342	-	208	
2025	7,500	6,951	-	54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공중방역수의사 1명		
사업목적	김포시 배치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여건 개선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7호)		8. 보수 및 후생복지
	가. 보수·여비		
	(5) 기타		
	사·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		
법령 위임규정	다. 거주편의 제공		
	검역본부장, 사·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320	2,000	5,200	0	0	-3,200	4,000	2,0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7,320	2,000	5,200	0	0	-3,200	4,000	2,000	
기타	0	0	0	0	0	0	0	0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	
공중방역 수의사 후생복지	201-01 사무관리비	·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비 : 400,000원*1명*9월 · 공중방역수의사 피복비 : 400,000원*1명	= 3,600 = 400	

- 공중방역수의사 안정적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 공중방역수의사 농장출입 전용 피복 사용으로 축산과 사무실 등 전염병 오염인자 차단

- 2026 배치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기반 예산 수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추진계획 수립
 - 2025. 01. ~ 2025. 12. : 주거지원비 및 피복비 집행
 - 2025. 06. ~ 2025. 12. : 상·하반기 공중방역수익사 복무실태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중방역수익사 피복비 및 주거지원비 2명 지급
2024	· 공중방역수익사 피복비 및 주거지원비 1명 지급
2025	· 공중방역수익사 피복비 및 주거지원비 1명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400	9,336	-	64	
2024	7,320	6,475	-	845	
2025	2,000	2,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익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양봉 사육농가
사업규모	10,495군		
사업목적	꿀벌 질병별 구제약품 지원을 통한 전염병 발생 방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000	14,000	14,000	0	0	0	12,710	-1,290	
국비	9,800	9,800	9,800	0	0	0	8,897	-903	
도비	629	0	0	0	0	0	0	0	
시비	3,571	4,200	4,200	0	0	0	3,813	-387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710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지원	206-1 재료비	· 꿀벌 응애류 예방약 : 1,250원*5,232군 = 6,540 · 꿀벌 노제마 예방약 : 1,080원*3,380군 = 3,650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 : 1,338원*1,883군 = 2,520		

□ 예산요구 사유

- 꿀벌에서 문제가 되는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3종 예방약품 지원으로 양봉 농가 전염병 발생으로부터 보호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감소(11,429군 → 10,495군)로 인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1. ~ 2026. 02. : 가축방역협의회(지원약품 선정)
 - 2026. 03. ~ 2026. 04. : 사업집행
 - 2026. 04. : 양봉약품 배부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양봉약품 11,429군분 지원
2025	· 양봉약품 11,429군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4,000	13,952	-	48	
2025	14,000	13,985	-	1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공중방역수의사 홍인표	전화	4318
-----	-----	------------	-----	-------------	----	------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소 소규모농가 접종 시술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소 사육농가
사업규모	김포시 소 사육 소규모(50두 미만)농가 1,585두		
사업목적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백신 일제접종에 고령/영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접종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물·화학적 처리, 매물지의 관리, 매물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820	29,604	29,604	0	0	0	9,510	-20,094	
국비	4,910	14,802	14,802	0	0	0	4,755	-10,047	
도비	737	0	0	0	0	0	0	0	
시비	4,173	14,802	14,802	0	0	0	4,755	-10,047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510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소 소규모농가 접종 시술비)	301-14 기타보상금	· 럼피스킨 백신 접종시술비 : 1,585두*6,000원 =	9,510	

□ 예산요구 사유

- 질병 유입 차단 전국 백신 일제접종 접종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 보조사업 내시 (50두 미만 소규모농가 대상 수의사 접종지원하고 접종 수의사에 6,000원/두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백신접종 대상 축소(50두 이하 소규모+노령·취약 농장주) → 50두 이하 소규모
※ 럼피스킨 질병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병종 조정(법1종 → 법2종)에 따른 조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4. :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소규모/취약농가 수의사 백신접종 지원)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2024년 신규사업)
2024	·소 소규모 및 취약농가 럼피스킨 백신 수의사 접종지원 1,353두
2025	·소 소규모 및 취약농가 럼피스킨 백신 수의사 접종지원 4,835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9,820	6,765	-	3,055	
2025	29,604	29,010	-	59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가금 사육농가
사업규모	전업 가금 사육농가 42개소		
사업목적	검사강화에 따른 시료채취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 가축방역관 수의사 활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5,800	0	5,800	0	0	5,800	0	
국비	0	2,900	0	2,900	0	0	2,90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0	2,900	0	2,900	0	0	2,90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800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시료채취비용 : 25,390원*4시간*4명*12회 · 출장여비 : 20,000원*4명*12회	= 4,840 = 960	

□ 예산요구 사유

- AI 신속 검사를 위하여 공수의사 등 수의사를 동원하여 검사업무 협업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국비 내시에 따라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2026.02. : 동물위생시험소 및 방역본부 협의 후 시료채취 일정 수립
 - 2026.02.~2026.12. : 민간수의사 시료채취 추진 및 비용 지급
 - 2026.12.~2027.02. : 사업 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가금 사육농가 임상예찰 및 시료채취 활동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5,800	-	-	5,8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3
-----	-----	------------	-----	----------	----	------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소귀표 부착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소 사육농가
사업규모	2,680두		
사업목적	출생한 소의 귀표 부착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사육단계 이력 관리 안정화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 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304	27,840	27,840	0	0	0	28,408	568	
국비	13,152	13,920	13,920	0	0	0	14,204	284	
도비	1,973	0	0	0	0	0	0	0	
시비	11,179	13,920	13,920	0	0	0	14,204	284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8,408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소귀표 부착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소귀표 부착지원비 : 10,600원*2,680두	= 28,408	

□ 예산요구 사유

-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로 사회적 안전망 확보 필요
- 개체별, 단계별 이력 관리로 이상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단계별 추적 조치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송아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증액 [증 54두(2,626두 → 2,680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사업 추진(분기별 집행)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소귀표 지원 2,800두
2024	· 소귀표 지원 2,623두
2025	· 소귀표 지원 2,246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880	26,880	-	-	
2024	26,304	25,181	-	1,123	
2025	27,840	23,808	-	4,03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9급 유진호	전화	4325
-----	-----	------------	-----	----------	----	------

먹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대형 마트(5개소)
사업규모	50건			
사업목적	관내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제5호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축산물의 브랜드(“금빛나루”포함)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	1,571	1,571	0	0	0	1,570	-1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2,000	1,571	1,571	0	0	0	1,570	-1	
시비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70	
먹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 지원	206-01 재료비	· 축산물 안전성 시료 수거비 : 31,400원*50건	= 1,570	

□ 예산요구 사유

- 축산물(소, 돼지, 달걀) 잔류물질 안전성 검사를 통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예산 감액 (1,571천원 → 1,57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사업 추진(분기별 수거)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료 수거 100건
2024	· 시료 수거 100건
2025	· 시료 수거 3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	1,994	-	6	
2024	2,000	1,884	-	116	
2025	1,571	1,135	-	43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농업6급 강남선	전화	4323
-----	-----	------------	-----	----------	----	------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무항생제 인증 축산농가
사업규모	20개소		
사업목적	축산농가 무항생제 인증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 도모 및 경쟁력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5호, 제6호, 제13호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축산물의 브랜드("금빛나루"포함)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700	14,700	10,780	3,920	0	0	9,800	-4,9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7,200	7,200	5,280	1,920	0	0	4,900	-2,300	
시비	7,500	7,500	5,500	2,000	0	0	4,900	-2,600	
기타	6,300	6,300	4,620	1,680	0	0	4,200	-2,1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800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301-14 기타보상금	· 무항생제 인증비 : 490,000원*20개소	= 9,800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 확대 및 G마크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무항생제 인증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무항생제 축산농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감 10개소(30개소 → 20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무항생제 축산농가 22개소 지원
2024	· 무항생제 축산농가 30개소 지원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780	10,511	-	269	
2024	14,700	14,339	-	361	
2025	14,700	-	-	14,7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농업6급 강남선	전화	4323
-----	-----	------------	-----	----------	----	------

유실·유기 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1대		
사업목적	유실·유기 동물 포획차량의 유지관리로 민원의 신속·효율적 대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6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위 부서를 차량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000	9,024	7,000	0	1,000	1,024	9,024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7,000	9,024	7,000	0	1,000	1,024	9,024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24	
유실·유기 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차량유지관리비 : 9,024,000원*1대(82루2653)	= 9,024	

□ 예산요구 사유

- 유실·유기 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효율적 민원 처리에 필요한 포획차량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 추진(연중 계속)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유실·유기 동물 포획차량 유류비 및 점검·수리 등 운영·관리 [100% 집행 완료]
2024	유실·유기 동물 포획차량 유류비 및 점검·수리 등 운영·관리 [100% 집행 완료]
2025	유실·유기 동물 포획차량 유류비 및 점검·수리 등 운영·관리 [82%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000	7,000	-	-	
2024	7,000	7,000	-	-	
2025	9,024	7,374	-	1,6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동물보호관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660마리		
사업목적	유실·유기 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동물보호의식 고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제36조제3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4,000	198,000	198,000	0	0	0	181,800	-16,2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52,200	59,400	59,400	0	0	0	54,540	-4,860	
시비	121,800	138,600	138,600	0	0	0	127,260	-11,34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1,800	
동물보호관리	301-14 기타보상금	·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관리 : 150,000*1,100마리 ·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 30,000원*560마리	= 165,000 = 16,800	

□ 예산요구 사유

- 유실·유기 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구조 등을 통한 상해 및 위협 등 안전사고 예방
-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의약품 등 백신, 탈취·소독제 등)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 및 인식개선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환경개선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감 540마리(1,100마리 → 560마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계약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유기동물 구조 보호 1,035마리
2024	· 유기동물 구조 보호 939마리
2025	· 유기동물 구조 보호 752마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1,000	168,857	-	32,143	
2024	174,000	160,078	-	13,922	
2025	198,000	109,688	-	88,31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동물보호관리(자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유실·유기 동물 포획·구조 소모품 구입 등		
사업목적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유실·유기 동물의 포획 및 구조 물품 구입을 통한 효율적 대처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② 시장은 동물보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700	12,400	11,900	0	500	0	9,100	-3,3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7,700	12,400	11,900	0	500	0	9,100	-3,30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100	
동물보호관리 (자체)	201-01 사무관리비	· 동물보호관리 홍보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 4,000,000원 = 4,000 · 유기동물 포획 장비(틀, 트랙 등) 구입 : 700,000원*3개 = 2,100 · 유기동물 포획·구조 안전 장구 및 소모품 구입 : 2,200,000원 = 2,200		
	201-02 공공운영비	· 동물보호관리 업무용 핸드폰 통신비 : 40,000원*2대*10개월 = 800		

□ 예산요구 사유

- 동물보호 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과 시민을 위협하는 유실·유기(들개)동물을 신속하게 포획·구조할 수 있는 포획요원의 안전 장구와 소모품 구입으로 민원 사전 예방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예산팀 조정에 따른 홍보물 및 안전 장구 소모품 구입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 추진(연중 계속)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유기동물 포획 틀(4개), 바디캠(3대), 유기 동물 포획용 미끼 구입 및 동물보호 홍보물 등 제작 [100% 집행 완료]
2024	· 들개출몰 주의·동물학대 금지 홍보 현수막 제작 · 유기동물 포획 틀(4개), 유기 동물 포획용 미끼 등 구입 [100% 집행 완료]
2025	· 동물보호법 관련 팻티켓 홍보 포스터 및 동물 유기 금지 현수막 제작 · 유기동물 포획용 도구(그물망 2개, 캔넬 4개 등) 및 포획요원 안전 장비(안전화 등) 구입 · 유기동물 포획반 업무용 핸드폰 통신비 지급 [75%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375	8,375	-	-	
2024	7,700	7,700	-	-	
2025	12,400	9,295	-	3,1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900마리			
사업목적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도심지나 주택가 내 고양이 개체 수 조절로 지역주민 간 갈등 등 민원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제36조제3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0,000	180,000	180,000	0	0	0	180,000	0	
국비	44,000	36,000	36,000	0	0	0	36,000	0	
도비	26,400	21,600	21,600	0	0	0	21,600	0	
시비	149,600	122,400	122,400	0	0	0	122,40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00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 200,000원*900마리	= 180,000	

□ 예산요구 사유

- 주거지역 내 길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 관련 민원 발생
- 중성화수술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위탁 동물병원 지정 및 계약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중성화 지원 1,100마리
2024	· 중성화 지원 1,100마리
2025	· 중성화 지원 719마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0,000	220,000	-	-	
2024	220,000	220,000	-	-	
2025	180,000	143,800	-	36,2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25마리		
사업목적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7,800	39,600	39,600	0	0	0	45,000	5,400	
국비	8,400	8,800	8,800	0	0	0	10,000	1,20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29,400	30,800	30,800	0	0	0	35,000	4,200	
기타	4,200	4,400	4,400	0	0	0	5,000	6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000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 400,000원*125마리*90%	= 45,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지역 내 실외사육견 및 사설 동물보호소의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 및 제반 비용
- 유기견과 실외사육견 간의 번식 방지를 위한 중성화수술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규모 확대 [증 15두(110마리 → 125마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02. : 위탁 동물병원 공고 및 선정
 - 2026. 02. ~ 2026. 12. : 읍·면·동 홍보, 접수 및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중성화 지원 116마리[암 88, 수 28]
2024	· 중성화 지원 125마리[암 98, 수 27]
2025	· 중성화 지원 132마리[암 96, 수 3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0	35,235	-	765	
2024	37,800	37,800	-	0	
2025	39,600	39,510	-	9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축산과
사업규모	2명		
사업목적	유실·유기 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구조 등 민원 처리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8,000	44,000	44,000	0	0	0	44,000	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14,400	13,200	13,200	0	0	0	13,200	0	
시비	33,600	30,800	30,800	0	0	0	30,800	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4,000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동물 구조 등 인건비 : 2,750,000원*2명*8개월	= 44,000	

□ 예산요구 사유

- 신속한 동물 구조·반환과 효율적인 동물보호 행정업무 향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 필요
- 개 물림, 위협 등 사고 예방 목적으로 동물관리 지도·단속 인력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및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2026. 01. ~ 2026. 08. :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명 채용 및 근무 (유기견 356마리 포획)
2024	· 2명 채용 및 근무 (유기견 501마리 포획)
2025	· 2명 채용 및 근무 (유기견 480마리 포획)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000	47,165	-	835	
2024	48,000	47,645	-	355	
2025	44,000	42,115	-	1,88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유실·유기 동물(야생 들개) 전문 구조 및 포획반 운영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2명, 1식		
사업목적	야산·공원·거주지역 등 인근에 서식하는 유기견(들개)으로부터의 위협·상해 등 각종 피해 민원의 사전예방 및 안전한 반려문화 도시 조성과 포획요원의 현장 업무상의 피해보상 및 안전사고 대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 제2항 /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해당조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제15조제6호
		② 시장은 동물보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유실·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관리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289	47,945	48,968	0	0	-1,023	61,962	14,017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22,289	47,945	48,968	0	0	-1,023	61,962	14,017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1,962	
유실·유기 동물 (야생 들개) 전문 구조 및 포획반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유실·유기 동물(야생 들개) 전문구조 및 포획반 인건비 = 60,962 - 기본급 : 11,730원*8시간*2명*212일 = 39,789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2명*45일 = 8,446 - 출장여비 : 10,000원*2명*212일 = 4,240 - 명절휴가비 : 500,000원*2명 = 1,000 · 포획반 4대 보험료 : 53,475,000원*14% = 7,487		
	201-02 공공운영비	· 유실·유기 동물 포획반 상해보험료 : 1,000,000원 = 1,000		

□ 예산요구 사유

- 유실·유기 동물 증가로 인한 김포시민 상해·위협 등 민원 증가
- 개 물림, 파상풍, 공수병 등 야산 및 풀숲이 우거진 곳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포획요원 상해보험 가입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 ~ 3월경 야생 들개의 신규 출생으로 개체 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획 기간 [8개월→10개월] 연장 필요에 따른 예산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추진계획 수립 및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 2026. 03.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유실·유기 동물(야생 들개) 포획 실적(자체) : 501마리
2025	· 유실·유기 동물(야생 들개) 포획 실적(자체) : 480마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2,289	21,492	-	797	
2025	47,945	31,947	-	15,99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개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5개소		
사업목적		개식용농가 폐업 지원을 통한 개식용 조기 종식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503,120	0	0	1,503,120	0	1,400,000	-103,120	
국비	0	751,560	0	0	751,560	0	700,000	-51,560	
도비	0	225,468	0	0	225,468	0	630,000	404,532	
시비	0	526,092	0	0	526,092	0	70,000	-456,092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000	
개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4구간 폐업 농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50%(4개소) : 375,000원 * 1,150두 * 50% · 2구간 폐업 농가폐업이행촉진지원금 부족분 : 1,184,375,000원	= 215,625 = 1,184,375	

□ 예산요구 사유

- 개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을 통한 개식육 조기 종식 도모
- 폐업 및 전업 개사육농가 대상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철거 대행 등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2025. 10. : 개 사육 농가 25개소 중 21개소 폐업 완료

- 2025. 2 ~ 2025. 12.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감정평가 실시, 철거 등 농가 지원

- 2026. 1. ~ 2026. 12. : 잔여 개사육 농가(4개소) 지원신청서 접수 및 농가 지원 지속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 831,300천원(1구간 6개소) · 시설물 등 잔존가액 평가 실시 : 2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503,120	831,300	-	671,8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7급 황재하	전화	4324
-----	-----	------------	-----	----------	----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1개소		
사업목적	안정적인 먹이 공급으로 주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효율적 처리 및 위생적 관리 등에 의한 민원 감소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5,500	5,5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1,650	1,650	
시비	0	0	0	0	0	0	3,850	3,850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00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206-01 재료비	·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비 : 400,000원*11개소	= 4,400	
		· 급식소 안내 팻말 제작비 : 100,000원*11개소	= 1,100	

□ 예산요구 사유

- 동절기 공동주택 및 주택가 차량 훼손 최소화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
- 청결하고 위생적인 급식소 공급을 통해 공원, 공동주택, 주택가 등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소 정리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추진계획 수립
 - 2026. 01. ~ 2026. 12. :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농업진흥과
요 구 액	583,76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73,244	140,016	140,016		70,013	-70,003	
기타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	72,947	70,000	70,000		70,000	0	
기타이자수입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 수입 등	297	70,016	70,016		13	-70,003	25' 농기계 임대 사용료 통계목 중복 작성으로 감액 편성
임시적세외수입	18,792	10,100	10,100		10,110	10	
불용품매각대금 ◎불용품매각대금	0	10,000	10,000		10,000	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433	0	0		10	10	
그외수입 ◎그외수입	13,359	100	100		100	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3,684	2,901	2,901		20	-2,88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18	502	502		10	-492	26' 추경 시 증액 예정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3,566	2,399	2,399		10	-2,389	26' 추경 시 증액 예정

김포 농업 대축제

사업기간	2026. 10. ~ 12.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인 시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농업인 학습단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임규정	제4조의2 2항	
	해당조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4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0	70,000	70,000	0	0	0	80,000	1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0	70,000	70,000				80,000	1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0	
김포 농업 대축제	201-03 행사운영비	· 김포농업 대축제(농업인의 날, 인삼축제 등) 행사 운영 : 77,000,000원	= 77,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농업인의 날 평가회 등 참가 보상금: 100,000원*30명	= 3,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행사 추진
- 농업 관련 통합 행사 추진으로 농업인과 시민 간의 소통 시간,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 농업인 판로 지원 및 마케팅·홍보 지원 등

□ 예산증감 사유

- 김포농업 대축제 통합운영 및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9. : 기본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6. 9. ~ 11. : 농업인의 날 기념 김포농업 대축제 행사 준비 등
 - 2026. 11. : 농업인의 날 기념 김포농업 대축제 행사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 김포농업 대축제 - 기 간 : 2023. 10. 28.(토) ~ 29.(일), 2일간 - 장 소 : 사우문화 체육광장 - 인 원 : 5,000명(단체장, 농업인단체장, 수상자, 관람객 등) - 내 용 : 기념식, 우수농업인 시상, 부대행사, 시민참여 공연 및 체험 등
2024	·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 김포농업 대축제 - 기 간 : 2024. 11. 2.(토) ~ 3.(일), 2일간 - 장 소 : 사우문화 체육광장 - 인 원 : 2,000명(단체장, 농업인단체장, 수상자, 시민 등) - 내 용 : 기념식, 우수농업인 시상, 부대행사, 우수농산물 전시·판매, 시민참여 공연 및 체험 등
2025	·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 김포농업 대축제(예정) - 기 간 : 2025. 11. 1.(토) ~ 2.(일), 2일간 - 장 소 : 사우문화 체육광장 - 내 용 : 기념식, 우수농업인 시상, 우수농산물 전시·판매, 시민참여 공연 및 체험, 기부행사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000	46,575	-	1,425	
2024	50,000	48,134	-	1,866	
2025	70,000	6,299	-	63,70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전화	4331
-----	-------	------------	-----	------------	----	------

농업기술 공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촌지도업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김포농업에 대한 관심 고조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3호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60	2,960	2,960	0	0	0	2,960	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960	2,960	2,960				2,96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60	
농업기술 공보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서적 및 자료집 구입 : 400,000원	= 400	
		· 농업간행물 정기구독 : 20,000원*2종*12개월	= 480	
		· 농업인 성인지 교육 홍보자료 제작 : 900,000원	= 900	
	201-02 공공운영비	· 농업기술지 발송 우편료 : 130,000원*6개월	= 780	
		· 공보장비 유지 운영 : 100,000원*4종	= 400	

□ 예산요구 사유

- 최신 농업 정보(농업기술지) 발송으로 농업인들에게 신속한 농업 정보 공급
- 농업인, 소비자 등 맞춤형 농업 동향 및 최신 정보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2. ~ 11. : 사업진행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간행물 정기 구독 . 공보장비 유지 및 운영 . 농업기술지 발송 : 148명/월 . 홈페이지 및 SNS 유지
2024	. 간행물 정기 구독 . 공보장비 유지 및 운영 . 농업기술지 발송 : 148명/2월 . 홈페이지 및 SNS 유지
2025	. 간행물 정기 구독 . 농업기술지 발송 : 121명/2월 . 농촌지도업무 활성화를 위한 서적 구입 . 농업인 성인지 교육 홍보자료 제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60	2,964	-	96	
2024	2,960	2,810	-	150	
2025	2,960	1,806	-	1,15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백종우	전화	4334
-----	-------	------------	-----	-----------	----	------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1로 83번길 50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김포농경유물의 전시 및 홍보로 농업가치보존 및 농경문화정체성 확립의 교육장 활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농촌진흥법	제2조 4호
	위임규정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5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348	6,748	6,748	0	0	0	6,748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348	6,748	6,748				6,748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748	
토탄농경 유물전시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운영 : 1,000,000원 · 무인경비 시스템 : 154,000원*12월 · 토탄농경유물전시관 홍보물 제작 : 1,500,000원*1종	= 1,000 = 1,848 = 1,500	
	201-02 공공운영비	· 시설장비 유지비 : 200,000원*12월	= 2,400	

□ 예산요구 사유

- 토탄농경유물전시관의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건물 보수 유지비가 필요함
- 토탄농경유물전시관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홍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1. ~ 12. :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운영
 - 2026. 4. ~ 10. : 건물 유지보수 및 홍보물 제작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시현황 : 용두레 등 114종 201점 - 제1전시관 : 벼농사 및 토탄생성 과정 등 - 제2전시관 : 발농사 농경유물 및 민속예술유물 등 . 방문객 현황 : 480명
2024	. 전시현황 : 용두레 등 114종 201점 - 제1전시관 : 벼농사 및 토탄생성 과정 등 - 제2전시관 : 발농사 농경유물 및 민속예술유물 등 . 방문객 현황 : 333명
2025	. 전시현황 : 용두레 등 114종 201점 - 제1전시관 : 벼농사 및 토탄생성 과정 등 - 제2전시관 : 발농사 농경유물 및 민속예술유물 등 . 방문객 현황 : 195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148	4,136	-	12	
2024	5,348	5,347		1	
2025	6,748	6,137	-	61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기계팀장 정성민	담당자	공업7급 김기현	전화	4335
-----	-------	-----------	-----	----------	----	------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김포농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 인력 양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4호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0	18,000	18,000	0	0	0	27,000	9,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0	18,000	18,000				27,000	9,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0	
농업인 단체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 교육: 1,000,000원*11개소	= 11,000	
		· 농촌지도자 공동답 운영(모내기, 벼 베기 등): 500,000원*3회	= 1,500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한마음 수련대회: 11,500,000원	= 11,500	
		· 생활개선김포시연합회 한마음 수련대회: 3,000,000원	= 3,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군농업의 핵심단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양 및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추진
- 탄소중립, 친환경농업 실천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전문농업인력 양성

□ 예산증감 사유

- 생활개선 전문인력양성 세부 사업 예산액을 농업인 단체 육성에 반영하여 예산 증액
- ※ 기존 생활개선 전문인력양성 세부 사업은 삭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12. :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신기술교육 및 컨설팅, 현장교육 등: 5회 153명 · 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공동답 운영: 1개소 · 김포시 농업 풍년기원제 행사 추진: 1회 100명 · 2023년 한국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한마음 수련대회 - 일 시: 2023. 9. 20.(수) ~ 21.(목) - 장 소: 경기도 여주, 강원도 동해 일원 - 인 원: 101명 - 주요내용: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대회 참석, 우수사례 견학, 시상 등
2024	· 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공동답 모내기 및 역량강화 교육 : 1회 100명
2025	·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신기술교육 및 컨설팅, 현장교육 등: 6회 140명 · 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공동답 운영: 1개소 · 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농업인 안전 교육: 1회 37명 · 김포시 농업 풍년기원제 행사 추진: 1회 100명 · 시민과 함께하는 김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4회 60팀 · 2025년 한국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한마음 수련대회 - 일 시: 2025. 9. 4.(목) ~ 5.(금), 2일간 - 장 소: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평창시 및 정선군 일원 - 주요내용: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대회 참석, 우수사례 견학, 시상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600	33,247	-	1,353	
2024	600	600	-	-	
2025	18,000	13,424	-	4,57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전찬영	전화	4332
-----	-------	------------	-----	-----------	----	------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품목 중심의 중장기 전문농업기술교육 설계 등 맞춤형 교육 실시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21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000	16,000	16,000	0	0	0	14,000	-2,000	
국비	8,000	8,000	8,000				7,000	-1,000	
도비	4,000	4,000	4,000				3,500	-500	
시비	4,000	4,000	4,000				3,500	-500	
기타		0						0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0	
농업기술 전문교육	201-03 행사운영비	· 전문농업기술교육 강사비 : 500,000원*20회 · 교육 운영비 : 1,250,000원*2과정 · 교재 제작비 : 30,000원*50부	= 10,000 = 2,500 = 1,5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품목 중심 중장기 전문농업기술 교육의 필요성 증가
- 농업인 교육을 기술수준별, 특성별 과정으로 운영하여 품목별 농업 전문가 양성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예산 감액에 따른 감액 조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1. ~ 11. : 전문농업·기초영농기술 교육 운영
 - 2026. 11. ~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 간 : 2023. 1. ~ 12.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및 현장, 드론 실습 현장 등 • 사업내용 : 농업기술 전문교육(농업용 드론 교육) 등 • 교육과정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자격증교육(1종), 드론 일반이론, 농업관련 기초교육 등 • 교육인원 : 15명
2024	• 기 간 : 2024. 1. ~ 12.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및 현장, 선진농가 등 • 사업내용 : 농업기술 전문교육(포도 다품종 재배기술 교육) 등 • 교육과정 : 포도 다품종 재배기술 이론 및 실습, 선진지 현지견학 등 • 교육인원 : 48명
2025	• 기 간 : 2025. 1. ~ 12.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및 현장, 선진농가 등 • 사업내용 : 2개 과정(유색포도 재배기술 교육, 농업인 AI 활용교육) • 교육과정 : 유색포도 재배기술 이론 및 실습 교육, 농업인 생성형 AI 활용 실습교육, 현장견학 등 • 교육인원 : 5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000	17,990	-	10	
2024	16,000	15,878	-	122	
2025	16,000	10,302	-	5,69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호윤	전화	4342
-----	-------	------------	-----	-----------	----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지원사업(기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시군별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기농업 미래선도 지역농업현안 및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전문가로서 활동 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21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	3,000	3,000	0	0	0	3,000	0	
국비		0						0	
도비	900	900	900				900	0	
시비	2,100	2,100	2,100				2,1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경기도농업 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사업 (기금)	201-03 행사운영비	· 과제활동 운영 : 678,000원*4회	= 2,712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과제활동 급식비 : 9,000원*16명*2회	= 288	

□ 예산요구 사유

- 농업인 세대 교체기를 맞아 전문경영인의 경력, 기술 역량강화교육 및 벤치마킹
- 지역 기반 농산물 생산 및 수입 창출의 사례 형성을 통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 계획 수립
 - 2026. 2. ~ 12.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선진농업 현장견학 : 1회 16명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교육 : 1회 26명
2024	· 선진농업 현장견학 : 1회 16명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현장 워크숍 : 1회 2명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교육 : 1회 24명
2025	· 선진지 현장견학 : 2회 34명 ·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교육 : 1회 1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	2,860	-	140	
2024	3,000	2,784	-	216	
2025	3,000	2,944	-	5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백종우	전화	4334
-----	-------	------------	-----	-----------	----	------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전문적이고 특화된 김포 맞춤형 특별 농업교육과정 운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4호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5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618	30,030	30,030	0	0	0	45,800	15,77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2,618	30,030	30,030				45,800	15,7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800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정수기 임차료 : 70,000원*12개월 · 공기청정기 임차료 : 56,000원*5대*12개월 · 수용비 등 : 3,365,000원	= 840 = 3,360 = 3,365	
	201-02 공공운영비	· 강의실 시설 유지비 : 1,000,000원*2실 · 인터넷 사용료 : 200,000원*12개월	= 2,000 = 2,400	
	201-03 행사운영비	· 강사비 : 500,000원*24회	= 12,000	
		· 교재비 : 15,000원*80명*8개월	= 9,600	
		· 실습비 : 5,035,000원	= 5,035	
		· 현장견학비(임차료, 입장료 등) : 1,400,000원*3개과*1회 · 운영비 : 1,000,000원*3개과	= 4,200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농업 발전을 이끌 핵심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엘리트농업대학의 원활한 운영
- 교육 운영을 위한 교재 제작 및 구입, 교육 재료 구입, 강의 대금 등의 필수 운영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예산 감액으로 인해 교육횟수 축소(35회→25회), 현장견학 축소(2회→1회) 되었고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등 필수 경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교육의 질 저하. 기존대로 현실화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12. : 기본계획수립
 - 2025. 12. ~ 2026. 2. : 농업대학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수강생 모집
 - 2026. 3. ~ 11. : 농업대학 운영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 간: 2023. 3. ~ 12. • 장 소: 농업기술센터 • 교육방식: 대면 강의 • 인 원: 2개과 80명(과정명 : 가공창업, 작물재배) • 재학인원(%): 60명(75%)
2024	• 기 간: 2024. 4. ~ 11. • 장 소: 농업기술센터 • 교육방식: 대면 강의 • 인 원: 3개과 120명(과정명 : 스마트농업, 융복합농업, 작물재배) • 재학인원(%): 94명(84%)
2025	• 기 간: 2025. 4. ~ 11. • 장 소: 농업기술센터 • 교육방식: 대면 강의 • 인 원: 3개과 120명(과정명 : 스마트농업, 융복합농업, 작물재배) • 재학인원(%): 81명(79%)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843	64,308	-	534	
2024	32,618	31,840	-	778	
2025	30,030	27,134	-	2,89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호윤	전화	4342
-----	-------	------------	-----	-----------	----	------

농업인 실용교육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새로운 영농핵심기술·정보·유통 및 마케팅, 농업경영 교육 등으로 농업인에게 영농수행 목표와 비전제시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4호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5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990	13,990	13,990	0	0	0	18,430	4,4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990	13,990	13,990				18,430	4,4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430	
농업인 실용교육	201-03 행사운영비	· 교재 제작비 : 10,000원*1,350부 · 강사료 : 470,000원*9회 · 교육운영비 : 100,000원*7회	= 13,500 = 4,230 = 700	

□ 예산요구 사유

- 전년도 품목별 영농분석 및 영농핵심기술 전파로 새해 농업 설계 및 준비
- 품목별로 농업인 교육수요 충족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교육 수강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800명 → 1,100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기본계획수립
 - 2026. 1. ~ 2. : 농업인실용교육 추진
 - 2026. 3.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 간: 2023. 1. 9.(월) ~ 2. 2.(목) . 교육방식: 대면 교육 . 교육인원: 대면교육 929명(계획인원 96%) . 교육대상: 농업인, 귀농예정자,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도시민 등 관내시민 . 교육과정: 2개 분야, 9과정
2024	. 기 간: 2024. 1. 16.(월) ~ 1. 30.(목) . 교육방식: 대면 교육 . 교육인원: 대면교육 1,095명(계획인원 180%) . 교육대상: 농업인, 귀농예정자,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도시민 등 관내시민 . 교육과정: 4과정
2025	. 기 간: 2025. 1. 14.(화) ~ 1. 24.(금) . 교육방식: 대면 교육 . 교육인원: 대면교육 1,100명(계획인원 137%) . 교육대상: 농업인, 귀농예정자,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도시민 등 관내시민 . 교육과정: 4과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630	18,597	-	33	
2024	8,990	8,990	-	-	
2025	13,990	13,99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호윤	전화	4342
-----	-------	------------	-----	-----------	----	------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핵심인력 양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21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000	20,000	20,000	0	0	0	17,000	-3,000	
국비	9,500	10,000	10,000				8,500	-1,500	
도비	4,750	5,000	5,000				4,250	-750	
시비	4,750	5,000	5,000				4,250	-7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	
농업인대학 운영	201-02 행사운영비	· 강사비 : 470,000원*20회 · 농업인 대학 교육 운영비 : 20,000원*120명*3회 · 농업인 대학 실습 재료비 : 200,000원*2회	= 9,400 = 7,200 = 4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인 교육을 기술수준별, 특성별 과정으로 운영하여 품목별 농업 전문가 양성
-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 및 품목에 적합한 이론, 실기 병행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예산 감액에 따른 감액 조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기본계획수립
 - 2026. 1. ~ 2. : 신입생 모집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6. 3. ~ 10. : 농업대학 운영
 - 2026. 11. : 졸업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 간 : 2023. 3. 15. ~ 12. 6.(기간 중 35회)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현장 • 인 원 : 2개과 80명 - 과정명 : 가공창업, 작물재배
2024	• 기 간 : 2024. 4. 6. ~ 11. 5.(기간 중 25회)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현장 • 인 원 : 3개과 112명 - 과정명 : 스마트농업, 융복합농업, 작물재배
2025	• 기 간 : 2025. 4. 15. ~ 11. 4.(기간 중 25회)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현장 • 인 원 : 3개과 104명 - 과정명 : 스마트농업, 융복합농업, 작물재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0	23,392	-	607	
2024	19,000	18,993	-	7	
2025	20,000	17,770	-	2,2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호윤	전화	4342
-----	-------	------------	-----	-----------	----	------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청년농업인의 창업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성공적인 영농정착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위임규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2호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600	12,600	12,600	0	0	0	12,6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600	12,600	12,600				12,6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600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201-03 행사운영비	· 청년농업인 농업경영 교육 : 600,000원*18회*1개과정 · 청년농업인 개별 컨설팅 지원 : 600,000원*3명	= 10,800 = 1,800	

□ 예산요구 사유

- 청년농업인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을 이끌 리더를 양성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대교체 기반 마련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 계획 수립
 - 2026. 2. ~ 11. : 사업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년농업인 창업사관학교 [농업용 드론활용 교육 과정] 추진 : 7월 ~ 10월 (1종 자격증 취득과정), 7명 · 농산물 및 가공품 경쟁력 강화 브랜드 실무 교육 추진 : 11월, 6회 10명
2024	· 청년농업인 창업사관학교 [농산물 가공창업 및 농업전문경영 교육과정] 추진 : 6월 ~ 8월, 18명 ·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정밀 컨설팅 추진 : 9월~ 10월, 3회*4명
2025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교육 추진 : 8월 ~ 10월, 7회 22명 · 청년농업인 경영 분석 컨설팅 : 9월~10월, 3회 1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654	13,654	-	-	
2024	12,600	12,536	-	64	
2025	12,600	5,807	-	6,79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행정9급 최형심	전화	4343
-----	-------	------------	-----	----------	----	------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교육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장의 기반조성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준높은 농업·농촌 교육프로그램으로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기회 확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6,000	36,000	0	0	0	36,000	0	
국비		0						0	
도비		10,800	10,800				13,500	2,700	
시비		25,200	25,200				22,500	-2,700	
기타		0					9,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0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시범 : 45,000,000원*1개소*80% =	36,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육농장 육성 필요
- 품질인증 농장 육성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확대 보급
- 교육차원의 정기적인 체험활동 가능한 농장발굴 및 체험학습 기반 조성
- 초등학교 연계를 위한 지역교육지원청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 2026. 2. : 현지조사 및 심의 상정
 - 2026. 3.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4. ~ 11.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결과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시범사업: 1개소(루나의뜰, 대표 김명신) - 교육 실습장 조성 등 체험농장 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36,000	36,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조현진	전화	4338
-----	-------	------------	-----	-----------	----	------

농촌지도장비 지원(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필수 장비 지원으로 농업기술지원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 추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21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 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0	0	0	0	0	0	5,532	5,532	
국비		0						0	
도비	10,000	0					2,766	2,766	
시비	10,000	0					2,766	2,766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32	
농촌지도장비 지원(전환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교육홍보장비 2식 : 2,766,000원*2식	= 5,532	

- 예산요구 사유
- 교육 및 농업정보 보급을 위한 최신장비 지원
 - 기술 개발 및 습득을 위한 지도장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교육 및 기술보급용 신규 기자재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물품 구입 계획 수립
 - 2026. 1. ~ 12. : 물품 구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 교육홍보장비 2식 구입(컴퓨터, 음향장비 등)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0,000	19,170	-	830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호윤	전화	4342
-----	-------	------------	-----	-----------	----	------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농업경영 관련 각종 DB관리 및 대농업인 서비스 품질 개선, 농가경영 지도자료 활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6조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	10,000	0	0	0	0	20,000	10,000	
국비	4,000	4,000					8,000	4,000	
도비		0						0	
시비	6,000	6,000					12,000	6,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단순인부임 : 93,840원*2명*92일 · 4대보험료 : 17,264,000원*14%	= 17,267 = 2,417	
	201-01 사무관리비	·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운영 물품 : 158,000원*2식	= 316	

□ 예산요구 사유

- 농업경영관련 DB자료 관리를 통한 농촌지도 자료 활용
- 농업 정보화교육 및 기타 정보화 업무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타 시·군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재배정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세부 추진 계획 설립
 - 2026. 2. ~ 11.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단순인부임 활용 95일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정보시스템 정보관리 - 농업 정보화교육 및 기타 정보화 업무 지원 등
2024	-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단순인부임 활용 9월~12월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정보시스템 정보관리 - 농업 정보화교육 및 기타 정보화 업무 지원 등
2025	-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단순인부임 활용 9월~12월(진행중)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정보시스템 정보관리 - 농업 정보화교육 및 기타 정보화 업무 지원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0	9,956	-	34	
2024	10,000	9,914	-	86	
2025	10,000	5,919	-	4,08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행정9급 최형심	전화	4343
-----	-------	------------	-----	----------	----	------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4작목 16농가			
사업목적	지역 내 주요작물의 농가소득조사 분석을 통한 농가경영개선 지도 및 경영비, 소득액 산정을 통한 경영지도 자료 작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5조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26조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	4,700	0	0	0	0	5,200	500	
국비	5,000	4,700					5,200	5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200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201-01 사무관리비	· 농산물 소득조사 사무용품 1,000,000*1식	= 1,000	
	202-01 국내여비	·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조사 여비 25,000원*10농가*4회	= 1,000	
	301-14 기타보상금	·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금 50,000원*16농가*4회	= 3,200	

□ 예산요구 사유

- 농산물 작목별 소득을 조사·분석하여 농가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국비 예산 증액에 따른 증액조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세부 추진 계획 설립
 - 2026. 2. ~ 11.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산물 소득조사 : 5작목 17농가
2024	- 농산물 소득조사 : 4작목 17농가 ※ 동작물(3작목)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조사, 농가보상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
2025	- 농산물 소득조사 : 4작목 16농가 ※ 동작물(3작목)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조사, 농가보상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80	4,989	-	91	
2024	5,000	4,995	-	5	
2025	4,700	500	-	4,2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행정9급 최형심	전화	4343
-----	-------	------------	-----	----------	----	------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브랜드 개발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로 중소농업경영체 경쟁력 상승 및 소득증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000	16,000	0	0	0	0	13,600	-2,400	
국비								0	
도비	6,000	6,000					5,100	-900	
시비	10,000	10,000					8,500	-1,500	
기타		0					3,4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600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 : 17,000,000원*1개소*80%	= 13,600	

□ 예산요구 사유

- 중소농가 브랜드 개발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로 중소농업경영체 경쟁력 상승 및 소득증가 도모
- 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등 제작 지원으로 농가 유통비 부담 감소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예산 축소에 따른 감액 조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세부 추진 계획 설립 및 시범사업 공고
 - 2026. 2. ~ 3. : 대상자 선정
 - 2026. 3. ~ 11.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 : 1개소
2024	-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 : 1개소
2025	-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 : 1개소(송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000	16,000	-	-	
2024	16,000	16,000	-	-	
2025	16,000	16,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행정9급 최형심	전화	4343
-----	-------	------------	-----	----------	----	------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전략 지원(주민참여예산)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중소농업경영체의 자립적인 역량강화를 통한 합리적 농업경영 의사결정으로 경영비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 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40,000	0	0	0	0	40,000	0	
국비								0	
도비		12,000					12,000	0	
시비		28,000					28,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전략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중소농 교육운영비 : 160,000원*20회 · 교육운영물품구입 : 50,000원*20회*1개과정	= 3,200 = 1,000	
	201-03 행사운영비	· 강사비 : 470,000원*20회 · 교재비 : 20,000원*50명*7개월 · 중소농 농업경영 컨설팅 : 660,000원*10명 · 우수 경영사례 선진지 현장견학 : 1,500,000원*2회	= 9,400 = 7,000 = 6,600 = 3,000	
	202-04 국제화 여비	· 우수농업경영사례 해외 벤치마킹 : 4,000,000원*2명	= 8,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우수 경영사례 선진지 현장견학 급식비 : 9,000원*50명*4회	= 1,8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내 중소농업경영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농가현장에서 실용화되도록 하여 경영개선 효과 제고
- 우수경영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견학으로 중소농업경영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세부 추진 계획 설립
 - 2026. 2. ~ 11. : 대상자 선정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 중소농 농업경영 교육 상반기 16회 진행, 하반기 11회 진행중 - 중소농 경영 컨설팅 10명 진행, HACCP 가공 컨설팅 3명 진행 -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 진행완료(1인) - 경영기록장 250부 제작 및 배포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0,000	23,553	-	16,44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행정9급 최형심	전화	4343
-----	-------	------------	-----	----------	----	------

유형별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돌문로 51(치유농업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반려식물 산업 등 도시농업 관심 증대에 따른 도시농업 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도시농업지원조례	제3조 제1항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272	23,328	23,328	0	0	0	20,000	-3,32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7,272	23,328	23,328	0	0	0	20,000	-3,32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유형별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운영 : 600,000원*15개소*2회	= 18,000	
		· 분갈이 용토 등 구입 : 200,000원*10종	= 2,000	

□ 예산요구 사유

- 반려식물 진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김포시민의 정서적 치유 증진

□ 예산증감 사유

- 유형별 도시농업 프로그램 단순임부임 예산액을 김포시치유농업센터 운영 사업으로 이관
※ (세부)유형별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단순인부임 3,328천원→(세부)김포시 치유농업센터 운영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26. 3. ~ 4. : 반려식물 병원 현장강사 역량강화 교육
 - 2026. 5. ~ 6. :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대상자 모집 및 운영
 - 2026. 11.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회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찾아가는 식물병원 운영 상·하반기 각 10개소, 홍보물 제작 2종 · 도시텃밭 조성 용역 2개소(공영도시농업농장, 시영치유타밭) 등
2024	·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운영(상반기 10개소 20회 553명, 하반기 10개소 20회 532명) · 도시텃밭 관리 2개소(공영도시농업농장, 시영치유타밭) 등
2025	·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운영 9. 2~ 10. 1.(5주간) 15개소 30회, 949명 · 도시텃밭 관리 2개소(공영도시농업농장, 시영치유타밭)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9,908	49,093	-	815	
2024	27,272	27,138	-	134	
2025	23,328	23,328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구형진	전화	4352
-----	-------	-------------	-----	-----------	----	------

김포 방방곡곡 체험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1개분야		
사업목적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7호)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6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000	26,000	26,000	0	0	0	24,000	-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000	26,000	26,000				24,000	-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0	
김포 방방곡곡 체험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일반(시민)대상 농촌체험 운영 : 20,000원*600명 · 유형별 농촌체험 패키지 운영 : 10,000원*1,000명 · 김포 방방곡곡 체험 운영물품 구입 : 100,000원*20종	= 12,000 = 10,000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 통합예약시스템 활용 시민대상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김포 고유의 농촌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민에게 차별화된 체험 기회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재료비·강사비 등 일부 운영비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수립
 - 2026. 2. ~ 11. : 김포 방방곡곡 체험 운영
 - 2026. 11. ~ 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뽕뽕투어 농가 환경개선 농가 선정 및 민간사업 보조: 1개소 • 농촌체험관광 패키지 신규농장 선정추가: 4개소 •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기법 컨설팅: 12개소 • 뽕뽕투어 소비자 개별체험 운영: 8개소 282명
2024	• 김포 방방곡곡 체험 운영: 25회, 831명 참여 • 김포시 어린이집 대상 농촌체험학습 운영: 관내 어린이집 53개소, 1,048명 참여 • 김포농업 대축제 부스 운영: 체험부스 3개 운영(금빛농원, 곰바위농원, 송마리 다육) - 참여인원: 493명
2025	• 김포 방방곡곡 체험 운영: 총 1,151명 참여(일반 751명, 어린이 400명) • 황금물결 들녘 걷기 지역 농가 연계 체험 운영: 90명/3일(5,000원/1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6,000	66,000	-	-	
2024	26,000	25,100	-	900	
2025	26,000	15,140	-	10,8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조현진	전화	4338
-----	-------	------------	-----	-----------	----	------

농촌체험 농가 환경개선 시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관내 체험운영 농업경영체		대표자		
사업목적	체험에 필요한 환경조성으로 체험객 안전 확보 및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 <td>재 원</td> <td colspan="/>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템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7호)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6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20,000	20,000	20,000	0	0	0	20,000	0	
시비	16,000	16,000	16,000				16,000	0	
자부담	4,000	4,000	4,000				4,00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농촌체험 농가 환경개선 시범	402-01 민간자본보조	· 농촌체험 농가 환경 개선 시범 : 20,000,000원*1개소*80% =	20,000	16,000	4,000	

□ 예산요구 사유

- 영세한 농촌체험농장 내 체험객 안전과 힐링을 위한 시설물 보수 및 개선을 통한 체험객 증대
-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보유자원 활용을 위한 필요 시설, 장비 개선으로 체험활동 극대화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월드농원(대표 이정숙) ○ 추진실적 - 체험장 외부 리모델링 : 화훼 힐링 정원 설치, (체험객 안전과 편리 확보), 돌판석길, 잔디 등 - 체험장 환경개선 장비 구입 : 냉난방기 등 - 화훼 힐링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신규 콘텐츠 개발
2024	○ 보조사업자 : 김포송마리다육(대표 전영준) ○ 추진실적 - 체험장 내부 리모델링 : 체험장 - 체험장 환경개선 장비 구입 : 냉난방기 등 - 화훼 힐링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신규 콘텐츠 개발
2025	○ 보조사업자 : 농부네곳간(대표 박옥자) ○ 추진실적 - 상수도, 표지판, 개수대, 쉼터, 벤치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20,000	16,000	4,000	20,000	16,000	4,000	0	0	0	
2024	20,000	16,000	4,000	20,000	16,000	4,000	0	0	0	
2025	20,000	16,000	4,000	20,000	16,000	4,000	0	0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조현진	전화	4338
-----	-------	------------	-----	-----------	----	------

귀농귀촌 창업 교육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체계적인 귀농귀촌 교육과 창업정보 제공으로 농업농촌 정착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4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220	13,500	13,500	0	0	0	13,5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220	13,500	13,500				13,5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500	
귀농귀촌 창업교육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 귀농창업 교육 운영 : 900,000원*12회 . 귀촌창업 우수현장 견학 : 1,350,000원*1회	= 10,800 = 1,350	
	206-01 재료비	. 텃밭실습교육 재료비 : 135,000원*10종	= 1,350	

□ 예산요구 사유

- 기초영농.농산물가공기술 및 법률제도, 현장실습 병행 교육으로 귀농귀촌 창업 설계 지원
- 작물재배, 농산물가공, 농업인증, 농업경영, 농촌관광 등 우수현장 견학으로 안목 및 능력 배양
- 분야별 전문 강사를 통한 전문적인 교육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3.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생 모집
 - 2026. 4. ~ 11. : 귀농귀촌 창업 교육 실시
 - 2026. 12. : 교육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귀농 가공창업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3회 26명, 우수사업장 견학 및 귀농귀촌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13회 20명 예정 등
2024	• 귀농귀촌 이론교육 13회, 귀농귀촌 현장견학 2회, 텃밭실습교육 4회, 실습텃밭 조성 1개소(상자텃밭 25개)
2025	• 귀농귀촌 이론교육 13회, 귀농귀촌 현장견학 2회, 텃밭실습교육 4회, 실습텃밭 조성 1개소(상자텃밭 25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4,916	-	84	
2024	19,220	18,521	-	699	
2025	13,500	9,350	-	4,1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전화	4341
-----	-------	------------	-----	------------	----	------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복지시설에 농업을 소재로 한 치유헌동으로 참여자의 정서 안정 및 농업의 올바른 이해로 농업의 치유적 가치 확대보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1항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0,000	10,000	
국비		0						0	
도비		0					3,000	3,000	
시비		0					7,000	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 10,000,000원*1개소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내 농업을 통해 치유가 필요한 복지시설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접목 운영 필요
- 치유농장 및 치유농업전문인력 실무적용으로 사업성과 거양 및 일자리 창출

□ 예산증감 사유

- 복지시설(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시설 등)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운영하기 위한 재료구입비, 교재 제작비, 강사비 및 현장체험비 등 사업운영비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공고
 - 2026. 2. ~ 3. : 사업 대상 선정
 - 2026. 3. ~ 12.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치매어르신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9회 450명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0	10,000	-	-	
2024	-	-	-	-	
2025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홍지수	전화	4354
-----	-------	-------------	-----	-----------	----	------

김포시 치유농업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돌문로 51 치유농업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김포형 치유농업 육성을 통한 김포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1,831	30,368	30,368	0	0	0	34,223	3,85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1,831	30,368	30,368				34,223	3,8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223	
김포시 치유농업센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치유농업센터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 : 11,730원*8시간*1명*167일 = 15,672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1명*45일 = 4,223 - 명절휴가비 : 500,000원*1명*1회 = 500 - 4대보험료 : 20,395,000원*14% = 2,856 · 도시텃밭 관리 작업 단순인부임 - 기본급 : 11,730원*8시간*4명*4일*2개소 = 3,003 - 4대보험료 : 3,003,000원*14% = 421		
	201-01 사무관리비	· 정수기 임대료 : 65,000원*12개월 = 780 ·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 66,000원*12개월 = 792 ·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임대료 : 88,000원*12개월 = 1,056 · 사무기기 임대료 : 35,000원*12개월 = 420 · 치유농업센터 운영 및 홍보물품 : 4,500,000원*1종 = 4,500		

□ 예산요구 사유

-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치유농업센터 운영
- 치유농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경비시스템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유형별 도시농업 프로그램 단순임부임 예산액을 김포시치유농업센터 운영 사업으로 이관
※ (세부)유형별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단순인부임 3,328천원→(세부)김포시 치유농업센터 운영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1. ~ 11. : 사업추진
 - 2026. 11. ~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치유농업센터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 ·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지출
2024	· 치유농업센터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 ·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출
2025	· 치유농업센터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 · 치유농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지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024	30,439	-	1,585	
2024	31,831	31,686	-	145	
2025	30,368	22,584	-	7,78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홍지수	전화	4354
-----	-------	-------------	-----	-----------	----	------

농촌치유농장 육성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완화를 위한 치유서비스 제공 및 치유농업 공간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1항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8,000	48,000	48,000	0	0	0	48,000	0	
국비		0						0	
도비	18,000	18,000	18,000				18,000	0	
시비	30,000	30,000	30,000				30,000	0	
기타		0					12,00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0	
농촌치유농장 육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농촌치유농장 육성 : 60,000,000원*1개소*80%	= 48,0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신체 정신적 질환의 완화와 예방을 위한 치유농장 조성 필요
-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노인·아동 스트레스 완화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및 시범사업 공고
 - 2026. 2. ~ 3. : 사업 대상 선정
 - 2026. 3. ~ 12.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촌치유농장 육성 : 1개소(원예·작업 치유 교육 공간 조성,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2024	· 농촌치유농장 육성 : 1개소(농촌자원 복합 치유 교육 공간 조성,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2025	· 농촌치유농장 육성 : 1개소(약용작물 연계 치유프로그램 교육 공간 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2,000	42,000	-	-	
2024	48,000	48,000	-	-	
2025	48,000	48,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지훈	전화	4353
-----	-------	-------------	-----	-----------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으로 농어촌 활력 증진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및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4조(귀농인 지원사업)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4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00	6,000	6,000	0	0	0	6,000	0	
국비	3,000	3,000	3,000				3,000	0	
도비	1,500	1,500	1,500				1,500	0	
시비	1,500	1,500	1,500				1,5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선도농가 연수수당 : 400,000원*5개월 · 귀농연수생 교육훈련비 : 800,000원*5개월	= 2,000 = 4,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귀농실습
- 영농현장실습을 통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배양
-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 형성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 기반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2. : 현지조사 및 심의 상정
 - 2026. 3.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도농가 추천 선정
 - 2026. 4. ~ 8. : 현장실습 교육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비 : 6,000천원(국비 3,000, 도비 1,500, 시비 1,500) • 규모 : 1개소 • 주요내용 -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이석민, 교육 훈련생 정재봉 - 연수주제 : 표고버섯 재배 - 연수기간 : 2023. 4월 ~ 8월 - 실습내용 : 표고버섯 재배 및 수확후 관리, 버섯배지 만들기,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등
2024	• 사업비 : 6,000천원(국비 3,000, 도비 1,500, 시비 1,500) • 규모 : 1개소 • 주요내용 -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이의진, 교육 훈련생 임현수 - 연수주제 : 낙농 - 연수기간 : 2024. 4월 ~ 8월 - 실습내용 : ICT 접목 낙농기술, 유량증대, 개체별 사양관리 등
2025	• 사업비 : 6,000천원(국비 3,000, 도비 1,500, 시비 1,500) • 규모 : 1개소 • 주요내용 -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정재봉, 교육 훈련생 강동현 - 연수주제 : 식량작물 - 연수기간 : 2025. 4월 ~ 8월 - 실습내용 : 식량작물 재배기술 습득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000	6,000	-	-	
2024	6,000	6,000	-	-	
2025	6,000	5,280	-	7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전화	4341
-----	-------	------------	-----	------------	----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치매노인, 우울증 환자, 장애인 등을 관리하는 유관기관과 치유농장에서 운영하는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1항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0	20,000	20,000	0	0	0	20,000	0	
국비		0						0	
도비	6,000	6,000	6,000				6,000	0	
시비	14,000	14,000	14,000				14,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 : 10,000,000원*2개소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치유농장과 치유대상자(노인, 장애인 등)를 매칭하여 현장 치유프로그램 운영
- 치유농업센터를 허브로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시설과 치유농장의 원활한 연계 및 서비스 품질관리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공고
 - 2026. 2. ~ 3. : 사업 대상 선정
 - 2026. 3. ~ 12.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 2개소 22회 632명(헬스원데이케어센터, 실로원)
2024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 2개소 30회 802명(김포삼성주야간보호센터, 밀알꿈씨)
2025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 2개소 16회 736명(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김포지역아동센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20,000	-	-	
2024	20,000	20,000	-	-	
2025	20,000	9,678	-	10,32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홍지수	전화	4354
-----	-------	-------------	-----	-----------	----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1047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 현장에 스마트팜 기술 및 데이터 기반 농업을 적용하여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1,040	14,950	14,950	0	0	0	14,800	-1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040	14,950	14,950				14,800	-1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800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운영물품 구입비 : 200,000원*10종 · 교육자료 및 리플렛 제작 : 1,800,000원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서버 운영비 : 50,000원*12개월	= 2,000 = 1,800 = 600	
	201-02 공공운영비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공공요금 : 200,000원*12개월 · 유지보수비 : 1,000,000원*5회	= 2,400 = 5,000	
	206-01 재료비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자재구입비(모종, 상토, 비료 등) : 3,000,000원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 맞춤형 농업데이터 확보를 통한 스마트팜 기술 확산에 기여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김포 농업인의 디지털 농업기술 확대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미반영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2026. 12. : 사업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공사 완료 및 시범운영
2024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보완공사 및 지역적응 시험재배 실시
2025	· 포도 3종(샤인머스켓, 캠벨, 레드클라렛) 실증재배 · 포도연구회 임원 및 청년농업인 현장 견학 총 2회 1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240	36,577	-	2,663	
2024	21,040	20,961	-	79	
2025	14,950	8,095	-	6,85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홍지수	전화	4354
-----	-------	-------------	-----	-----------	----	------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도시민의 농사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녹색 생활공간 조성으로 선진문화 주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조례	제3조 제1항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0	0	0	0	0	0	38,000	38,000	
국비	0	0	0	0	0	0		0	
도비	30,000	0	0	0	0	0	11,400	11,400	
시비	70,000	0	0	0	0	0	26,600	26,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8,000	
도시농업 육성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 상자텃밭 보급 및 교육 운영 : 3,000,000원*3개소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 15,000,000원*1개소 · 시영 도시텃밭 운영 : 6,000,000원*1개소 ·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 : 6,000,000원*1개소	= 9,000 = 15,000 = 6,000 = 6,000	
	206-01 재료비	· 도시농업 텃밭 운영 재료 구입 등 : 200,000원*10종	= 2,0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영농경험이 부족한 도시민에게 도시농업 교육 및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 인식 제고 및 만족도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추경을 통한 부족한 사업비 계상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2026. 2. ~ 3. : 사업 대상 선정
 - 2026. 3. ~ 12.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 상자텃밭활용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48회 1,863명 · 공영 도시 농업 농장 운영 : 텃밭분양 및 도시텃밭 프로그램 운영(일반시민 70구좌) · 시영 도시텃밭 운영 : 텃밭분양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초등생 자녀 양육 가족 10구좌) · 김포농업 대축제 행사 연계 도시농업 홍보부스 운영 : 4개소(외부2 부스2)
2024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 40회(110시간), 연인원 1,373명 · 도시농업 반려식물반 : 10회, 194명 · 도시농업 홍보 및 교육운영 : 20회 925명 · 김포농업대축제 홍보관 운영, 수요자 맞춤형 힐링 도시농업 교육, 어르신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교육, 김장문화 체험 교육 등 ·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시영 치유탃밭 운영 : 2개소, 30회 교육, 텃밭 120구좌 운영
2025	·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 육성사업 대체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 36회(104시간) 32명 모집 29명 수료 - 상자텃밭 보급 및 교육운영 : 5개소 상자텃밭 22개 보급, 개소당 6회 교육 - 도시농업 반려식물반 운영: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운영을 위한 전문 현장강사 육성(주강사 5, 보조강사 9명) -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시영 치유탃밭 운영 : 2개소, 31회 교육, 텃밭 120구좌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0,000	89,967	-	33	
2024	100,000	99,997	-	3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구형진	전화	4352
-----	-------	------------	-----	-----------	----	------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시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농장 환경 개선을 통해 대면 및 비대면 운영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000	0	0	0	0	0	16,000	16,000	
국비		0						0	
도비	6,000	0					6,000	6,000	
시비	10,000	0					10,000	10,000	
기타		0					4,000	4,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시범 등 : 20,000,000원*1개소*80% =	16,000	

□ 예산요구 사유

- 초등학교 연계를 위한 지역교육지원청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장 환경 개선 장비 확충 및 농장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KIT, 동영상 등 개발

□ 예산증감 사유

-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 2026. 2. : 현지조사 및 심의 상정
 - 2026. 3.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4. ~ 11.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결과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시범사업: 1개소(햇살가득 버섯, 한선희), 체험장 환경개선 및 키트 개발 등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6,000	16,000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조현진	전화	4338
-----	-------	------------	-----	-----------	----	------

치유산업 인력 육성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돌문로 51 (치유농업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김포형 치유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치유농업 운영체계 확립 및 치유농업 활성화 도모 치유농업농장 인증제 시행에 따른 농장주 역량강화 및 인증평가 대비 교육 실시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1항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4,000	4,000	0	0	0	4,000	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4,000	4,000				4,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	
치유산업 인력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 치유산업 인력 육성 교육 : 500,000원*8회	= 4,000	

□ 예산요구 사유

- 치유농업 우수농장 품질 인증제 본격 시행에 따른 농장주 역량 강화
- 김포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농가 품질관리를 통한 프로그램 규격 표준화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1. ~ 11. : 사업추진
 - 치유프로그램 매뉴얼 및 치유농업사 활동서 제작
 - 치유농업 우수농장 품질 인증제 시행 관련 교육 등
 - 2026. 11. ~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 치유농업 우수농장 품질 인증제 대비 교육 : 6회 115명 · 치유농업 프로그램 양식 통일 및 정보지 제작 교육 : 1회 2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000	4,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지훈	전화	4353
-----	-------	-------------	-----	-----------	----	------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주민참여예산)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치유농업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농업·농촌의 치유적 가치 기반 마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1항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0,000	30,000	0	0	0	30,000	0	
국비		0						0	
도비		9,000	9,000				9,000	0	
시비		21,000	21,000				21,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 : 30,000,000원*1개소	= 30,000	

□ 예산증감 및 요구 사유

-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준비과정 보조
- 2026년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제 본격 정규시행 따른 우수 치유농장 발굴 및 육성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및 시범사업 공고
 - 2026. 2. ~ 3. : 사업 대상 선정
 - 2026. 3. ~ 12.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 유관기관 대상 치유농업프로그램 8회 운영 : 2개소 16회 90명(한지이야기, 햇살가득버섯) ·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제 대비 컨설팅 운영 : 2개소 · 기관배포용 치유농업 정보지 제작 진행 중 : 관내 인증제 대비 15개 농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30,000	6,200	-	23,8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지훈	전화	4353
-----	-------	-------------	-----	-----------	----	------

경기도 꿈자람 치유타발 운영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치유타발 교육운영을 통해 치유평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치유평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평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치유평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1항
시장은 치유평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6,000	6,000	
시비		0					14,000	14,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경기도 꿈자람 치유타발 운영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교육기관 치유타발 조성비 : 2,000,000원*2개소 =	4,000	
	201-03 행사운영비	. 치유타발 프로그램 재료비 : 200,000원*10회*2개소 = . 치유타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 400,000원*15회*2개소 =	4,000 12,000	

□ 예산요구 사유

- 치유평장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기관연계형 치유평업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타발 경작·관리 등 농업 분야 직업 재활 경험

□ 예산증감 사유

- 초·중·고등학교 등 관련 교육기관 치유타발·정원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3. : 사업 대상 선정
 - 2026. 3. ~ 12.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홍지수	전화	4354
-----	-------	-------------	-----	-----------	----	------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이상기후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신기술 현장 적용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57,000	57,000	
국비		0					28,500	28,500	
도비		0						0	
시비		0					28,500	28,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7,000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등 : 57,000,000원*1개소 =	57,000	

□ 예산요구 사유

- 이상기후 극한폭염에 대비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신기술 현장 적용
- 농작업용 에어컨각조끼 등을 활용한 폭염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기술 적용

□ 예산증감 사유

- 폭염 등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신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신규 국비사업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 2026. 2. : 현지조사 및 심의 상정
 - 2026. 3.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4. ~ 11.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결과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조현진	전화	4338
-----	-------	------------	-----	-----------	----	------

폭염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기술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여름철 폭염의 지속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에 맞는 기술 지원 및 온열질환 물품 보급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6,000	6,000	
시비		0					14,000	14,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폭염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기술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폭염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기술 지원 등 : 20,000,000원*1개소	20,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작업 중 온열질환에 대한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오랜 습관으로 인한 예방수칙 미준수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도구·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폭염 등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인 안전질환 예방 및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도비사업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 2026. 2. : 현지조사 및 심의 상정
 - 2026. 3.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4. ~ 11.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결과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조현진	전화	4338
-----	-------	------------	-----	-----------	----	------

생활기술교육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농촌관광체험 김포시연합회(7개 단체 175명 회원 대상)		
사업목적		농촌관광체험 김포시연합회 소속 농촌자원분야 연구회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21조
	해당조례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 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5조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	13,500	13,500	0	0	0	13,5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00	13,500	13,500				13,5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500	
생활기술교육	201-01 사무관리비	· 생활기술교육 운영용품 구입 : 4,500,000원	= 4,500	
	201-03 행사운영비	· 강사비 : 1,500,000원	= 1,500	
		· 과제 교육 : 6,000,000원	= 6,000	
		· 현장 체험교육 : 1,500,000원	= 1,5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관광체험 김포시연합회 기술 습득을 통한 사업구조 창출 및 인재 양성 교육 실시
- 7개 연구회 특성에 맞는 전문 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12. : 연구회별 월 1회 교육 추진
 - 2026. 3. ~ 12. : 연구회별 교육을 활용한 연구회별 운영 실시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통문화연구회 과제교육 11회 213명 · 향토음식 및 로하스연구회 과제교육 15회 319명 · 농촌자원분야연구회(체험, 자원, 관광) 과제교육 6회 92명
2024	· 전통문화연구회 과제교육 5회 83명 · 향토음식, 로하스연구회 과제교육 11회 250명 · 농촌자원분야연구회 전문성 강화 교육 2회 100명
2025	· 생활기술분야연구회(전통문화, 향토음식, 로하스연구회) 과제교육 13회 325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5,000	-	-	
2024	15,000	14,590	-	410	
2025	13,500	3,351	-	10,14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활동으로 농촌여성 사회활동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21조
	해당조례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5조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	10,000	10,000	0	0	0	10,000	0	
국비		0						0	
도비	3,000	3,000	3,000				3,000	0	
시비	7,000	7,000	7,000				7,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운영 물품 : 100,000원*10회	= 1,000	
	201-03 행사운영비	·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운영 : 675,000원*10회	= 6,75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급식비 : 9,000원*250명	= 2,250	

□ 예산요구 사유

- 생활개선회원 전문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성 전문가 배출 및 지역사회 리더 육성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농촌 여성의 교육 기회 부여
- 농촌여성 사업화 등 자립 교육 지원으로 경제활동 주체로 육성 등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생활개선회 대상 전문 학습 운영 계획 수립
 - 2026. 2. ~ 12. : 생활개선회원 학습활동 교육 시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읍면동 생활개선회 현장 벤치마킹 등 학습활동 지원 : 3회 212명
2024	· 생활개선회 영농교육 : 6회 154명 · 생활개선회 현장 벤치마킹 등 학습활동 지원 : 2회 52명
2025	· 생활개선김포시연합회 영농교육 : 3회 94명 · 생활개선김포시연합회 조직 활성화 및 농작업 안전교육 지원 : 1회 43명 · 생활개선회 현장 벤치마킹 등 학습활동 지원 : 5회 12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0	9,532	-	467	
2024	10,000	10,000	-	-	
2025	10,000	6,781	-	3,21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백종우	전화	4334
-----	-------	------------	-----	-----------	----	------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촌여성에게 생활문화지를 제공하여 다양한 농업정보 습득을 통한 농촌여성리더 육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21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 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	13,920	13,920	0	0	0	13,020	-900	
국비		0						0	
도비	4,500	4,176	4,176				3,906	-270	
시비	10,500	9,744	9,744				9,114	-63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020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 60,000*217명	= 13,020	

□ 예산요구 사유

- 여성의 권익 증진과 농업·농촌 문화 활동 촉진 및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정보제공
- 생활개선회원의 역량강화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정보전달 등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2. ~ 12. : 정보지 제공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생활정보지 제공 : 245부
2024	· 생활정보지 제공 : 250부
2025	· 생활정보지 제공 : 232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700	14,700	-	-	
2024	15,000	15,000	-	-	
2025	13,920	10,440	-	3,4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백종우	전화	4334
-----	-------	------------	-----	-----------	----	------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기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사업목적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공익사업 확대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 선도자로서의 능력배양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21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	2,000	2,000	0	0	0	2,000	0	
국비		0						0	
도비	600	600	600				600	0	
시비	1,400	1,400	1,400				1,4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201-03 행사운영비	· 역량강화 교육운영비: 500,000원*4회 =	2,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 추진
- 우수 농업 현장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농업 발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교육, 현지연찬 교육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농촌지도자회원 연간 교육 계획 수립
- 2026. 2. ~ 12. :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현장교육 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회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촌지도자회 역량강화교육 : 7회, 200명 · 농촌지도자회김포시연합회 총회 및 신기술교육 : 7회, 229명
2024	· 농촌지도자회 총회 및 과제교육 : 6회, 195명 · 농촌지도자회김포시연합회 시연합회 선진지 현장 견학 : 1회, 20명
2025	· 농촌지도자회 총회 및 과제교육: 9회 228명 · 농촌지도자회김포시연합회 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1회 1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	1,910	-	90	
2024	2,000	1,988	-	12	
2025	2,000	544	-	1,45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전찬영	전화	4332
-----	-------	------------	-----	-----------	----	------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20명		
사업목적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공익사업 확대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 선도자로서의 능력배양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위임규정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000	21,000	0	21,000	0	0	15,400	-5,600	
국비		0						0	
도비	8,100	6,300	-	6,300			4,620	-1,680	
시비	18,900	14,700	-	14,700			10,780	-3,92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400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정보지 제공: 17,500원*220명*4회	= 15,4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지도자회원에게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 수립
 - 2026. 1. ~ 12. : 농촌지도자회원 농업 정보지 제공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업정보지 제공 350명
2024	· 농업정보지 제공 450명
2025	· 농업정보지 제공 35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00	21,000	-	-	
2024	27,000	27,000	-	-	
2025	21,000	10,063	-	10,93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전찬영	전화	4332
-----	-------	------------	-----	-----------	----	------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제고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영농 및 경영 기술 도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50,000	50,000	
국비		0						0	
도비	-	0	-				15,000	15,000	
시비	-	0	-				35,000	3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제고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벼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사업: 50,000,000원*1개소*100%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인 학습단체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자생적 발전 기반 조성
-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인 친환경 재배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예산증감 사유

- '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선정에 따른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추진 계획 수립
 - 2026. 3. :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
 - 2026. 4. ~ 11.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전찬영	전화	4332
-----	-------	------------	-----	-----------	----	------

4-H회원 과제교육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4-H이념 실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수 있는 계기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21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 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0	20,000	20,000	0	0	0	20,000	0	
국비		0						0	
도비	6,000	6,000	6,000				6,000	0	
시비	14,000	14,000	14,000				14,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4-H회원 과제교육	201-01 사무관리비	· 4-H 과제교육 운영물품 구입 : 500,000원*2과정	= 1,000	
	201-03 행사운영비	· 4-H회원 선진농장견학 : 2,000,000원*1회	= 2,000	
		· 4-H회원 역량강화 교육 : 1,000,000원*6회	= 6,000	
		· 4-H회원 야외 교육 : 5,600,000원*1회	= 5,600	
		· 학교4-H 과제활동지원 : 500,000원*4개교*2회	= 4,000	
		· 4-H과제경진대회: 500,000원*1개교	= 500	
	301-11 행사실비지원비	· 4-H회 육성 급식비 : 9,000원*50명*2회	= 900	

□ 예산요구 사유

- 4-H회원의 리더십 향상 및 농심함양을 위한 과제활동 등 지원
- 전국의 품목별 선진농장 견학 등으로 신농업 기술의 전수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2. ~ 3. : 추진계획수립
 - 2026. 3. ~ 12. : 교육 추진 및 사업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학교4-H회 과제교육 지원 및 경진대회 참가 : 4개학교 - 청년4-H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교육 : 11월 6회 10명
2024	- 학교4-H회 과제교육 지원 및 경진대회 참가 : 4개학교 - 청년4-H 중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 : 17명
2025	- 학교4-H회 과제교육 지원 및 경진대회 참가 : 3개학교 - 청년4-H 공동영농 재배교육 : 2개필지, 5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19,706	-	237	
2024	20,000	19,003	-	997	
2025	20,000	15,093	-	4,90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호윤	전화	4342
-----	-------	------------	-----	-----------	----	------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우수 4-H활동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활동정보지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21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 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	1,500	1,500	0	0	0	2,000	500	
국비		0						0	
도비	450	450	450				600	150	
시비	1,050	1,050	1,050				1,400	3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4-H활동정보지 제공 : 40,000원*50명 =	2,000	

□ 예산요구 사유

- 우수 4-H활동정보 습득을 통한 4-H우수모델화 선점 및 농업분야의 트렌드 습득에 필요
- 4-H회원의 리더십 향상 및 농심함양을 위한 과제활동 등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1. ~ 12. : 활동정보지원 사업 진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신문구독 50부*12개월)
2024	-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신문구독 50부*12개월)
2025	- 4-H회원 활동정보 지원 (신문구독 50부*12개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	1,500	-	-	
2024	1,500	1,500	-	-	
2025	1,500	375	-	1,12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호윤	전화	4342
-----	-------	------------	-----	-----------	----	------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청년농업인4-H회원들의 초기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0	24,000	24,000	0	0	0	24,000	0	
국비		0						0	
도비	9,000	9,000	9,000				9,000	0	
시비	15,000	15,000	15,000				15,000	0	
기타		0					6,000	6,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0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 30,000,000원*1개소*80%	= 24,000	

□ 예산요구 사유

- 청년농업인들의 초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 사업 실시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신기술과 아이디어 투입으로 작목별 영농기반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 2026. 2. : 현지조사 및 심의 상정
 - 2026. 3.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4. ~ 10. : 사업추진
 - 2026. 11. : 사업완료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사업 : 1개소(농업용 드론 구입)
2024	-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사업 : 1개소(양액재배 설비 및 전기보일러 구입)
2025	-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사업 : 1개소(유지상: 농업용 드론 구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0	24,000	-	-	
2024	24,000	24,000	-	-	
2025	24,000	24,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호윤	전화	4342
-----	-------	------------	-----	-----------	----	------

다양한 우리쌀 · 밀 활용교육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90명		
사업목적	우리 쌀·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농업인 전문리더 양성 교육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조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500	1,500	1,500	0	0	0	2,700	1,200	
국비	2,250	750	750				1,350	600	균특
도비	1,125	375	375				675	300	
시비	1,125	375	375				675	3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교육	201-03 행사운영비	·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교육 운영 : 30,000원*90명	= 2,700	

□ 예산요구 사유

- 우리 쌀·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농업인 전문리더를 육성하여 쌀·밀 소비 저변 확대
- 농업인이 소비자에게 쌀·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
- 농진청 개발 쌀·밀 품종 및 가공기술, 쌀 및 밀 가공품·요리실습, 관련 교구, 교재 제작

□ 예산증감 사유

- 쌀 활용 교육 대상자 증가(50명→90명)으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2. ~ 11. : 교육 추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4회 100명
2024	-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7회 160명(남 23, 여 137)
2025	-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2회 5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	3,000	-	-	
2024	4,500	4,500	-	-	
2025	1,500	1,5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영양에 강한 청년농업인들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학·농·관 연계 및 창업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립기반을 갖춘 정예 청년농업인 리더 양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60,000	160,000	
국비	0	0	0				0	0	
도비	0	0	0				60,000	60,000	
시비	0	0	0				100,000	100,000	
기타		0					40,000	40,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0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 100,000,000원*2개소*80%	= 160,000	

□ 예산요구 사유

-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율형 사업 공모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일자리 창출 및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예의 청년농업인들을 집중 육성하여 자립기반을 갖춘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확산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도비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2. : 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 2026. 3. ~ 10. : 사업추진
 - 2026. 11. : 사업완료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 1개소(토마틸로 재배시설 구축: 하우스, ICT 시스템, 양액재배시설 등)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0,000	160,000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호윤	전화	4342
-----	-------	------------	-----	-----------	----	------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8. ~ 1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사업목적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회원 화합의 장 마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000	0	0	0	0	0	6,000	6,000	
국비		0						0	
도비	2,400	0	-				1,800	1,800	
시비	5,600	0	-				4,200	4,2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 운영비	= 2,4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자 급식비: 9,000원*80명*5회	= 3,600	

□ 예산요구 사유

-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지역 우수 농·특산물 전시, 전통 농경문화 체험 등

□ 예산증감 사유

- 제79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6. : 추진 계획 수립
 - 2026. 7. ~ 10. : 사업 추진 및 집행
 - 2026. 11.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 제77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 - 기 간: 2024. 10. 1.(화) ~ 10. 2.(수), 2일간 - 장 소: 경북 포항, 경주 일원 - 인 원: 84명(농촌지도자회원 등)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000	7,719	-	281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전찬영	전화	4332
-----	-------	------------	-----	-----------	----	------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여성 지도자 역할 및 회원 소통의 장 마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500	0	0	0	0	0	5,500	5,500	
국비		0						0	
도비	1,350	0					1,650	1,650	
시비	3,150	0					3,850	3,85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00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 운영비 : 2,000,000원	= 2,000	
		·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 : 875,000원*4회	= 3,500	

□ 예산요구 사유

- 생활개선회의 조직 활성화와 타 시도 농업정보 교류 장 조성
-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 참석, 생활개선회원 재능 발표 등

□ 예산증감 사유

- 생활개선회원 전국대회 운영 및 과제교육 횟수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수립
 - 2026. 2. ~ 12. : 사업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 전국 생활개선회원 전국대회 참석 : 1회 42명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4,500	4,391	-	109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백종우	전화	4334
-----	-------	------------	-----	-----------	----	------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 돌봄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촌 여성이 함양하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 활력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
	해당조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김포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5조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0,000	0	10,000	0	0	10,000	0	
국비		0						0	
도비		3,000		3,000			3,000	0	
시비		7,000		7,000			7,000	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 돌봄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교육 운영 물품 구입 : 1,100,000원 ·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 교육 운영비 : 500,000원*16회 = 8,000,000원	1,100 8,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 급식비 : 9,000원*100명	9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 여성의 재능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공동체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사회공헌 실현
-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12. : 사업 추진
 - 2026. 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 생활개선김포시연합회 지역 농·특산물(자광미) 활용 가공품 개발 이론 및 실습 교육 : 9회 197명 · 생활개선김포시연합회 김포복지재단 연계 취약계층 대상 개발 가공품 나눔 행사 : 1회 2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000	9,257	-	74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 김종무	담당자	농촌지도사 백종우	전화	4334
-----	-------	------------	-----	-----------	----	------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판매 활성화 지원 농업인 가공제품의 고객 확보 및 재구매율 향상을 위한 마케팅 기술 시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5,000	15,000	0	0	0	15,000	0	
국비		0						0	
도비		4,500	4,500				4,500	0	
시비		10,500	10,500				10,5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 직거래 장터, 박람회 참석 등 : 2,500,000원*4개소 =	10,000	
		· 직거래 장터, 박람회 참석 등 판촉행사 재료 : 505,000원*4개소 =	2,020	
		· 마케팅 기술 교육 추진 : 500,000원*4회 =	2,000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 직거래 장터, 박람회 참석 여비 : 40,000원*10명*2회 =	800	
		· 직거래 장터, 박람회 참석 급량비 : 9,000원*10명*2회 =	18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제품 생산자를 위한 적절한 판로 제공 및 지속적인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 2026. 2. ~ 11.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결과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사업 박람회 참석(메가쇼 2025) - 4개소(연꽃정원, 일화식품, 만나주식, 김포농식품) - 총 472명 방문 및 5,899,020원, 잠재고객 확보, 유통 기업 상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5,000	15,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황금들녘 걷기 행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보구곶리 일원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가을 논(황금들녘)을 활용한 농촌 관광자원화 행사 및 이미지 쇄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5조 1항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4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1,000	21,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21,000	21,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	
황금들녘 걷기 행사	201-03 행사운영비	· 황금들녘 걷기 행사 운영(화장실, 현수막, 매트 등) : 21,000,000원 =	21,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 보구곶리 황금들녘을 활용한 지역 관광 자원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 행사 추진을 위한 보안, 안전, 주차장, 시설 등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반영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2025.11. 반영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6. : 기본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6. 9. ~ 10. : 황금들녘 걷기 행사 추진 등
 - 2026. 11.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김포 농촌관광 투어패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체험농장
사업규모	1개단체		
사업목적	우리 시 지역 특색을 살린 농촌체험 운영 및 관광객 지역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 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 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5호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00,000	1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00,000	1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김포 농촌관광 투어패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농촌관광 투어패스 운영 : 20,000,000원	= 20,000	
	301-14 기타보상금	. 농촌관광 투어패스 운영(농촌체험지원) : 80,000,000원	= 80,000	

□ 예산요구 사유

- 도농교류촉진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6. 1. ~ 2. : 참여농가 모집 및 공고(1월), 심사 및 결과통보(2월)
 - 2026. 3. : 참여대상자 사전 교육
 - 2026. 5. ~ 10. : 사업 추진
 - 2026. 11. :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용강리 267-2(매화미르 체험관)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철거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93,000	93,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93,000	93,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3,000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체험관 철거	401-01 시설비	- 매화미르체험관 철거 · 철거(구조물, 마감재, 바닥) · 폐기물(건설, 혼합) 및 정화조 처리 · 설계용역, 석면조사, 전기·상수도 차단 등	= 33,800 = 37,500 = 21,700	

□ 예산요구 사유

- 매화미르마을 농촌체험 운영 종료 및 원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 활용방안 회의 시 철거 협의
- 건물 노후화 및 수요없이 방치되어 건물 철거를 통한 경관 및 안전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매화미르 체험관 건물 철거 결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설계용역 등 예상되는 소요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반영예정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2026.상반기 반영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공유재산심의회 결정
 - 2026. 1.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철거 업체 선정 및 건축물 해체 신고
 - 2026. 2. ~ 4. : 건축물 해체 및 완료 신고
 - 2026. 4. ~ 5. : 건축물대장 말소
 - 2026. 5. : 행정재산(토지) 소요조회
 - 2026. 6. : 소요조회 관련 부서 재산관리관 이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스마트팜 기술보급으로 악성 노동력 해소 및 노동력 절감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6,000	16,000	
국비		0						0	
도비		0					6,000	6,000	
시비		0					10,000	10,000	
기타		0					4,000	4,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 20,000,000원*1개소*80%	= 16,000	

□ 예산요구 사유

- 기후변화 대응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환기 등 자동화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
- 농촌노동력 부족 및 악성 노동조건 해결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사업 예산액 신규 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2. : 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 2026. 3. ~ 10. : 사업추진
 - 2026. 11. : 사업완료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교육정보팀장 양승호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호윤	전화	4342
-----	-------	------------	-----	-----------	----	------

농산물 가공품 개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김포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는 가공상품 개발 및 도농교류로 선순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2호 다목 및 3호 가,다목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2호
	해당조례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068	20,000	20,000	0	0	0	2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068	20,000	20,000				20,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농산물 가공품 개발	201-01 사무관리비	· 농식품가공산업 활성화 - 농산물가공품 개발 운영 및 상품화 : 8,000,000원 = 8,000 - 지적재산권 관리 : 100,000원*20종 = 2,000		
	201-03 행사운영비	· 지역특화 가공상품 및 향토음식 개발 교육 : 500,000원*10회 = 5,000		
	207-03 시험연구비	· 지역 생산 농산물 활용 가공품 개발비 : 500,000원*10종 = 5,000		

□ 예산요구 사유

-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김포시 생산 농산물 활용 특산품 개발 및 소규모 가공사업장 소득 증대
- 1차 산업에서 벗어난 특산품 개발로 2차-3차 산업 연계 개발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11. : 가공상품 개발 시험연구, 지역적응 시험, 컨설팅, 전수 교육 등 추진
- 2026. 4. ~ 11. : 농가공상품 활용 농촌관광 사업추진, 김포 이미지 제고 홍보물 배부 등
- 2026. 12. : 가공품 개발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햄프씨드(청삼씨앗) 활용 가공품 개발 : 마스크팩, 양갱 3종(3&양갱, 蔘과 관련된 양갱 3종) · 가공상품개발 및 가공시험 등 : 84건, 쌀요거트 등 시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험 · 상품화 전수교육 : 4회 73명, 농산물가공창업 예정자, 농산물 가공관련 연구회원 등 · 홍보 :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농업인의 날 등 · 농촌부존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 : 17종(한지품 3종, 쪽염색이불, 포수·포미 머그컵, 술잔, 쌀점토피규어) · 천연염색 상품 개발 리빙랩 운영 : 3회(쪽염색 제품 개발시험) · 관광상품 개발 전수교육 : 4회 74명
2024	· 김포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컨설팅 : 6회 137명 · 막장, 고추장 체험프로그램 전수교육 : 1회 25명 · 홍보 :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 전시 · 농촌 체험과 부존자원 이용 특색기념품 개발 : 천연염색, 공예 이용 제품 등 개발
2025	· 농산물 가공품 시험제작 및 개발 : 5종(9월 이후 결과 보고) · 약과샌드, 장 만들기 키트, 쌀술빵, 장떡, 누룽지, 버섯 과즐 및 피클 등 교육 : 10회 200명 · 홍보 : 메가쇼 1 박람회 참석(4개업체), 농업 대축제 참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3,243	51,624	-	1,619	
2024	14,068	14,000	-	68	
2025	20,000	19,676	-	32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확대에 따른 소규모 가공사업장 가공시설 개선 지원 위생수준 향상지원을 통한 제품 안전성 강화로 신뢰도 향상 및 판매 확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0	0	0	0	0	0	50,000	50,000	
국비		0						0	
도비	75,000	0					25,000	25,000	
시비	75,000	0					25,000	2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등 : 50,000,000원*1개소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위생시설 개선 관련 연구성과 적용 및 농업인 위생·안전 의식 향상 개선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가공제품 생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HACCP인증 확대에 따른 소규모 가공사업장 개선 지원을 위한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 2026. 2. : 현지조사 및 심의 상정
 - 2026. 3.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4. ~ 11.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결과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 1개소(농업회사법인(주) 꿈드림, 대표 이운재)
2024	- 2024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 3개소(김포전통장영농조합법인, 김포만나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류씨네)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0	50,000	-	-	
2024	150,000	150,000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 및 농촌사회 활력 부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80,000	80,000	
국비		0						0	
도비		0					30,000	30,000	
시비		0					50,000	50,000	
기타		0					20,000	20,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0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 등 : 100,000,000원*1개소*80% =	80,000	

□ 예산요구 사유

- 소규모 농가형 가공사업장 발굴 및 창업지원으로 농식품 가공 활성화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이나 기존 가공제품 품질개선 지원으로 차별화된 창업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지역농산물 활용 창업활동 및 HACCP 인증 컨설팅 등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 2026. 2. : 현지조사 및 심의 상정
 - 2026. 3.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4. ~ 11. :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결과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사업 추진: 1개소(농업회사법인 연꽃정원, 오선호)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0,000	80,000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지도사 우민식	전화	4337
-----	-------	------------	-----	-----------	----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하성로 58-155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기계 임대를 통한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2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7,712	352,581	273,611	60,000	18,970	0	379,319	26,73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7,712	352,581	273,611	60,000	18,970		379,319	26,73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79,319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 : 11,730원*8시간*2명*167일	= 31,343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2명*45일	= 8,446	
		- 시간외근무수당 : 17,595원*20시간*2명*8개월	= 5,631	
		- 명절휴가비 : 500,000원*2명	= 1,000	
		- 4대보험료 : 46,420,000원*14%	= 6,499	
		· 임대사업 농번기 단순인부임		
		- 기본급 : 11,730원*8시간*2명*43일	= 8,071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2명*10일	= 1,877	
		- 시간외근무수당 : 17,595원*20시간*2명*2개월	= 1,408	
		- 4대보험료 : 11,356,000원*14%	= 1,59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79,319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8명*1회 = 800 -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무실 운영비 : 125,000원*12월 = 1,500 - 농기계 임대사업장 소모품 구입 : 125,000원*12월 = 1,500 - 피복비(작업복, 안전화) : 140,000원*10명 = 1,400 - 정수기 임대료 : 55,000원*12개월*2대 = 1,320 - 무인경비 요금 : 187,000원*12월 = 2,244 - 공기청정기 임대료 : 56,000원*12개월*1대 = 672 - 프린트(복합기)임대료 : 110,000원*12개월*1대 = 1,320 - 비데 임대료 : 15,000원*12개월*2대 = 360		
	201-02 공공운영비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공공요금 등 - 농기계 임대사업장 전기요금 : 13,000,000원 = 13,000 - 농기계 임대 관리시스템 통신요금 : 40,000원*12개월 = 480 - 농기계 임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120,000원*12개월 = 1,440 - 임대용 농기계 수선유지비 : 76,122,000원 = 76,122 - 농기계 종합보험 : 107,000원*159대 = 17,013 - 농기계임대사업소 청소용역비 : 750,000원*12개월 = 9,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임대용 농기계 구입 - 농용굴착기 : 27,500,000원*2대 = 55,000 - 정지기 : 6,250,000*2대 = 12,500 - 원판쟁기6련 : 5,500,000원*3대 = 16,500 - 원판쟁기8련 : 6,800,000*2대 = 13,600 - 배토기 : 2,740,000*1대 = 2,740 - 파종기 : 13,230,000원*3대 = 39,690 - 콩정전기 : 22,000,000원*1대 = 22,000 - 휴립피복기 : 4,545,000원*1대 = 4,545 - 관리기 : 3,344,500원*2대 = 6,689 - 비닐피복기 : 4,545,000원*1대 = 4,545 - 땅속작물수확기 : 1,737,000원*2대 = 3,474 - 제초기 : 4,000,000원*1대 = 4,000		

□ 예산요구 사유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비 필요 등
- 농번기 임대증가에 따른 인력난 해소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순인부 운영 필요
- 농업인 수요가 많은 노후 장비 교체 및 신형 농기계 구입을 통한 기계화율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공무원 근로자 퇴직(2025. 6.)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1명 충원
- 임대사업소 전기요금 단가 상승 및 2025년 구매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증가분 반영
- 농기계 임차인의 안전과 임대사업소 업무 효율을 위해 내구연한 초과 농기계 폐기에 따른 신형 농기계 구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농기계임대사업소 연간 운영계획 수립
 - 2026. 1. ~ 12.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 2026. 2. ~ 5. : 농기계/농기자재 구입
 - 2026. 2. ~ 8. :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추진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기계 임대 : 3,794대(임대금액 : 68,349천원) . 농기계 안전교육 : 13회(305명), 임대농기계 상시교육(농기계 임대시) . 농기계 19종 30대 구입(발작물기계 및 기자재) .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101건) * 코로나19 대응 농업인 피해 최소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운영 : 2023 01 01~ 12. 31
2024	. 농기계 임대 : 3,974대(임대금액 : 74,727천원) . 농기계 안전교육 : 20회(537명), 임대농기계 상시교육(농기계 임대시) . 농기계(농용굴착기)/농기자재(안전난간대) 구입 .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117건) . 시범사업 : 1건(IoT 농업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 시범) * 코로나19 대응 농업인 피해 최소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운영 : 2024 01 01~ 12. 31
2025	. 농기계 임대 : 3,096대(임대금액 : 60,680천원) . 농기계 안전교육 : 16회(357명), 임대농기계 상시교육(농기계 임대시) . 승용이앙기 등 27대 농기계 구입 .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117건) * 코로나19 대응 농업인 피해 최소화 농기계 임대료 인하 운영 : 2025 01 01~ 12. 31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13,440	412,434	-	1,006	
2024	227,712	222,229	-	5,483	
2025	352,581	296,956	-	55,62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기계팀장 정성민	담당자	전문경력관 다군 정윤환 공업7급 김기현	전화	4348 4335
-----	-------	-----------	-----	--------------------------	----	--------------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교육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하성로 58-155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통한 농기계 사고예방 및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000	12,000	12,000	0	0	0	12,000	0	
국비	6,000	6,000	6,000				6,000	0	
도비	1,800	1,800	1,800				1,800	0	
시비	4,200	4,200	4,200				4,2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교육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기계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 10,000원*150명*2회 · 농업기계 훈련자재 구입 : 20,000원*190점	= 3,000 = 3,800	
	201-03 행사운영비	·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 : 500,000원*4회 · 농업기계 현장교육 운영 : 970,000원*2회	= 2,000 = 1,94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교육생 급식비 : 9,000원*140명	= 1,260	

□ 예산요구 사유

- 농기계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대수요가 많고 위험수위가 높은 농기계 위주의 실습교육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연간 농업기계 안전교육 계획 수립
 - 2026. 2. ~ 11. : 연중 안전교육 실시
 - 2026. 12. : 안전교육 결과 평가 및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업기계 안전교육 : 13회 305명 - 임대 농업기계 출고 전 안전교육 : 2,141명
2024	- 농업기계 안전교육 : 20회 537명 - 임대 농업기계 출고 전 안전교육 : 2,422명
2025	- 농업기계 안전교육 : 16회 357명 - 임대 농업기계 출고 전 안전교육 : 1,33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800	7,800	-	-	
2024	12,000	12,000	-	-	
2025	12,000	5,839	-	6,16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기계팀장 정성민	담당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정윤환	전화	4348
-----	-------	-----------	-----	----------------	----	------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하성로 58-155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를 신품으로 대체하여 농가 농업기계화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6항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00,000	200,000	
국비		0					100,000	100,000	
도비		0					50,000	50,000	
시비		0					50,000	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노후농기계 대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임대용 농기계 구입 - 콤바인(YH400C) : 100,300,000원 * 1대 = 100,300 - 파종기(DRP-1002SPN) : 17,100,000원 * 2대 = 34,200 - 파종기(POJ-2XLT) : 5,500,000원 * 1대 = 5,500 - 퇴비살포기(HMG-400) : 13,000,000원 * 1대 = 13,000 - 퇴비살포기(TKT-HS1000A) : 23,200,000원 * 1대 = 23,200 - 로타베이터(WH195SMK) : 3,830,000원 * 1대 = 3,830 - 로타베이터(DWL102-3) : 7,200,000원 * 1대 = 7,200 - 동력예취기(THR900C) : 6,000,000원 * 1대 = 6,000 - 휴립피복기(WJCM-2000) : 4,600,000원 * 1대 = 4,600 - 콩탈곡기(ESP-100) : 2,170,000원 * 1대 = 2,170		

□ 예산요구 사유

- 농기계 임차인의 안전과 임대사업소 업무효율을 위해 노후농기계 불용처리(2025년 48대)에 따른 신형 농기계 구입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5. : 신형 농기계 및 농기자재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해당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기계팀장 정성민	담당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정윤환	전화	4348
-----	-------	-----------	-----	----------------	----	------

한강 솔솔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조성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3. ~ 12.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금포로 1697
사업규모	1층·2층·3층 (연면적 3,720㎡)		
사업목적	- 한강솔솔큐어파크 신축 등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해당조례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6,536,500	5,765,986	770,514	-	-	770,514	963,500	-	963,500
도 비 (특별조정교부금)	4,000,000	4,000,000	0	-	-	-	-	-	-
시 비	2,536,500	1,765,986	770,514	-	-	770,514	963,500	-	963,5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0	
한강 솔솔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조성		해당 없음		

□ 예산요구 사유

- 치유농업 거점 플랫폼 조성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준비(도시계획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용역, 실내공간 조성→내부공사 등)

□ 예산증감 사유

-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조건부	-	-	-	-
일자	2025.11. 반영	2021.10월(도)	-	-	-	-	2021.7월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3. 2. : 한강솔솔큐어파크(학교급식물류 지원센터) 착공
- 2023. 12. : 내부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12. ~ 2024. 6. : 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조례 제정
- 2024. 8. : 한강솔솔큐어파크·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준공
- 2024. 10. ~ 2026. 9. :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 2026. 10. ~ 12. : 내부시설 공사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7,500,000	6,536,500	0	0	0	963,500	
공 정 별	설계비	49,500	49,500	0	0			
	보상비	0	0	0	0			
	공사비	6,712,322	5,748,822	0	0		963,500	미교부액
	감리비	702,033	702,033	0	0			
	부대비	36,145	36,145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한강솔솔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시설공사 착공 : 23. 2.
2024	· 한강솔솔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시설공사 준공 : 24. 8.
2025	·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추진 중(종합허가과, 도시계획과 협의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730,828	235,465	3,495,363	3,495,363	
2024	6,295,363	5,524,849	770,514	770,514	
2025	770,514	-	770,514	770,514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농업진흥과	사업규모	1층·2층·3층(연면적 3,720㎡)	본예산 요구액 (천원)	0
부기명 (세부사업)	한강술술 시민소통공간 플랫폼 조성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금포로 1697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지훈	전화	4353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기술지원과
요 구 액	1,048,69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500	500	500	0	500	0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이자수입	500	500	500	0	500	0	시범사업 시비 이자발생액
임시적세외수입	3,000	6,500	3,000	3,500	8,000	1,500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시비 부가가치세 등	0	3,500	0	3,500	5,000	1,500	시범사업 시비 잔액, 부가가치세
기타수입/그외수입 ◎농업신기술시범사업 부가가 치세 환급금	3,000	3,000	3,000		3,000	0	시범사업 국도비 부가가치세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200	3,000	0	3,000	5,000	2,000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 반환금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00	1,500	0	1,500	3,000	1,500	국비보조금 이자, 잔액
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 등반환금 ◎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00	1,500	0	1,500	2,000	500	도비보조금 이자, 잔액

쌀품질관리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쌀 이종혼입 및 품질분석으로 유통관리체계확립 및 김포금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6조 ①항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제20조의 2
		①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200	33,200	33,200	0	0	0	44,718	11,51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3,200	33,200	33,200				44,718	11,51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4,718	
쌀품질관리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93,840원*1명*84일 ·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93,840원*1명*23일 · 4대 보험료 10,042,000원*14% · 피복비 70,000원*1명	= = = = 7,883 2,159 1,406 70	
	201-01 사무관리비	· 쌀품질관리실 운영비 : 100,000원*20종	=	2,000
	201-02 공공운영비	· 실험기자재 장비유지비 : 100,000원*12월	=	1,200
	206-01 재료비	· 쌀 DNA 추출 및 유전자 지표 확인 키트 : 400,000원*70점	=	28,000
	207-03 시험연구비	· 품종검정 테스트 및 연구재료 : 1,000,000원*2회	=	2,000

□ 예산요구 사유

- 양곡관리법 개정 대응 쌀품질 분석(품질·품종검사 등) 의뢰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 쌀 이종혼입 및 품질분석 장비 도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단백질함량 의무 표시) 선제적 대응과 유통관리체계 확립 및 김포금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양곡관리법 개정 대응 쌀품질관리 업무 및 분석의뢰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승인
일자	2025.11. 반영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쌀품질관리실 운영 계획 수립
 - 2026. 1. ~ 12. : 예산집행 및 쌀 DNA 품질 분석
 - 2026. 12 : 운영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쌀 DNA 품종 및 품질 검사 90점(단백질, 완전미율 등)
2024	· 쌀 DNA 품종 및 품질 검사 150점(단백질, 완전미율 등)
2025	· 쌀 DNA 품종 및 품질 검사 16점(단백질, 완전미율 등) ※ 하반기 벼 수확 후 의뢰 증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200	33,200	-	-	
2024	33,200	33,200	-	-	
2025	33,200	3,334	-	29,86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세영	전화	4362
-----	-------	------------	-----	-----------	----	------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5개소		
사업목적	현장 수요에 맞는 농업인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촌진흥법		제2조 ④항, 제20조
	제2조 ④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800	8,400	8,400	0	0	0	8,4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800	8,400	8,400				8,4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400	
농업인상담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인상담소 수용비 : 60,000원*12개월*5개소 =	3,600	
		. 농업인상담소 행정장비 유지비 : 40,000원*12개월*5개소 =	2,400	
	201-02 공공운영비	. 시설장비 유지비 : 200,000원*12월 =	2,4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인 상담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수기, 소모품, 행정장비 유지비 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농업인상담소 운영 계획 수립
 - 2026. 1. ~ 12. : 읍면동별 상담소 운영 및 사업비 집행
 - 2026.12 : 운영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식량작물(벼,감자,옥수수,고구마, 발작물 등) 보급종 신청 접수·배부 - 식량작물(벼), 원예특작(포도,고추,사과) 등 농가 현장 지도 - 읍면동 마을별 반상회 추진
2024	- 식량작물(벼,감자,옥수수,고구마, 발작물 등) 보급종 신청 접수·배부 - 식량작물(벼), 원예특작(포도,고추,사과) 등 농가 현장 지도 - 읍면동 마을별 반상회 추진
2025	- 식량작물(벼,감자,옥수수,고구마, 발작물 등) 보급종 신청 접수·배부 - 식량작물(벼), 원예특작(포도,고추,사과) 등 농가 현장 지도 - 읍면동 마을별 반상회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00	3,437	-	63	
2024	10,800	6,489	-	4,311	
2025	8,400	7,044	-	1,35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선정	전화	4364
-----	-------	------------	-----	-----------	----	------

식량작물 특성화 시험연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식량작물 실증시험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신소득작목 육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6조 ①항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	63,126	30,000	0	20,000	13,126	112,164	49,03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	63,126	30,000		20,000	13,126	112,164	49,03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2,164	
식량작물 특성화 시험연구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용 한가득쌀 구입 : 1,900원*3,000개 =	5,700	
	207-03 시험연구비	· 실증시험 연구재료(종자, 표찰, 농자재, 기타 실증연구 재료 등) : 5,000,000원*2과제 =	10,000	
	301-14 기타보상금	· 한가득 벼 보급종자 구입 지원 : 45,000원*500포(20kg)(6톤 분량) =	22,5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자광미 포장재 제작 : 7,394,000원*3식*90% - (고급형) 자광미 박스 : 6,000원*1,000개*90% - (고급형) 자광미 지퍼백 : 400원*21,300장*90% - (보급형) 자광미 포장백 : 300원*19,720개*90% - (보급형) 자광미 동판제작 : 249,480원*7개*90% =	19,964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 자광미 활용 상품화 기반조성 시범 : 60,000,000원*90% - 열풍건조 진동 스크린 라인 : 6,099,500원*1식*90% - 현미 및 백미 도정 라인 : 22,000,000원*1식*90% - 계량 및 포장기계 라인 : 31,900,000원*1식*90% =	54,000	

□ 예산요구 사유

- 현재 경기도 및 김포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외래품종 추청벼의 공급 중단('28년부터 공급 중단 예정)에 따라 김포 지역전략 신품종 벼 '한가득'의 홍보용 쌀 제작
- 한가득 보급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한가득 재배 장려 및 농가 경영비 절감 기여
- 각종 기후변화(이상고온, 국지성 호우 등) 대응 및 지역특화품종, 김포 토종벼 실증을 위한 예산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김포 지역전략 신품종 벼 ‘한가득’의 홍보용 쌀 구입 및 포장재 제작비
- 자광미 활용 상품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신규편성에 따른 예산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事成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실증과제 및 홍보 관련 계획 수립
 - 2026. 1. ~ 12. : 실증과제 및 홍보 관련 사업 수립
 - 2026. 11. ~ 12. : 실증과제 및 홍보 사업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역적응 선발 품종 실증시험(한가득) 3개소(예찰답, 대곶면 대능리, 월곶면 조강리 등 농가 2개소) ·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실증시험(월곶면 조강리 일원, 저탄소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 수확량, 미질향상, 도복경감 등 효과 실증) · 벼 이모작 실증시험(고촌읍 태리 일원, 쌀가루 가공용 벼와 밀 이모작 식재로 농가 소득향상 및 적정 작부체계 실증)
2024	· 김포 토종종자 ‘자광미’ 복원 및 활용 - 자광미 순계선발을 위한 채종재배 : 0.1ha, 생산량 300kg/10a(조곡) - 자광미 유효성분 분석(현미, 백미 등) : 안토시아닌,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성분 함유 확인 - 김포문화재단 주최 자광미 소재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추진 : 시민참여 모내기, 추수, 탈곡 수작업 등 · 김포 대표 벼 품종 ‘한가득’ 확대 보급 - ‘24년 한가득 재배면적 : 40ha(시범사업 2개소, 관심농가, 쌀연구회원 등) - 출수기 중간평가 및 수확 후 식미평가, 농업인의 날 등 한가득 쌀 홍보 및 로컬푸드 판매, ‘25년 종자보급 등
2025	· 김포 토종종자 ‘자광미’ 확대 및 활용 계획(시장 지시사항) - 김포 토종 벼 “자광미” 안정 재배 및 판매·홍보·프로그램 활성화 업무협약(4개 기관·단체간 협약) - 2년차 자광미 종자 복원 및 확대재배 : 1개소 10a(1,000㎡) - 자광미 재배 확대 및 소포장 상품화 : 2개소 20a(5,000㎡) - 자광미 소포장 상품화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 9월말 납품 예정 - 자광미 활용 상품화 개발 연구(막걸리 등) - 소비자 문화예술 활동(김포문화재단 연계) : ‘밀다리쌀을 키워라! (2탄) - 자광미 활용 가공식품 만들기 교육(고추장, 밥도그, 약식, 강정, 요거트, 푸딩, 쿠키, 케익, 포장방법 등) · 김포 대표 벼 품종 ‘한가득’ 확대 보급 - ‘25년 한가득 벼 확대 재배 및 생산단지 조성 : 118명 165ha ·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 3개사업 3개단지 48명 70ha · 한가득 관심농가 재배 : 70명, 95ha - 한가득 종자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 협약기관 : 다자간협약(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개 기관 및 단체) · 계약물량 : ‘26년도 재배용 10톤(200ha 분량) · 내 용 : 한가득 종자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발전방안 토의 등 - 한가득 쌀 브랜드 포장 및 디자인 개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5,000	-	-	
2024	10,000	10,000	-	-	
2025	63,126	23,611	-	60,515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

부서	기술지원과	사업규모	3개소(농업기술센터 예찰실증포, 월곶면 조강리, 개곡리)	본예산 요구액 (천원)	73,964
부기명 (세부사업)	식량작물 특성화 시험연구	사업위치	대곶면 약암리 874 (농업기술센터 예찰실증포)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세영	전화	4362
-----	-------	------------	-----	-----------	----	------

고품질 쌀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GAP 벼 재배농가
사업규모	GAP 벼 재배면적 510ha		
사업목적	GAP 인증 벼 재배의 생산확대 및 경영비 절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종 제1항 1호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별표 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농자재비, 생산장려금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0,150	80,150	80,150	0	0	0	80,15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0,150	80,150	80,150				80,15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0,150	
고품질 쌀 재배장려금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GAP 인증 쌀 재배 장려금 : 1,000원×175포×458ha	= 80,150	

□ 예산요구 사유

- GAP 인증 벼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김포시의 고품질 벼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함과 더불어 김포금쌀의 품질과 이미지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8. : GAP 인증 쌀 장려금 지원계획 수립
 - 2026. 9. : 사전신청
 - 2026. 10. : 필지별 현장조사 및 이행상황 점검
 - 2026. 11. : 지원금 신청
 - 2026. 12. : 지원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쌀생산 장려금 지원금 : 180,422천원 - 규 모 : 711ha, 442농가 (친환경 169ha, 87농가, GAP 542ha, 355농가)
2024	• 쌀생산 장려금 지원금 : 80,106천원 - 규 모 : 507ha, 331농가
2025	• 4분기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4,250	180,422	-	13,828	
2024	80,150	80,106	-	44	
2025	80,150	-	-	80,1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전화	4363
-----	-------	------------	-----	-----------	----	------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7개소		
사업목적	농업인 기술보급 교육 및 컨설팅 등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으로 농업 애로사항 해결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제20조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0,000	10,000	0	0	0	10,000	0	
국비		0						0	
도비		3,000	3,000				3,000	0	
시비		7,000	7,000				7,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 신기술, 품목 보급 교육, 컨설팅 등 운영 : 1,600,000원	= 1,600	
	201-03 행사운영비	· 농업 신기술, 품목 보급 교육, 컨설팅 등 : 1,200,000원*7개소	= 8,4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별 농업인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적극 농업 현장 행정 실현
- 농업 현장 의견 반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농업기술보급 효율 극대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계획수립
 - 2026. 1.~12. : 읍면동별 상담소 운영 및 교육, 컨설팅 등 운영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 김포시농촌지도자회 현장견학 추진(양촌, 월곶, 하성 3개소) - 한국농촌지도자김포시연합회 수련대회 추진
2025	- 탄소중립 안전농산물 재배 기술 현지교육 실시 - 벼 못자리 아인산염 처리 실증 교육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0,000	10,000	-	-	
2025	10,000	722	-	9,27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선정	전화	4364
-----	-------	------------	-----	-----------	----	------

벼 병해충 방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벼 재배지역
사업규모	4,142ha		
사업목적	벼 병해충의 예찰 및 일시·다면적 예방적 공동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지원)시장은 제5조제3항의 민간공동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예산 3. 그 밖에 시장이 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56,862	2,054,336	2,054,336	0	0	0	2,049,536	-4,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56,862	2,054,336	2,054,336				2,049,536	-4,8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49,536	
벼 병해충 방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예찰담 단순인부임 : 93,840원*3명*1개소*10일 =	2,816	
	201-01 사무관리비	· 예찰담 토지 수확손실보상금 : 3,500,000원*1개소 =	3,500	
		· 항공방제 홍보물품 : 200,000원*7개소 =	1,400	
		· 드론 방제 용역부대비 : 1,300,000원*7개소 =	9,100	
	201-02 공공운영비	·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 소모품 : 100,000원*5종 =	500	
		·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 보수 : 100,000원*8종 =	800	
		· 농업기상 자동관측 시설 운영비 : 250,000원*1개소*12월 =	3,000	
		· 농업기상 자동관측 시설 유지보수료 : 1,000,000원*1식 =	1,0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49,536	
벼 병해충 방제	206-01 재료비	· 벼 병해충 친환경 공동방제 약제 : 250,000원*3,600ha =	900,000	
		· 벼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 : 200,000원*3,960ha*80% =	633,600	
		· 벼 친환경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 : 300,000원*220ha*70% =	46,2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공동방제단 운영 : 100,000원*800ha =	80,000	
	401-01 시설비	· 드론방제 용역비 : 110,000원*3,342ha =	367,62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 노동력 부족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김포 관내 벼 재배 전면적 병해충 방제 지원
- 일시 다면적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 효율성 제고 및 고품질 김포 금쌀 생산 기여
- 지역 농업인이 참여한 민간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공동방제의 신뢰도 제고 및 농업인 소득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농업기상 자동관측 시설 장비 개선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1 ~ 2 : 벼 병해충 방제면적 산출
 - 2026. 3 ~ 5. : 벼 병해충 방제 약제·용역 입찰 공고 및 계약
 - 2026. 7 ~ 8 : 사업추진
 - 2026. 9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벼 병해충 항공방제 - 예산액 : 2,766,051천원 - 방제면적 : 4,348ha(헬기 2,039, 드론 2,309ha)
2024	• 벼 병해충 항공방제 - 예산액 : 1,112,726천원 - 방제면적 : 4,170ha(드론 100%)
2025	• 벼 병해충 항공방제 - 예산액 : 1,544,000천원 - 방제면적 : 4,142ha(드론 10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29,570	2,528,513	-	1,057	
2024	1,656,862	1,649,332	-	7,530	
2025	2,054,336	1,730,778	-	323,55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전화	4363
-----	-------	------------	-----	-----------	----	------

병해충 사전방제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벼, 과수 농가 4,297ha			
사업목적	고품질 김포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물방역법 제31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2,200	252,000	252,000	0	0	0	145,560	-106,440	
국비	96,100	126,000	126,000				72,780	-53,220	
도비	28,830	37,800	37,800				21,834	-15,966	
시비	67,270	88,200	88,200				50,946	-37,25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5,560	
병해충 사전방제비 지원	206-01 재료비	. 벼 돌발해충 : 84,000,000원(765ha) . 과수 돌발병해충(꽃매미 등) : 22,000,000원(100ha) . 검역·고위험 병해충 : 39,560,000원(66ha)	= 145,560	

□ 예산요구 사유

-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을 통한 병해충 발생 방지 및 확산 최소화
- 방제약제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산물 품질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새로운 병해충 발생 또는 시군별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병해충 발생 증가
- 경기도 예산 사정에 따른 예산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2. ~ 2026. 3 : 병해충 방제 약제 선정
 - 2026. 4. ~ 2026. 5. : 방제 약제 구입
 - 2025. 6 : 방제 약제 공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벼 돌발병해충 - 지원면적 : 4,024ha(경작면적 93%) - 지원대상 : 3,895명 - 지원약제 : 육묘상자처리제, 42,244봉 ※ 시비 536,245천원 추가 지출 ○ 과수 돌발병해충(미국선녀벌레 등) 약제 지원 : 살충제 890개, 220ha ○ 과수 검역병해충(화상병) 약제 지원 : 배,사과 재배농가 살균제 1,140개, 62.5ha
2024	○ 벼 친환경 항공방제 약제 구입 - 지원면적 : 267ha(친환경 대상면적의 22%) ※ 항공방제 면적 : 4,170ha(일반 2,937ha, 친환경 1,233ha) ※ 잔여수량 시비 추가 지출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 약제 지원 : 살충제 680개, 150ha ○ 과수 검역병(화상병) 약제 지원 : 배,사과 재배농가, 살균제 2,340개, 71ha, 3회 방제분 ○ 과수 화상병 추가 방제 약제 지원 : 살균제, 1,000개, 2회 방제분
2025	○ 벼 친환경 항공방제 약제 구입 - 지원면적 : 678ha(대상면적 4,142ha의 17%) ※ 항공방제 면적 : 4,142ha ※ 잔여수량 시비 추가 지출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 약제 지원 : 200ha ○ 검역병해충(화상병, 토마토뽕나방)방제 약제 지원 : 배,사과 재배농가, 60ha, 토마토재배농가 6ha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8,400	228,390	-	10	
2024	192,200	192,094	-	106	
2025	252,000	213,729	-	38,27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농촌지도사 정규민	전화	4363 4368
-----	-------	--------------------------	-----	------------------------	----	--------------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개 사업		
사업목적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적기 공동방제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물방역법, 농촌진흥법	제31조 1항, 제16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2,500	121,000	121,000	0	0	0	72,000	-49,000	
국비		0						0	
도비	24,750	37,500	37,500				21,600	-15,900	
시비	57,750	83,500	83,500				50,400	-33,100	
기타		4,000	4,000					-4,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000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206-01 재료비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 150,000원*280ha	= 42,000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 돌발해충 방제 약제 구입 : 200,000원*31ha	= 6,200	
	401-01 시설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 벼 병해충 방제 용역 : 110,000원*129ha - 돌발해충 방제 용역 : 310,000원*31ha	= 14,190 = 9,610	

□ 예산요구 사유

- 이상기상에 따른 비래해충 발생 등 돌발 병해충 발생의 빠른 대응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새로운 병해충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양태 변화에 대응한 발생 및 확산 방제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감액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2. ~ 2026. 3 : 병해충 방제 약제 선정
- 2026. 4. ~ 2026. 5. : 방제 약제 구입, 배부
- 2026. 5. ~ 2026. 8. : 돌발병해충 예찰
- 2026. 9 : 우심지역 임야지 방제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외래 돌발병해충 방제 : 932ha, 살충제 4,623병 ○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 드론방제, 2명, 250ha(통진, 월곶, 하성 농경지 인근) ○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 : 1개소, 천적, 수정벌 등 친환경 자재 지원
2024	○ 외래 돌발병해충 방제 : 432ha, 살충제 6,473병 ○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 1개소, 김포공항 관제권 지역 - 드론방제 농업인 2명, 68ha(김포공항 관제권 지역) - 광역방제 : 151ha(김포공항 관제권 지역) - 돌발해충 임야방제 : 27ha
2025	○ 외래 돌발병해충 방제 : 2,288ha분, 살충제 7,324병 ○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 김포공항 관제권 지역 벼 병해충 방제 : 206ha분 - 돌발해충 임야방제 : 27ha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0,500	89,014	-	1,486	
2024	82,500	78,488	-	4,012	
2025	121,000	113,166	-	7,83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전화	4363
-----	-------	------------	-----	-----------	----	------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벼 병해충 예찰답(대곶면 약암리 874)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벼 병해충의 신속한 병해충 예찰 체계 구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2항 1호
②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200	13,200	13,200	0	0	0	9,200	-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200	13,200	13,200				9,200	-4,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200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무인공중포충망 예찰 시스템 운영 등 : 7,000,000원*1개소 · 무인공중포충망 예찰 장비 보수 등 : 1,000,000원*1개소 · 벼 병해충 예찰답 유지보수 : 1,000,000원*1식	= = =	7,000 1,000 1,000
	206-01 재료비	· 예찰답 종자 구입비 : 200,000원*1개소	=	200

□ 예산요구 사유

- 비래 병해충을 ICT장비(무인공중포충망) 활용한 실시간 예찰로 적기병해충 방제 도모
- 돌발적으로 급증하는 병해충 조기 포집 및 분석을 통한 농가지도 및 방제조치로 농산물 품질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벼 병해충 예찰답 보수완료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계획수립
 - 2026. 2. ~ 12. :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무인공중포충망시스템 운영 - 기 간 : 4월 ~ 10월(운영중) - 예찰건수 : 129건 - 포집 및 검사량 : 239,204마리
2024	• 무인공중포충망시스템 운영 - 기 간 : 4월 ~ 10월(운영중) - 예찰건수 : 96건 - 포집 및 검사량 : 36,176마리
2025	• 무인공중포충망시스템 운영 - 기 간 : 4월 ~ 10월(운영중) - 예찰건수 : 52건 - 포집 및 검사량 : 35,100마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180	10,150	-	30	
2024	20,200	18,604	-	1,596	
2025	13,200	4,000	-	9,2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전화	4363
-----	-------	------------	-----	-----------	----	------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신속 정확한 예찰·진단 체계 구축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2항 1호
	②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000	22,000	22,000	0	0	0	22,000	0	
국비	6,600	6,600	6,600				6,600	0	
도비	4,620	4,620	4,620				4,620	0	
시비	10,780	10,780	10,780				10,78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 : 93,840원*1명*169일 -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 93,840원*1명*42일 - 4대보험료 : 2,129,760원 . 하절기 피복비 : 70,000원*1명	= 15,859 = 3,942 = 2,129 = 7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기상관측시설, 현미경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한 병해충 발생 전망 예측 및 적기방제 지도
- 예찰 결과 활용 병해충 분석을 통한 방제적기 예측
- 적기 방제를 통한 농약 사용량 최소화로 생산비 절감 및 농촌 환경 보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4. ~ 2025. 11 : 병해충 예찰, 진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병해충 예찰 방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1명) - 조사대상 병해충 : 병 10종, 해충 12종 - 벼 병해충 예찰답 관리 및 관찰포 조사 : 8회(6~9월 1일,16일) - 예찰 방제 실적 : 약 145회
2024	○ 병해충 예찰 방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1명) - 조사대상 병해충 : 병 10종, 해충 12종 - 벼 병해충 예찰답 관리 및 관찰포 조사 : 8회(6~9월 1일,16일) - 예찰 방제 실적 : 약 155회
2025	○ 병해충 예찰 방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1명) - 조사대상 병해충 : 병 10종, 해충 12종 - 벼 병해충 예찰답 관리 및 관찰포 조사 : 8회(6~9월 1일,16일) - 예찰 방제 실적 : 약 150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000	21,279	-	721	
2024	22,000	15,052	-	6,948	
2025	22,000	18,695	-	3,3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전화	4363
-----	-------	------------	-----	-----------	----	------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개소		
사업목적	해충 비래 등 주요 지점 주기적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로 농산물 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2항 1호
		②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00	1,800	1,800	0	0	0	1,800	0	
국비	540	540	540				540	0	
도비	378	378	378				378	0	
시비	882	882	882				882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시험연구비 207-03	.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 : 300,000원*6개소	= 1,800	

□ 예산요구 사유

-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 발생 사전예측 및 발생정보 제공
- 병해충 발생정보를 통한 적기방제 추진으로 농산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에 기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기본계획수립
 - 2026. 3. : 병해충 관찰포 선정
 - 2026. 4. ~ 2026. 11 : 병해충 예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 - 사업량 : 6개소(대곶면 4, 통진읍 2) - 운영 결과 : 벼 출수기 전 후 1개월 이상 강수 및 고온 지속에 따른 병해발생, 특이사항 없음
2024	○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 - 사업량 : 6개소(월곶면 2, 통진읍 2, 하성면 2) - 운영 결과 : 벼 출수기 전 후 1개월 이상 강수 및 고온 지속에 따른 병해발생, 특이사항 없음
2025	○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 - 사업량 : 6개소(월곶면 2, 통진읍 2, 하성면 2) - 운영 결과 : 벼 등숙기 지속된 강수에 많았음, 병해충 발생·확산과 관련 특이사항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00	1,795	-	5	
2024	1,800	1,768	-	32	
2025	1,800	1,768	-	3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전화	4363
-----	-------	------------	-----	-----------	----	------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을 위한 기초기술 중점 보급 및 작무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 마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물방역법	제31조 1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4,000	94,000	94,000	0	0	0	94,000	0	
국비	47,000	47,000	47,000				47,000	0	
도비	14,100	14,100	14,100				14,100	0	
시비	32,900	32,900	32,900				32,9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4,000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93,840원*170일*2명 = 31,906 · 유급휴일수당 93,840원*43일*2명 = 8,071 · 명절휴가비 500,000원*1회*2명 = 1,000 · 4대보험료 등 20,987,920원*14%*2명 = 5,877 · 피복비 : 70,000원*2명 = 140 · 단순인부임 : 93,840원*5일*2명 = 939		
	201-01 사무관리비	· 임차료 : 1,500,000원*12개월 = 18,000 · 운영소모품 : 632,700원*10종 = 6,327		
	202-01 국내여비	· 병해충 예찰 출장 여비 : 3,000,000원 = 3,000		
	206-01 재료비	· 예찰방제단 운영 재료 구입(화상병 진단키트 등) : 1,874,000원*10종 = 18,740		

□ 예산요구 사유

-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등 검역 병해충을 비롯한 각종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예찰하고 방제하기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계획수립
 - 2026. 1. ~ 12. :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병해충 예찰방제단 추진 실적 · 배,사과 과수화상병 정기 및 상시예찰 월별 추진완료(2024. 10. 25. 기준 2 ~ 10월 월별 추진, 71ha) · 2024년도 김포시 검역병해충 발생 0건
2025	- 병해충 예찰방제단 추진 실적 · 배,사과 과수화상병 정기 및 상시예찰 월별 추진완료(2025. 9. 30. 기준 2 ~ 9월 월별 추진, 57.6ha) · 2024년도 김포시 검역병해충 발생 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94,000	75,471	-	18,529	
2025	94,000	82,395	-	11,6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정규민	전화	4368
-----	-------	------------	-----	-------------	----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촌지역 영농수확 이후 발생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을 통한 환경친화형 선순환 농업 실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① 김포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05,000	105,000	0	0	0	105,000	0	
국비		42,000	42,000				42,000	0	
도비		0						0	
시비		63,000	63,000				63,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5,000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파쇄작업 인부임(10명, 41일), 4대 보험료 등 : 83,555,000원	= 83,555	
	201-01 사무관리비	.차량임차 : 50,000원*4대*37일 .운영물품(작업복, 마스크, 장갑 등)	= 7,400 = 4,045	
	201-02 공공운영비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영농부산물 파쇄·퇴비화를 통한 소각을 방지로 농촌 환경개선 및 산물 예방, 미세먼지 저감
- 소각 방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 변화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기본계획수립 및 농가 신청
 - 2026. 1. : 작업인력 채용
 - 2026. 2. ~ 3. : 파쇄작업 실시
 - 2026. 4.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 612농가, 717필지, 89.3ha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5,000	104,712	-	28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전화	4363
-----	-------	------------	-----	-----------	----	------

영농부산물 찾아가는 파쇄지원단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3.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농작물 수확 이후 발생된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 등을 통한 화재 예방 및 환경친화형 선순환 농업 실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개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① 김포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3,680	13,6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3,680	13,68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680	
영농부산물 찾아가는 파쇄지원단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파쇄작업 인부임 150,000원*10명*6일	= 9,000	
		·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150,000원*10명*2일	= 3,000	
		· 사업자부담금 12,000,000원*14%	= 1,680	

□ 예산요구 사유

- 영농부산물의 파쇄 지원을 통한 화재 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
- 퇴비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 실천
-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 변화 감소 및 시민 건강증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국비 예산 규모(105백만원)로 우리시 파쇄 신청 농가 전체 지원 불가(신청농가의 70% 지원 가능)
- 미지원 시 영농부산물 소각 등이 불법이며 농업인 고령화로 인해 자체 파쇄도 어려운 실정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기본계획수립 및 농가 신청
 - 2026. 1. : 작업인력 채용
 - 2026. 1. ~ 3. : 파쇄작업 실시
 - 2026. 4. : 사업비 정산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전화	4363
-----	-------	------------	-----	-----------	----	------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시포도연구회		대표자	김동희	
사업목적		고품질 김포포도 직거래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td>재원</td><td colspan="/>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탐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66,000	68,000	68,000	0	0	0	77,900	9,900	
시비	60,000	62,000	62,000				71,000	9,000	
자부담	6,000	6,000	6,000				6,900	9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77,900	71,000	6,900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201-01 사무관리비	- 기간 : 2026. 9. ~ 10. - 내용 :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행사 부서원 경비 - 산출근거 : 100,000원*10명*2일	2,000	2,000	-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기간 : 2026. 9 ~ 10. - 지원단체 : 김포시포도연구회(대표 김동희) - 사업내용 : 제29회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추진 - 산출근거 :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운영(캠벨얼리,샤인머스켓) : 69,000,000원	75,900	69,000	6,9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포도 직거래장터를 활용한 관내 농산물 판매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포도연구회 회원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증가로 증액 필요
- 부서원 행사 차출 예산편성(9월 캠벨얼리 행사 2일, 10월 샤인머스켓 행사 2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제26회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 기간 : 2023. 9. 9. ~ 10. ○ 장소 : 4개 로컬푸드직매장(신김포, 김포, 고촌농협, 엘리트농부) ○ 내용 : 소비자 포도체험 행사 및 포도 직거래 행사 운영 - 김포포도 7,000상자 한정 3,000원 할인 판매 - 소비자 체험행사 : 포도 봉지싸우기, 포도수확 체험 ○ 매출 : 256,825,000원
2024	제27회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 기간 : 2024. 9. 7. ~ 8. ○ 장소 : 4개 로컬푸드직매장(신김포, 김포, 고촌농협, 엘리트농부) ○ 내용 : 소비자 포도체험 행사 및 포도 직거래 행사 운영 - 김포포도(캠벨얼리) 8,000상자 한정 3,000원 할인 판매 - 김포포도(샤인머스켓) 2,000상자 한정 3,000원 할인 판매 - 김포포도(캠벨얼리) 수확체험 : 김포시민 100세대 ○ 매출 : 314,182,000원
2025	제28회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 기간 : 2025. 9. 13. ~ 14.(캠벨얼리), 2025. 10. 18. ~ 19.(샤인머스켓) ○ 장소 : 관내 4개 로컬푸드직매장(신김포, 김포, 고촌농협, 엘리트농부) ○ 내용 : 소비자 포도체험 행사 및 포도 직거래 행사 운영 - 김포포도(캠벨얼리 및 샤인머스켓) 직거래 판매 - 김포포도(캠벨얼리 및 샤인머스켓) 품평회 - 김포포도 소비자 체험(수확체험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50,000	45,000	5,000	50,000	45,000	5,000	-	-	-	
2024	66,000	60,000	6,000	66,000	60,000	6,000	-	-	-	
2025	66,000	60,000	6,000	66,000	60,000	6,000	-	-	-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

부서	기술지원과	사업규모	4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77,9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사업위치	3개농협 및 엘리트농부 로컬푸드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규민	전화	4368
-----	-------	------------	-----	-----------	----	------

고품질 원예작물 재배기반 조성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바이러스 검사 250점, 실증시험 8개소		
사업목적	과채류 바이러스병 감염여부 검사로 병해 피해 최소화, 실증시험을 통한 새로운 지역 소득작목 발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촌진흥법		제18조, 제21조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794	27,000	27,000	0	0	0	27,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8,794	27,000	27,000				27,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0	
고품질 원예작물 재배기반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과채류 바이러스 검사운영 소모품 : 봉투, 모종삽 등 50,000원*10종 =	500	
	206-01 재료비	· 과채류 바이러스 검사 휴대용 간이키트 : 250,000원*10세트 =	2,500	
	207-03 시험연구비	· 원예-특작분야 등 재배기술 및 지역적응 실증시험 - 종자종묘 등 생산기반 기자재 등 실증시험 재료 : 3,000,000원*8개소 =	24,000	

□ 예산요구 사유

- 고추, 오이, 호박 등 과채류 바이러스 초기 진단을 위한 검사키트 구입
- 지속되는 이상기후와 농업환경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농업 여건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김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소득 작목, 지역적합 품종 선발 등 농업신기술 실증시험 과제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예산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10. : 바이러스 검사, 실증시험 수행
 - 2026. 11. ~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과채류 바이러스 진단키트 활용 : 총 130건 - CMV(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 20, TSWV(토마토반점위조 바이러스) 60, 기타 바이러스등 50건 • 지역적응 농가 실증시험 : 분야별 총 10개소
2024	• 과채류 바이러스 진단키트 활용 : 총 132건 - CMV(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 22, TSWV(토마토반점위조 바이러스) 60, 기타 바이러스등 50건 • 지역적응 농가 실증시험 : 분야별 총 8개소
2025	• 과채류 바이러스 진단키트 활용 : 총 130건 - CMV(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 20, TSWV(토마토반점위조 바이러스) 60, 기타 바이러스등 50건 • 지역적응 농가 실증시험 : 분야별 총 8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077	27,627	-	450	
2024	28,794	27,051	-	1,743	
2025	27,000	17,186	-	9,8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황다연	전화	4367
-----	-------	------------	-----	-------------	----	------

원예작물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1개소(관내 원예작목 재배농가) 및 2개단체		대표자	김포 관내 원예작물 재배농가 김포시화훼연합회 김포시블루베리연구회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김포 맞춤형 원예작목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 원예농가에 우량상토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등				
사업구분	☐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 <td>재 원</td> <td colspan="/>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탬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그 외 시스템명 기재) ☐ 해당없음(사유기재)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1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① 김포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02,876	103,006	103,006	0	0	0	124,500	21,494	
시비	43,750	43,750	43,750				62,250	18,500	
자부담	59,126	59,256	59,256				62,250	2,994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24,500	62,250	62,250	
원예작물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원예농가 상토지원 시범 - 화훼 재배용 상토 : 25,000원*3,500포*50% = 87,500 - 과수(블루베리) 재배용 상토 : 50,000원*200포*50% = 10,000	87,500 10,000	43,750 5,000	43,750 5,000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김포 맞춤형 원예작목 생산기반 조성 : 27,000,000원*1개소*50% = 27,000	27,000	13,500	13,500	

□ 예산요구 사유

- 화훼, 블루베리 농가에게 우량상토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비 절감

- 농가에 필요한 품목 지원(하우스, 재배시설, 기자재 등)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품질향상을 통한 김포시 농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기상 및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면서 지역 농업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비하여 지역별 맞춤형 원예작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

□ 예산증감 사유

- 블루베리 재배농가 상토 확대 지원
- 과수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을 원예작물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원예농가 상토지원 시범 · 보조사업자 : 1개소 (김포시화훼연합회) · 추진실적 : 화훼연합회 - 상토 3,500포/250L ○ 기후변화 대응 다품종 과수 생산기반 구축 시범 - 보조사업자 : 변근섭, 문영순 - 추진실적 : 푸른재배 시설 내 무인포그 냉해 방재기 시스템 구축(변근섭) 자두재배지 골조 시설 등 설치(문영순)
2024	○ 원예농가 상토지원 시범 · 보조사업자 : 1개소 (김포시화훼연합회) · 추진실적 : 화훼연합회 - 상토 3,500포/250L ○ 기후변화 대응 다품종 과수 생산기반 구축 시범 - 보조사업자 : 한규열 - 추진실적 : 사과 재배기반 구축 등 ○ 김포 샤인머스켓 브랜드화 포장재 디자인 개발 - 추진실적 : 김포 샤인머스켓 브랜드화 포장재 디자인 개발 완료, 상용화 예정
2025	○ 원예농가 상토지원 시범 · 보조사업자 : 1개소 (김포시화훼연합회) · 추진실적 : 화훼연합회 - 상토 3,500포/250L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3,750	73,750	-	-	
2024	68,750	68,146	-	604	
2025	43,750	43,750	-	-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

부서	기술지원과	사업규모	2,500㎡	본예산 요구액 (천원)	13,5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맞춤형 원예작목 생산기반 조성 (원예분야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약암리 1206		
현장사진					

부서	기술지원과	사업규모	1개단체(김포시화훼연합회)	본예산 요구액 (천원)	48,750
부기명 (세부사업)	원예농가 상토지원 시범	사업위치	하성면 애기봉로 809-14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정규민	전화	4368
				지방농촌지도사 황다연		4367
				지방농촌지도사 김수연		4369

원에 새기술 보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고압나트륨램프, LED 등을 통한 겨울철 부족한 일조량 확보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000	40,000	40,000	0	0	0	32,000	-8,000	
국비		0						0	
도비	6,000	15,000	15,000				12,000	-3,000	
시비	10,000	25,000	25,000				20,000	-5,000	
기타	4,000	10,000	10,000				8,000	-2,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0	
원에 새기술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보광자재(LED, 고압나트륨램프), 보광시스템, 증압시설비 등 지원 : 40,000,000원*1개소(2,000㎡ 내외)*80%	= 32,000	

□ 예산요구 사유

- 시설채소류(가지, 딸기 등)의 보광등 도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원에 새기술 보급' 사업 중 신규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추진 계획수립
 - 2026. 1. ~ 2. : 시범사업 공고 및 지원 신청 접수
 - 2026. 3.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3. ~ 11. : 사업 추진
 - 2026. 11. ~ 12. : 성과평가 및 정산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고온기 채소 재배환경 개선기술 시범 : 1개소(변미숙) - 시설채소 보광등 이용 재배기술 시범 : 1개소(곽오종) - 신소득작목 재배기술 시범 : 1개소(김포시아열대연구회)
2024	- 신소득작목 재배기술 시범 : 1개소(김포시특용작물연구회)
2025	- 고온기 채소 재배환경 개선기술 시범 : 1개소(양우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8,000	88,000	-	-	
2024	16,000	16,000	-	-	
2025	40,000	4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황다연	전화	4367
-----	-------	------------	-----	-------------	----	------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여건 및 농가특성에 맞는 화훼류 ICT활용 환경개선 기술 투입을 통한 생력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1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6,000	16,000	0	0	0	20,000	4,000	
국비		0						0	
도비		6,000	6,000				7,500	1,500	
시비		10,000	10,000				12,500	2,500	
기타		4,000	4,000				5,000	1,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환경측정장치, 모니터링 및 제어노드 등 자동화 장치, 보광등 등 : 25,000,000원*80%*1개소 = 20,000	20,000	

□ 예산요구 사유

- 이상기후 대응 ICT융합 기술을 활용한 화훼 안전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재배환경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기술보급사업 재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추진 계획수립
 - 2026. 1. ~ 2. : 시범사업 공고 및 지원 신청 접수
 - 2026. 3.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3. ~ 11. : 사업 추진
 - 2026. 11. ~ 12. : 성과평가 및 정산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 1개소(이재성 농가)
2024	- 해당없음
2025	-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 1개소(양진모 농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000	32,000	-	-	
2024	-	-	-	-	
2025	16,000	16,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김수연	전화	4369
-----	-------	------------	-----	-------------	----	------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오리정로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전략작목의 규모화,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농업인 개발 우수과제 확대 보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제25조 1항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0,000	600,000	600,000	0	0	0	170,000	-430,000	
국비		0						0	
도비	200,000	300,000	300,000				85,000	-215,000	
시비	200,000	300,000	300,000				85,000	-215,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김포 콩 GAP인증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 위한 농기계, 관수시설, 교육 등 : 170,000,000원*1개소*100%	170,0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의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마련
- 김포시 콩 재배 전과정 생력재배기반 구축 및 GAP 인증 단지 조성
- 자동 관수시스템 도입으로 관수 생력화를 통한 안정생산,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추진 계획수립
 - 2026. 1. ~ 2. : 시범사업 공고 및 지원 신청 접수
 - 2026. 3.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3. ~ 11. : 사업 추진
 - 2026.11. ~ 12. : 성과평가 및 정산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공급식용 친환경 마늘·양파 재배단지 조성 : 1개소(김포시학교급식출하회, 회장 장선희)
2024	· 지역 맞춤 보급형 수경재배 시설 단지 조성 : 1개소(김포시채소연합회, 회장 김무경) · 명품 부추 기획생산 재배단지 조성 : 1개소(김포상추연구회, 회장 이영인)
2025	· 소비자 참여 국내육성 품종 벼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 1개소(후계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월곶지회, 이영범) · 양액재배 기술도입 화훼 생산기반 조성 시범 : 1개소(고촌분화작목반, 유명환) · 김포특산물 순무 생산거점단지 조성 시범: 1개소(김포문수산순무작목반, 민경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0	200,000	-	-	
2024	400,000	400,000	-	-	
2025	600,000	60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박선정	전화	4364
-----	-------	------------	-----	-------------	----	------

지역 맞춤형 작목개발 사업(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을 위한 기초기술 중점 보급 및 작무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 마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제25조 1항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70,000	170,000	
국비		0						0	
도비		0					51,000	51,000	
시비		0					119,000	119,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지역 맞춤형 작목개발 사업 (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고품질 배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 시범 배 묘목, 과원 조성(지주, 관수, 배수시설 등), 생력기계 등 지원 : 170,000,000원*100%*1개소	= 170,000	

□ 예산요구 사유

- 배 흑성병 저항성 품종 보급으로 김포 배 다양성 확립 및 생산 안정화
- 배 재배 농가 고령화에 대응하여 배 재배 생력화 기계 보급을 통해 노동력 절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지역 맞춤형 작목개발 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추진 계획수립
 - 2026. 1. ~ 2. : 시범사업 공고 및 지원 신청 접수
 - 2026. 3.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전교육
 - 2026. 3. ~ 11. : 사업추진
 - 2026. 11. ~ 12. : 성과평가 및 정산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공급식용 사과 GAP 안정생산 기반 조성 시범 : 1개소(김포시사과연구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0	200,000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정규민	전화	4368
-----	-------	------------	-----	-------------	----	------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하성면 봉성리 576 일원
사업규모	1개사업 1개소		
사업목적	국내육성 신품종의 확대 보급을 통한 로열티 및 농가 경영비 절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제25조 1항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000	0	0	0	0	0	86,000	86,000	
국비		0						0	
도비	50,000	0					43,000	43,000	
시비	50,000	0					43,000	43,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6,000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신품종 벼 안전공급 공동육묘장 구축 시범 : 국내육성 신품종 종묘, 생력화 장비(무인방제, 관수 및 관비, 수경재배 자재, 습도조절장치, 보광, 에너지 절감시설, 파종기 등), 마케팅 지원, 포장박스, 친환경 자재,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86,000,000원×1식×100%	= 86,000	

□ 예산요구 사유

- 국내육성 신품종의 확대 보급을 통한 로열티 및 농가 경영비 절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추진계획수립 및 사업 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 2026. 1. ~ 2. : 사업공모
 - 2026. 3. ~ 12.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사업집행,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 사과 국내육성품종 미래형 과원 조성 시범 : 1개소
2025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00,000	100,000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세영	전화	4362
-----	-------	------------	-----	-----------	----	------

조직배양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곡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관내 우량묘 안정공급 및 고소득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종자산업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① 김포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00	4,000	4,000	0	0	0	4,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00	4,000	4,000				4,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	
조직배양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조직배양실 운영 소모품(사무용품 등): 100,000원*20종 =	2,000	
	207-03 시험연구비	· 조직배양 실험용품 구입(배지, 호르몬 등) : 200,000원*10종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관내 고구마, 마늘 등 우량묘 안정공급을 위한 운영 소모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편성
- 우량묘 조직배양을 위한 실험용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예산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10. : 조직배양묘 생산 및 농가보급
 - 2026. 11. ~ 12. : 결과보고 및 평가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고구마 조직배양묘(호풍미 등 4종) 50병 생산
2025	· 고구마 조직배양묘(호풍미 등 4종) 300병 생산 · 국화 국내육성품종 5개 품종 조직배양묘 실증재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4,000	3,998	-	2	
2025	4,000	3,762	-	238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

부서	기술지원과	사업규모	1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4,000
부기명 (세부사업)	조직배양실 운영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현장사진					
	배지제조실				
					
	계대배양 및 증식실				
					
	조직배양묘 순화작업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김수연	전화	4369
-----	-------	------------	-----	-------------	----	------

농업인 기술교육 지도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김포시농업기술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新농업기술 지도 및 홍보를 통한 농업인 재배기술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1,600	21,700	21,700	0	0	0	21,7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600	21,700	21,700				21,7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700	
농업인 기술교육 지도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기술보급 지도자료 제작 : 450,000원*20종 =	9,000	
	201-03 행사운영비	· 농업인 전문농업 교육 운영		
		- 강사비 : 340,000원*10회 =	3,400	
		- 운영비 : 100,000원*10회 =	1,000	
		- 임차비 : 600,000원*10회 =	6,000	
		- 교육 재료비 : 20,000원*100명*1회 =	2,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참가보상 : 30,000원*10명 =	300	

□ 예산요구 사유

- 식량·원예·특용 등 분야별 김포시 맞춤형 지도 매뉴얼 정립으로 안정적인 지도기반 조성
- 농업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작목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예산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10. : 사업 착수 및 추진
 - 2026. 11. ~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업인 교육 및 현장견학 : 7개분야 29회 1,166명(누계)
2024	○ 농업인 교육 및 현장견학 : 3개분야 29회 791명(누계)
2025	○ 농업인 교육 및 현장견학 : 5개분야 14회 490명(누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360	23,360	-	450	
2024	21,600	21,478	-	122	
2025	21,700	17,085	-	4,61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황다연	전화	4367
-----	-------	------------	-----	-------------	----	------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기술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별 품목조직을 대상으로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 개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8조, 19조, 21조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 최종예산액	2025 예산액			2026 본예산요구액 (D)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회추경 (C)			
계	2,000	6,000	0	0	6,000	0	
국비		0					
도비	600	1,800	0		1,800	0	
시비	1,400	4,200	0		4,2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기술지원)	201-03 행사운영비	. 연구회 전문화를 위한 교육, 일반수용비, 임차비 등 6,000,000원 =	6,000	

□ 예산요구 사유

- 품목별 농업인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조직 활성화
-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기술농업 조기 정착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예산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추진 계획수립
 - 2026. 02. ~ 2026. 11. : 사업 추진
 - 2026. 11. ~ 2026. 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품목별 연구회 현지 연찬교육 추진 3회 - 친환경 약제(유항합제) 조제 실습 1회 - 교육 및 시연회 홍보 및 책자 제작
2024	- 김포시잡곡연구회 현장견학 1회 - 농업인의 날 행사 농산물(쌀, 배) 품평회 추진
2025	- 품목별 연구회 현장견학 및 교육 진행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	4,000	-	-	
2024	2,000	1,998	-	2	
2025	6,000	820	-	5,1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황다연	전화	4368
-----	-------	------------	-----	-------------	----	------

농업신기술 교육장 설치 및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수참리 119-2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온·냉·화·도·사회에 따라 농업인 기술지도 능력 배양 및 소비자 품목 다양화에 맞춘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김포 미래 농업 산체적 대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조, 2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① 김포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58	4,240	4,240	0	0	0	38,051	33,81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58	4,240	4,240				38,051	33,81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8,051	
농업신기술 교육장 설치 및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실증시험포 교육장 운영 보조원 인건비 - 기본급 : 93,840원*167일*1명 = 15,672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46일*1명 = 4,223 - 명절휴가비 : 500,000원*1회*1명 = 500 - 4대 보험료 : 20,395,000원*14%*1명 = 2,856		
	201-01 사무관리비	· 실증시험포 운영 물품 구입 : 100,000원*10종 = 1,000		
	201-02 공공운영비	· 실증시험포 교육장 운영 공과금 - 전기요금 : 500,000원*12월 = 6,000 - 상하수도요금 : 100,000원*12월 = 1,200 - 보안서비스요금 : 100,000원*12월 = 1,200 - 인터넷요금 : 50,000원*12월 = 600 · 실증시험포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 1,000,000원*1회 = 1,000		
	206-01 재료비	· 실증시험포 자재구입비(모종, 상토, 비료 등) : 100,000원*38종 = 3,800		

□ 예산요구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기간제근로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 편성
- 이상기후 및 로컬 소비자 수요 품목 다변화에 따른 김포 맞춤 신소득 작목 신기술 실증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실증시험 재배품목 확대에 따른 단순작업량(제조작업, 순치기, 수확 등) 증가로 현장근로자 인건비 편성
- 25년 10월 스마트온실 구축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3. : 실증시험 과제 수요조사 및 추진 협의
 - 2026. 4. ~ 11. : 실증시험 과제별 추진 및 점검
 - 2026. 11. ~ 12. : 결과보고 및 평가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원예특작분야 지역적응 자체 실증시험> - 과제수 : 4과제 - 품 목 : 7종(백향과, 열매마, 방울토마토, 수박, 참외, 수국, 무화과) - 실증요인 : 간이형 양액시설을 통한 채소 자루재배, 지역적합 품종 선정 선발 실증 등
2025	<원예특작분야 지역적응 자체 실증시험> - 과제수 : 3과제 - 품 목 : 10개(국화, 수국, 고구마, 수박, 참외, 백향과, 파파야, 사과, 배, 무화과) - 실증요인 : 지역적합 품종 선정 선발 실증, 조직배양 실증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5,058	5,037	-	21	
2025	4,240	3,280	-	960	10.31.기준 집행현황

□ 현장사진

부서	기술지원과	사업규모	1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38,051
부기명 (세부사업)	농업신기술 교육장 설치 및 운영	사업위치	통진읍 수참리 119-2		

현장사진



스마트온실 외부



스마트온실 내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김수연	전화	4369
-----	-------	------------	-----	-------------	----	------

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미생물 생산·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농업 환경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5,900	95,790	95,790	0	0	0	96,750	9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5,900	95,790	95,790				96,750	9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6,750	
미생물 배양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미생물배양실 운영비(품질표시스티커, 사무용품 등) : 150,000원*15종 = 2,250 · 사료용 미생물 법정 품질검사 수수료 : 400,000원*2회 = 800		
	201-02 공공운영비	· 미생물배양실 장비유지보수(배양기, BM활성수플랜트 등 장비) : 500,000원*16종 = 8,000 · 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비(통신 및 정수기 렌탈 요금) : 100,000원*12월 = 1,200		
	206-01 재료비	·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 - 미생물 배양배지 : 77,000원*1000포 = 77,000 - BM활성수 생산 운영재료 : 2,500,000원*2회 = 5,000 - 미생물 품질관리 재료 : 250,000원*10종 = 2,500		

□ 예산요구 사유

-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
- 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가축질병예방·축사냄새저감 등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6년 미생물배양장비 법정 안전검사 예정으로 유지보수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미생물 생산 및 보급
 - 2026. 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총 공급량 : 517톤 (생균제 247톤, BM활성수 238톤) - 미생물 이용 다양화 시험보급 : 4종 20톤 (질화세균, BT균, 페니바실러스균, 클로렐라) - 유용미생물 이용 지원 협조 :유수지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복합미생물 지원 37.5톤
2024	○ 총 공급량 : 548톤 (생균제 298톤, BM활성수 250톤) - 미생물 이용 다양화 시험보급 : 3종 18톤 (질화세균, BT균, 페니바실러스균) - 유용미생물 이용 지원 협조 : 유수지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복합미생물 지원 33.7톤
2025	○ 총 공급량 : 526톤 (생균제 275톤, BM활성수 251톤) - 미생물 이용 다양화 시험보급 : 3종 20톤 (질화세균, BT균, 페니바실러스균) - 유용미생물 이용 지원 협조 : 유수지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복합미생물 지원 33.8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8,950	98,949	-	1	
2024	95,900	95,893	-	7	
2025	95,790	92,461	-	3,32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농촌지도사 조도현	전화	4377
-----	-------	------------	-----	-----------	----	------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9,400	119,400	119,400	0	0	0	119,400	0	
국비		0						0	
도비	89,820	35,820	35,820				35,820	0	
시비	209,580	83,580	83,580				83,58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9,400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미생물배양실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 : 93,840원*203일*1명 = 19,050 - 유급휴일수당 : 93,840*55일*1명 = 5,162 - 명절휴가비 : 500,000원*1회*1명 = 500 - 4대보험료 : 24,210,720원*14% = 3,390 · 피복비 : 70,000원*1명 = 70		
	201-01 사무관리비	· 미생물 생산 운영 소모품 구입 : 100,000원*30종 = 3,000		
	201-02 공공운영비	· 미생물 배양 장비 유지·보수 - 멸균배양기 유지보수 : 500,000원*4종 = 2,000 - 종균배양시설 유지보수 등 : 2,328,000원 = 2,328		
	202-01 국내여비	· 미생물 생산 운영 여비 : 120,000원*3명*5회 = 1,800		
	206-01 재료비	· 미생물 실증시험 - 실증시험 소모품 : 500,000원*10종 = 5,000 - 미생물 배양배지 : 80,000원*500포(2kg) = 40,000 - 미생물 공급 비닐팩 : 1,400원*26,500장 = 37,100		

□ 예산요구 사유

-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 가축분뇨 냄새저감 등 축사환경개선으로 민원발생 감소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변동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 사업계획 수립
 - 2026. 02. ~ 2026. 12. :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총 공급량 : 517톤 (생균제 279톤, BM활성수 238톤) - 미생물 이용 다양화 시험보급 : 4종 20톤 (질화세균, BT균, 페니바실러스균, 클로렐라) - 유용미생물 이용 지원 협조 : 우수지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복합미생물 지원 37.5톤
2024	○ 총 공급량 : 548톤 (생균제 298톤, BM활성수 250톤) - 미생물 이용 다양화 시험보급 : 3종 18톤 (질화세균, BT균, 페니바실러스균) - 유용미생물 이용 지원 협조 : 우수지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복합미생물 지원 33.7톤
2025	○ 총 공급량 : 526톤 (생균제 275톤, BM활성수 251톤) - 미생물 이용 다양화 시험보급 : 3종 20톤 (질화세균, BT균, 페니바실러스균) - 유용미생물 이용 지원 협조 : 우수지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복합미생물 지원 33.8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9,400	119,259	-	141	
2024	299,400	285,255	-	14,145	
2025	119,400	104,230	-	15,16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조도현	전화	4377
-----	-------	------------	-----	-------------	----	------

농촌지도 기반조성(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농업기술센터(오리정로 13)
사업규모	3개소(토양검정실, 퇴비부숙도판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사업목적	과학영농시설의 운영문제 해소를 통해 업무의 신속처리 및 활성화로 법적사무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제9조 (분석의 경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석경비의 면제)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시 및 산하기관의 영농기술지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0	80,000	80,000	0	0	0	370,650	290,650	
국비	-	0	-	-	-	-	-	0	
도비	15,000	24,000	24,000	-	-	-	185,325	161,325	
시비	35,000	56,000	56,000	-	-	-	185,325	129,325	
기타		0	-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70,650	
농촌지도 기반조성 (전환사업)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농산물안전성분석 운영 장비 구입 - GC-MSMS : 360,000,000원*1대 ·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지원 - 초자건조기 : 5,500,000원*1대 - 폐수 약품장 : 4,000,000원*1대 - 실험실용배기기 : 1,150,000원*1대	= 360,000 = 5,500 = 4,000 = 1,15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통한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 신뢰 구축
- 안전보건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필히 교체가 필요한 장비 교체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변동(구입장비 목록 승인)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2. ~ 2026. 12. : 사업진행(장비 구입 및 설치)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미생물 배양장비 1대, 컴프레서 1대 ○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 1대, 진탕기 등 종합검정장비 4대
2024	○ 미생물 배양장비 1대, 저온저장탱크 1대, 무균대 1대 ○ 비색계 1대, pH·EC 자동분석기 1대, 자동분주기 4대, 테이블탑 흡후드 1대
2025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52,100	447,152	-	4,948	
2024	350,000	329,905	-	20,095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공업8급 김예슬 시간선택임기제 황수민	전화	4378 4388
-----	-------	------------	-----	-------------------------	----	--------------

탄소중립 농업실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탄소중립 농업실천 시범을 통해 저탄소 농업체계 구축 및 체감형 사업을 통한 김포 농산물 신뢰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19조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700	9,700	9,700	0	0	0	9,7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700	9,700	9,700				9,7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700	
탄소중립 농업실천	201-03 행사운영비	· 저탄소 농업교육 운영 등 : 700,000원*10회 = · 저탄소 농업 육성 교육교재 제작 및 운영물품 : 2,700,000원 =	7,000 2,700	

□ 예산요구 사유

- 탄소중립과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저탄소 농업교육 등은 최소한으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임

□ 예산증감 사유

- 저탄소 농업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구입 및 운영비 요구, 전년 동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교육 계획 수립
 - 2026. 2. ~ 11. : 교육 추진 및 집행(각 교육별 세부 일정 확정 후 추진)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역자원 재순환 실천 사업화 시범사업 : 1개소 - 제품 생산 장비 제작 설치 1식(발효사료 스크류), 상품화 포장재 2종(다회용 벌크백, 부패방지용 사료봉투)
2024	○ 저탄소 농업 교육 운영 : 3개 분야 15회 235명 이수
2025	○ 저탄소 농업 교육 운영 : 3개분야 8회 187명 이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5,000	-	-	
2024	14,700	14,699	-	1	
2025	9,700	8,375	-	1,32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공업8급 김예슬 농촌지도사 조도현	전화	4378 4377
-----	-------	------------	-----	-----------------------	----	--------------

축산, 미생물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미생물 활용 농축산부산물 자원화, 농업 환경 보전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	9,000	9,000	0	0	0	9,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00	9,000	9,000				9,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	
축산, 미생물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207-03 시험연구비	· 친환경 미생물 생력화 재배기술 실증시험 운영 : 3,000,000원*3작목	= 9,000	

□ 예산요구 사유

- 저비용 친환경 농자재 이용에 따른 미생물·축산 자원 특성화 및 효과적 이용 기술 보급
- 친환경 미생물 생력화 재배기술 실증시험을 위한 연구재료(종자, 친환경농자재 등) 구입
- 산업곤충 등 그린바이오산업 분야 신기술 실증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 예산증감 사유

- 예산증액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실증시험 계획 수립
 - 2026. 2. ~ 11. : 작목별 실증시험 추진 및 집행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친환경 미생물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사업 : 1개소 - 생력농기계(미생물 살포기) 1식
2024	○ 친환경 미생물 생력화 재배기술 실증시험 : 5개소 - 농식품 부산물 활용 토양개량 효과 실증 - 미생물 이용 옥묘 및 발근 실증 - 송아지 설사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미생물) 실증 - 유산균 dry-aging을 활용한 저등급 한우 고급화 전략 실증 - 양봉산물 부가가치 향상 실증
2025	○ 친환경 미생물 생력화 재배기술 실증시험 : 3개소 - 미생물 투입 두유 아미노산 액비 활용 농산물 생산성 실증 - 바실러스 활용 어분 액비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 실증 - 양봉산물 활용 지역적응 실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5,000	-	-	
2024	15,000	15,000	-	-	
2025	9,000	8,657	-	34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농촌지도사 조도현	전화	4377
-----	-------	------------	-----	-----------	----	------

농업신기술시범(기술지원과)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13
사업규모	7개사업 9개소		
사업목적	- 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연구(SPP) 연계한 지역 맞춤형 신품종 신속확산 - 고구마 재배농가의 수요가 많은 내병성·다수성 신품종 보급 확대로 외래품종 대체 및 농가 생산성 향상 - 원예작물 생태적 재배 관리로 생태계보전, 농산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 번식효율(수태율) 향상으로 한우 번식우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소규모 재배 품목의 안정적인 원료곡 공급을 위해 다수성 신품종 잡곡 생산단지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제25조 1항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80,000	200,000	200,000	0	0	0	680,000	480,000	
국비	340,000	100,000	100,000				340,000	240,000	
도비		0						0	
시비	340,000	100,000	100,000				340,000	24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80,000	
농업신기술시범 (기술지원과)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 조성 시범 : 신품종 종자 및 농자재, 병해충 방제용 드론 1대, 생력농기계, 종자 품질유지 장치(건조·정선·저장시설), 종자생산 교육·컨설팅 및 포장·종자 검사비용 등 150,000,000원×1개소×100%	= 150,000	
		·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 고구마 증식을 위한 육묘시설, 생력화 장비, 농자재 등 150,000,000원×1개소×100%	= 150,000	
		· 벼 수요자 참여 개발품종 조기확산 시범 :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 생력농기계, 지역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한 브랜드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 100,000,000원×1개소×100%	= 100,000	
		·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신품종 종자·종구, 재배·육묘용 자재, 생력 농기계 등 지원 50,000,000원×1개소(1ha내외)*100%	= 50,0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80,000	
농업신기술시범 (기술지원과)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 : 20,000,000원*3개소	= 60,000	
		· 지주시설 개선형 햇빛차단망 시설, ICT 자동제어시스템 등 지원 : 100,000,000원*1개소(0.8ha내외)*100%	= 100,000	
		· 지역 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 생력화기계, 종자 및 농자재 등 70,000,000원*1개소*100%	= 70,000	

□ 예산요구 사유

- 국내 육성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공급으로 신속한 품종 보급 및 매년 발생하는 종자 부족 문제 해결 및 신품종·지역 전략품종을 채종포 단지와 연계하여 원활한 종자 공급
- SPP* 연계 개발된 김포 지역적응 신품종 벼 ‘한가득’ 조기확산 및 브랜드화
* SPP(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 : 육종가, 농업인, 지역농협, 소비자 등이 참여해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현장 중심 연구
-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내병성, 다수성 고구마 국내품종의 보급 및 확산
- 지역적합 마늘·양파 국내육성품종 보급으로 품질 및 수량개선, 소비자 신뢰제고
- 기존 지주시설 개선 차단망 시설 적용으로 일소피해 경감 및 안정생산 기반 구축
- 한우 번식우의 수태율 향상과 송아지 집중관리실 운영을 통한 환축 회복기간의 단축으로 번식효율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 잡곡 신품종 보급과 특산단지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 예산증감 사유

- 국비 ‘농업신기술 보급’ 사업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 : 추진계획수립 및 사업 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 2026. 1. ~ 2. : 사업공모
- 2026. 3. ~ 12.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사업 집행,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후 적응형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 1개소 10ha - 수삼 수출을 위한 수확 후 품질 관리 기술 보급 시범 : 1개소 -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 : 1개소 -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 1개소 -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 1개소 -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 : 3개소 -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 1개소 -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 1개소 - PLS 대응 발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 1개소 -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 1개소
2024	-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 1개소, 10ha -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시범 : 1개소 -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 시범: 1개소 -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시범 : 1개소 -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1개소 - 국내 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 1개단체(5개소) -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 : 2개소 -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 1개단체(5개소)
2025	- 벼 수요자 참여 개발품종 조기확산 시범 : 1개소 -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 1개소 -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 4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0,000	640,000	-	-	
2024	680,000	680,000	-	-	
2025	200,000	20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지방농촌지도사 정세영 지방농촌지도사 박선정 지방농촌지도사 정규민 지방농촌지도사 황다연 지방농촌지도사 조도현	전화	4362 4364 4367 4368 4377
-----	-------	--	-----	---	----	--------------------------------------

토양검정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토양 및 퇴비 정밀 분석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제9조(분석의 경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경비의 면제)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시 및 산하기관의 영농기술지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542	8,692	8,692	0	0	0	13,560	4,86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542	8,692	8,692				13,560	4,86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560	
토양검정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사무용품 : 100,000원*10종 = 1,000 · 정수기요금 : 54,000원*12개월 = 648 · 작업환경측정비 : 2,000,000원*2회 = 4,000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법정교육 : 88,000원*4명 = 352		
	201-02 공공운영비	· 특수건강검진비 : 100,000원*4명*2회 = 800 · 유해가스 저감장치 및 시약장 필터교체 : 1,000,000원*2종 = 2,000 · 폐수처리(500L) 880,000원*2회 = 1,760 · 토양검정 측정장비 유지보수(비색계 램프 교체 등) 3,000,000원 = 3,000		

□ 예산요구 사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 교육 및 검진비, 폐기물 처리비 요구
- 작업자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 소모품(시약장 필터, 유해가스 저감장치 필터 등) 구비

□ 예산증감 사유

- 연간 토양검정 분석량 2,300건 및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25.1.3.)에 따른 토양오염도 중금속검사 물량 증가(약 350건), 실험 폐수 발생(1톤) 처리비 필요
 - 비색계 램프 교체주기(2,000시간/2025.5.19.기 교체) 도래(2026.9월 예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증액
미교체 시 토양검정 항목(인산, 규산, 유기물) 분석 중단에 따라 토양검정실 운영 차질 발생
- * 산출내역 : 6시간(하루 사용시간)*261일(1년 근무일수)=1,566시간/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토양검정실 운영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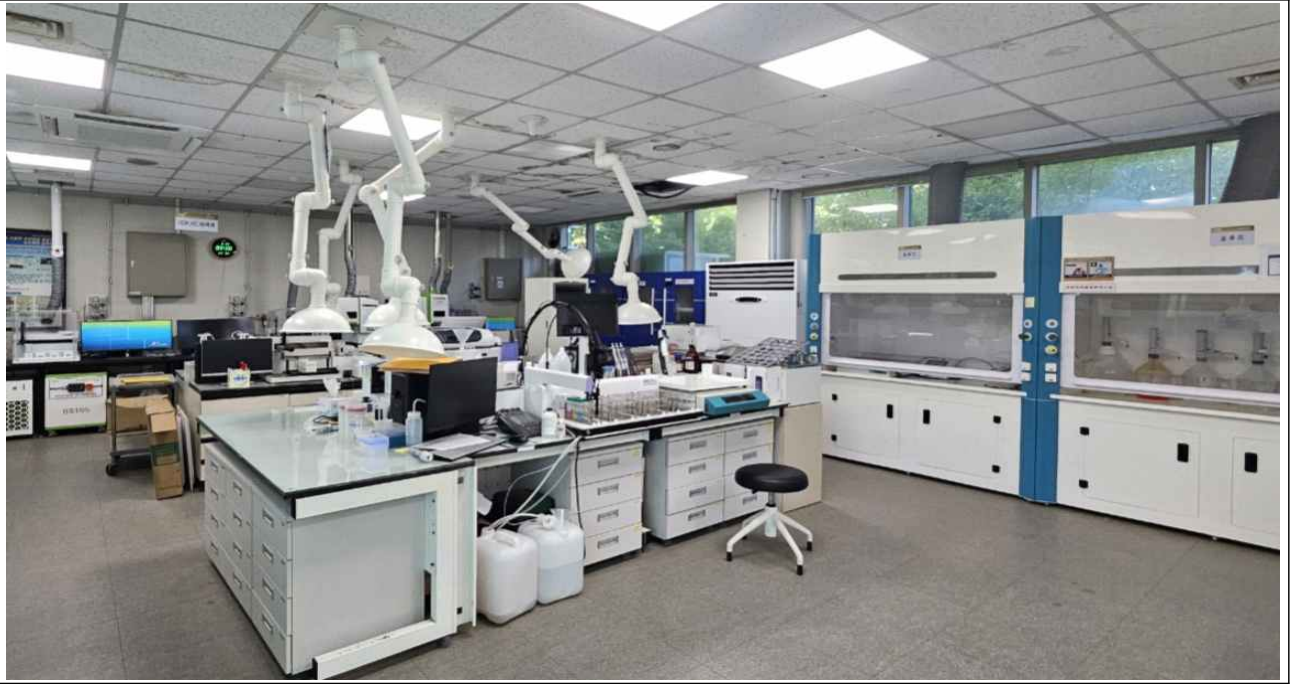
2023	○ 총 분석 점수 : 2,296점 - 농업인의료 : 1,392점, 정책지원 : 289점 - 퇴액비분석 : 345점, 대표필지 검정 : 270점
2024	○ 총 분석 점수 : 2,606점 - 농업인의료 : 580점, 친환경인증 : 773점, GAP 인증 : 67점, 정책지원(직불제) : 314점, 대표필지 : 540점 - 퇴액비분석 : 332점
2025	○ 총 분석 점수 : 2,518점 - 농업인의료 : 383점, 친환경인증 : 790점, GAP 인증 : 168점, 정책지원(직불제) : 310점, 대표필지 : 270점 - 퇴액비분석 : 230점, 토양오염도 중금속 검사 : 367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792	11,792	-	-	
2024	9,542	9,542	-	-	
2025	8,692	8,212	-	48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기술지원과	사업규모	1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13,560
부기명 (세부사업)	토양검정실 운영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13		
비색계 사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공업8급 김예슬	전화	4378
-----	-------	------------	-----	----------	----	------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농업기술센터(오리정로 13)
사업규모	3개소(종합검정실, 원예특작팀, 친환경축산관리실)		
사업목적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과학영농 진단장비 및 운영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제9조 (분석의 경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석경비의 면제)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나 시 및 산하기관의 영농기술지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3,000	33,000	33,000	0	0	0	72,000	39,000	
국비	8,250	8,250	8,250	0	0	0	18,000	9,750	
도비		0						0	
시비	24,750	24,750	24,750	0	0	0	54,000	29,25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000	
종합검정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종합검정실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8개월) - 기본급 93,840원*176일 = 16,516 - 유급휴일수당 93,840원*35일 = 3,285 - 4대보험료 등 19,800,240원*14% = 2,772 - 피복비 70,000원*1명 = 70 -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 = 500		
	201-02 공공운영비	· 토양검정 측정장비 유지보수 등 2,857,000원 = 2,857		
과학영농기술 보급 장비 지원	206-01 재료비	·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영양진단용 키트 200,000원*5종 = 1,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비파괴경도계 : 10,000,000원*1대 = 10,000 · 열화상카메라 : 7,500,000원*1대 = 7,500 · 비파괴당도계 : 5,000,000원*1대 = 5,000 · 전기운반차 : 5,000,000원*1대 = 5,000 · 조도계 : 7,500,000원*1대 = 7,5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000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소모품 구입 : 100,000원*40종 =	4,000	
	206-01 재료비	· 초유 생산 및 공급 기자재 구입 - 초유 수거 및 공급 용기 : 1,000원*1,000병 = 1,000 - 초유 면역물질 측정용 키트 : 100,000원*20set(10개입) = 2,000 - 초유 생산 및 공급 기자재, 운영비 등 : 500,000원*6종 = 3,000		

□ 예산요구 사유

- 토양, 수질, 식물체 등 정밀분석을 통한 시비처방 농업인 제공 및 정책사업 추진
- 과수원 영양상태 및 바이러스 진단에 따른 사전예방으로 안정 생산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변동(종합검정실 국비 증가)에 따른 증액
- 국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신규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종합검정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총 분석 점수 : 2,296점 - 농업인의뢰 : 1,392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289점, 대표필지: 270점, 퇴액비분석: 345점 ○ 초유 공급량 : 315L, 초유 품질검사 건수 : 14건
2024	○ 총 분석 점수 : 2,606점 - 농업인의뢰 : 1,420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 314점, 대표필지 : 540점, 퇴액비분석 : 332점 ○ 초유 공급량 : 422L, 초유 품질검사 건수 : 48건
2025	○ 총 분석 점수 : 2,518점 - 농업인의뢰 : 383점, 친환경인증 : 790점, GAP 인증 : 168점, 정책지원(직불제) : 310점, 대표필지 : 270점 - 퇴액비분석 : 230점, 토양오염도 중금속 검사 : 367점 ○ 초유 공급량 : 345L, 초유 품질검사 건수 : 3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9,400	251,618	-	7,782	
2024	33,000	32,892	-	108	
2025	33,000	30,226	-	2,774	10.31.기준 집행현황

- '23년도에 종합검정실 + 친환경 축산 관리실 +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3개사업 편성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규민	전화	4368
				공업8급 김예슬		4378
				농촌지도사 조도현		4377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가축분뇨 자원화,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퇴비·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000	7,624	7,624	0	0	0	28,945	21,321	
국비	5,500	0						0	
도비		0						0	
시비	5,500	7,624	7,624				28,945	21,32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8,945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93,840원*1명*166일(8개월) = 15,578 ·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93,840원*1명*45일 = 4,223 ·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1회 = 500 · 4대보험료 19,801,000원*14% = 2,772 · 피복비 70,000*1명 = 70		
	201-02 공공운영비	·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장비 유지보수 2,000,000원 = 2,000 · 시약장 필터 교체 등 1,500,000원 = 1,500		
	206-01 재료비	· 부속도 검사용(시약, 키트, 청량병등) 소모품 2,302,000원 = 2,302		

□ 예산요구 사유

-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20.3.25.)에 따른 축산농가 법정 의무검사 지원
- 작업자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 소모품(시약장 필터, 유해가스 저감장치 필터 등) 구비

□ 예산증감 사유

- 부속도 검사 집중 기간(4~6월, 10~12월)에 전담 기간제가 없을 경우 부속도 검사로 인해 토양검정 업무 지연 및 민원이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와 법정업무 의무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이 필요하여 예산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가축분뇨부속도 판정실 운영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건수 : 345건
2024	○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건수 : 332건
2025	○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건수 : 23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400	23,335	-	65	
2024	11,000	10,997	-	3	
2025	7,624	7,608	-	1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공업8급 김예슬	전화	4378
-----	-------	------------	-----	----------	----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1조(안전성조사)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자·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3,229	87,001	87,001	0	0	0	90,929	3,92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3,229	87,001	87,001				90,929	3,92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929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운영물품 구입(사무용품, 안전보호장비 등) 100,000원*15종 = 1,500 · 정수기요금 : 60,000원*12개월 = 720 · 지정폐기물 처리 : 2,000,000원*2회 = 4,000 · 작업환경측정비 : 3,104,000원*1회 = 3,104 · 특수건강검진 : 100,000원*3명 = 300		
	201-02 공공운영비	·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장비 유지보수비 - 분석 장비(ICP-MS, 진공발생기 등) 수리비 2,000,000원*12종 = 24,000		
	206-01 재료비	·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분석연구비 - 잔류농약 표준품 15,000,000원*1종 = 15,000 - GC-MSMS, ICP-MS 가스 3,000,000원*4회 = 12,000 - 잔류농약 분석키트 13,000,000원*1종 = 13,000 - 분석시약 및 소모품 1,730,500원*10종 = 17,305		

□ 예산요구 사유

- PLS 전면시행에 대응하여 출하 전 지역농산물의 463종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 지역농산물의 안전생산체계 구축 및 유통지원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한 장비 유지보수 등

□ 예산증감 사유

- 분석장비 노후화 및 사용빈도 증가로 인한 고장발생('23년도: 4건/'24년도 6건/'25년도 8월까지 4건), 분석업무 지연/중지로 인한 소모품 및 수리비 증액 요구
- GC-MSMS의 지속적인 분석감도 저하로 인한 예방정비(PM) 필요
- 분석장비 사용횟수 및 사용시간 증가에 따른 EM Multiplier 부품(LC-MSMS 및 GC-MSMS)교체시기 도래
- 무정전전원장치(UPS) 내부 배터리 교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불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불승인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 사업계획 수립
 - 2026. 2 ~ 12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총 분석 건수 : 1,801건 - 잔류농약 : 로컬푸드 933, 친환경인증 131, GAP 15, 학교급식 10, 금빛나루 30 농업인의뢰 191 = 1,310건 - 중금속 : 로컬푸드 445, 친환경인증 2, 금빛나루 21, 농업인의뢰 23 = 491건
2024	○ 총 분석 건수 : 1,602건 - 잔류농약 : 로컬푸드 770, 친환경인증 126, GAP 2, 학교급식 4, 금빛나루 3, 농업인의뢰 336 = 1,241건 - 중금속 : 로컬푸드 211, 친환경인증 6, 금빛나루 6, 농업인의뢰 126 = 349건 - 곰팡이독소 : 농업인의뢰 12 = 12건
2025	○ 총 분석 건수 : 992건 - 잔류농약 705건, 중금속 285건, 곰팡이독소 2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8,531	128,472	-	59	
2024	103,229	103,199	-	30	
2025	87,001	68,901	-	18,1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기술지원과	사업규모	1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90,929
부기명 (세부사업)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13		
수리 필요 장비	<LC-MSMS>  <GC-MSMS>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시간선택임기제 황수민	전화	4388
-----	-------	------------	-----	-------------	----	------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농업기술센터(오리정로 13)
사업규모	3개소(토양검정실, 퇴비부숙도판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사업목적	과학영농시설의 운영문제 해소를 통해 업무의 신속처리 및 활성화로 법적사무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제9조 (분석의 경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석경비의 면제)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나 시 및 산하기관의 영농기술지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0,000	80,000	80,000	0	0	0	50,000	-30,000	
국비		0						0	
도비	15,000	24,000	24,000				15,000	-9,000	
시비	35,000	56,000	56,000				35,000	-21,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8개월) - 기본급 93,840원*176일 = 16,516 - 유급휴일수당 93,840원*35일 = 3,285 - 4대보험료 등 15,560,000원*14% = 2,179 - 피복비 70,000원*1명 = 70 -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 = 500 · 토양시료채취 단순인부임, 고용, 산재보험료 등 : 2,450,000원 = 2,450		
	206-01 재료비	· 과학영농시설 시험연구 재료비(가스, 시약, 전처리용품 등) : 1,000,000*25종 = 25,000		

□ 예산요구 사유

-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비 및 인력 사용(사전승인 완료)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변동(도비 예산 축소)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승인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사업계획 수립
 - 2026. 02. ~ 2026. 12. : 종합검정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총 분석점수 : 2,296점) ○ 폐수처리 및 지정폐기물 처리, 유해가스 정화필터 및 검정장비 교정, 전처리 시약 구입
2024	○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총 분석점수 : 2,606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검사 건수 : 1,602건) ○ 기간제근로자 2명, 토양시료채취 단순인부 사역
2025	○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총 분석점수 : 2,518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검사 건수 : 992건) ○ 기간제근로자 2명, 토양시료채취 단순인부 사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19,994	-	6	
2024	50,000	49,970	-	30	
2025	80,000	79,985	-	1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공업8급 김예슬 시간선택임기제 황수민	전화	4378 4388
-----	-------	------------	-----	-------------------------	----	--------------

직불제 이행점검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농업기술센터(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토양검정실)		
사업목적	토양 및 퇴비 정밀 분석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기금 100%)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공약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6,200	6,200	0	0	0	6,300	100	
국비	-	6,200	6,200	-	-	-	6,300	100	
도비	-	0	-	-	-	-	-	0	
시비	-	0	-	-	-	-	-	0	
기타	-	0	-	-	-	-	-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300	
직불제 이행점검 지원	206-01 재료비	· 직불제 이행점검 분석시약 및 소모품 등 21,000원*300건 =	6,3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관련,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재료비 요구

□ 예산증감 사유

- 직불제 이행점검 국비 100% 기금확보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직불제 이행점검 대상자 선정
 - 2026. 02. ~ 2026. 12. : 점검 대상자 통보 및 시료채취, 이행점검 실시
 - 2026.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 289점
2024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 314점
2025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 310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6,200	4,993	-	1,20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과학영농팀장 강효정	담당자	공업8급 김예슬	전화	4378
-----	-------	------------	-----	----------	----	------